

무역학박사 학위논문

유럽공동매매법(CESL)하에서 계약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학과 무역상무전공

심 갑 영

지도교수 심 종 석

2015년 6월

대구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2장 CESL의 의의와 특수성	8
제1절 CESL의 의의	8
1. 제정취지	9
2. 입법연혁	12
3. 적용범위	21
4. 구성체계	22
제2절 CESL의 특징	28
1. 법적 특징	28
2. 법적 지위	29
3. 규율 범위	30
제3절 CESL의 내용	36
1. 계약의 성립단계	36
2. 계약의 이행단계	43
3. 계약의 종료단계	52
제3장 계약의 성립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	57
제1절 일반규정	57
1. 일반원칙	57
2. 적용요건	57

3. CISG와의 비교	59
제2절 계약의 성립 전 단계	68
1. B2B간 제공하여야 할 계약 전 정보	68
2.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68
3.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	68
4. CISG와의 비교	69
제3절 계약의 성립단계	73
1. 계약의 체결	73
2. 의사표시 하자	73
3. 계약내용의 해석	74
4. CISG와의 비교	76
 제4장 계약의 이행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	 97
제1절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	97
1. 매도인의 의무	97
2. 매수인의 구제수단	97
3. CISG와의 비교	99
제2절 매수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구제수단	122
1. 매수인의 의무	122
2. 매도인의 구제수단	123
3. CISG와의 비교	124
제3절 위험의 이전	136
1. 일반규정	136
2. 위험의 이전	136
3. CISG와의 비교	137

제5장 계약의 종료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	141
----------------------------------	-----

제1절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141
----------------------	-----

1. 손해배상금 및 이자	141
2. 원상회복	143
3. CISG와의 비교	144

제2절 소멸시효	154
----------------	-----

1. 일반규정	154
2. 법적 기준과 효과	154
3. CISG와의 비교	155

제6장 요약 및 결론	160
-------------------	-----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유럽공동매매법(CESL) 국문번역본

표 목 차

<표 01> CESL의 연혁	20
<표 02> CESL 총칙의 구성체계	24
<표 03> CESL 조문의 구성체계	26
<표 04> CESL 제1부	36
<표 05> CESL 제2부	38
<표 06> CESL 제3부	41
<표 07> CESL 제4부	41
<표 08> CESL 제5부	50
<표 09> CESL 제6부	52
<표 10> CESL 제7부	54
<표 11> CESL 제8부	55
<표 12> CESL과 CISG의 비교 : 일반원칙	61
<표 13> CESL과 CISG의 비교 : 적용요건	65
<표 14> CESL과 CISG의 비교 : B2B에서 제공하여야 할 계약 전 정보	70
<표 15> CESL과 CISG의 비교 :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71
<표 16> CESL과 CISG의 비교 : 정보의 정확성 의무와 구제	72
<표 17> CESL과 CISG의 비교 : 계약의 체결	79
<표 18> CESL과 CISG의 비교 : 의사표시의 하자	85
<표 19> CESL과 CISG의 비교 : 계약내용의 해석	91
<표 20> CESL과 CISG의 비교 : 매도인의 의무	104
<표 21> CESL과 CISG의 비교 : 매수인의 구제수단	115
<표 22> CESL과 CISG의 비교 : 매수인의 의무	127
<표 23> CESL과 CISG의 비교 : 매도인의 구제수단	132
<표 24> CESL과 CISG의 비교 : 위험의 이전(일반규정)	137
<표 25> CESL과 CISG의 비교 : 위험의 이전	138
<표 26> CESL과 CISG의 비교 : 손해배상금 및 이자	147
<표 27> CESL과 CISG의 비교 : 원상회복	151
<표 28> CESL과 CISG의 비교 : 소멸시효(일반규정)	155
<표 29> CESL과 CISG의 비교 : 소멸시효(법적 기준과 효과)	157

유럽공동매매법(CESL)하에서 계약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심 갑 영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무역학과
지도교수 심 중 석

(초 록)

중래 EU 회원국별 계약법의 상이는 계약주체로 하여금 각양의 거래에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과 장애를 현실화하였는데, 예컨대 그 절차와 과정의 복잡성에 기한 거래의 좌절은 물론이고, 기대할 수 없었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필요외적 비용을 발생케 하여, 그 결과 기업에게는 제한적 기업 활동에 머무르게 하거나,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의 수혜에 기한 물적 효용 및 기대이익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모름지기 이 같은 계약법의 상이 내지 대립으로부터 비롯된 통일법의 부재는 역내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상대적 회의감 내지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조장하였거나 조장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EU 위원회에서는 역내 계약법의 통일화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른바 ‘유럽공동매매법안’[Common European Sales Law(p), ‘CESL’]을 EU 의회에 제안하였는데, CESL은 역내 물품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견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회원국별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 또는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실무계를 향하여 CESL의 명료한 법리적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일말의 단초제공에 본연의 목적을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EU에 진출하고 있거나 그 진출을 의욕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EU와의 무역계약에 있어 예견 가능한 다종다양의 법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나아가 이에 관련한 유의성을 제고하거나 분별함에 있어 총체적인 법적 대응태세 부양을 의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점을 배경에 두고 CESL상 필요외적 ‘소비자계약’[B2C]은 제외하고 ‘기업 간 계약’[B2B]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성체계와 범위를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단계로 삼분하여 당해 개별사안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 통일 법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는 CISG와의 비교를 통하여 계약당사자 간 당해 법리적 실익 내지 실무적용상 계약책임에 관한 명료한 이해를 도출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골자를 구성체계에 기하여 차례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ESL의 제정취지·입법연혁·적용범위·구성체계 등을 포함한 CESL의 의의, 각각의 계약단계별 법적 기준, 특징 등에 관한 개괄적 수준에서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둘째 B2B 계약에 주안점을 두고 CESL의 개별조문을 중심으로 각각의 계약단계에서의 법적 기준 및 특·장점에 관하여, 이를 계약의 성립 전과 계약의 성립단계로 각각 구분하고, 전자에서는 B2B에서 계약당사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정보제공의 정확성 보장,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등을, 후자에서는 계약체결의 방법, 의사표시의 하자, 계약내용의 평가 등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CISG와의 비교를 통해 명료히 추론하였다.

셋째 계약의 이행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을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로 대별하고, 각각의 의무위반에 기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CISG와 비교·고찰하였다. 넷째 계약의 종료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에 관하여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및 소멸시효로 대별하고 각각의 법률효과와 이에 대한 CISG의 처지를 비교·고찰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주지하듯 20세기 후반, 지역적 차원에서 유럽의 통합과[1994년], 경제적 차원에서 역내 ‘유럽연합’(EU)이 단일경제권을 형성하였다는 것은[1999년], 금세기 국제 경제 환경에 비추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취급된다. 이 같은 EU의 단일경제권으로의 변모는 ‘단일통화’[EURO]의 통합·발행으로 명실 공히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EU]의 형성을 통해 비로소 그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로부터 EU는 역내 경제·사회의 총체적이고도 전 방위적 통합발전을 의욕하고 이에 단일경제권을 형성하였는데, 그 결과 역내 회원국 간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은 형해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또한 현격히 해소되어 역내 수출입은 물론, 회원국 상호 계약주체별 자유로운 ‘거래활동’(transactions)이 보장되었다(Gifis, 1996).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적 시각에서는 현재까지 역내 통일법 체계가 견고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차제에 이 같은 무역장벽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당초 EU 창설목적에 반하는 상당한 역기능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의 범위에서 EU 계약법체제는 그간 역내 다양한 법체계 및 회원국 간의 법리적 시각차 내지 실정법상의 처지가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었던 이유에서, 역내 무

-
-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현재 독일·프랑스·영국·아일랜드·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덴마크·스웨덴, 핀란드·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키프로스·몰타·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 등 28개국을 회원국으로 1993년 11월 1일 창립되었다. 그 목적은 유럽 역내 단일통화의 실현을 통해 단일시장의 구축과 이로부터 유럽의 경제·사회발전을 전 방위적으로 촉진하는 것에 두고 있다(EU 창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ec.europa.eu/justice/contract」을 참조. 이하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웹상의 자료는 본 연구 제출시점 기준이며, 기술편의상 프로토콜명(<http://>)은 생략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거래’(transactions)와 ‘상거래’(commerce)의 용어를 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요컨대 전자[transactions]는 ‘계약적 관계에 따라 참여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포괄적인 의미’로 특정하고, 후자[commerce]는 마찬가지로 ‘계약적 관계에 따라 참여주체를 상인에게 제한하는 협의적 의미’로 특정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상거래 특정될 수 있는 계약적 관계는 B2B(Business to Business)에 한정된다.

역환경의 순기능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당초 EU 창설목적에 반하여 상당한 장애로 기능하였거나 또한 현재까지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EU 통합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의 통일화가 선결되고 있지 못한 처지에서 비롯된 문제점 및/또는 장애는 역내 ‘상거래’(commerce) 및 역외무역에도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까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위원회’)는 이 같은 통일계약법의 실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제에 있다.

그간 EU 회원국별 계약법의 상이는 계약주체로 하여금 각양의 거래에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과 장애를 현실화하였는데, 이를테면 그 절차와 과정의 복잡성에 기한 거래의 좌절은 물론이고, 기대할 수 없었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필요외적 비용을 발생케 하여 그 결과 기업에게 있어서는 제한적인 기업 활동에 머무르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의 수혜에 기한 물적 효용 및 기대이익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모름지기 이 같은 계약법의 상이로부터 비롯된 통일법의 부재는 역내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상대적 회의감 내지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EU 단일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 중 98% 이상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제적 차원에서의 역내 통일법 제정이 매우 긴급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함의한다(Wymenga, *et al*, 2012).

이상의 역내 상황을 고려하여 EU 위원회에서는 계약법의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2011년 10월 마침내 ‘위원회 작업반’(W/G)에 의한 입법결실로서 소위 ‘유럽공동매매법안’[Common European Sales Law(p), ‘CESL’³⁾]을 EU 의회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CESL은 역내 물품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견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회원국별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gap-filling) 또는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요컨대 CESL은 그 체계에 있어 ‘규정’(regulation)과⁴⁾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CESL은 186개

3) 최종입법안[proposal]로서 ‘CESL’은 경우에 따라 ‘CESL(p)’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입법안으로서의 채택에 주안점을 두고 이하 ‘CESL’, 또는 ‘동법안’으로 통일한다.

4) EU ‘법안’(legislation)에는 3가지 기본유형이 있는데, 이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s) 그리고 ‘결정’(dec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규정은 국내법과 유사하나,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지침은 일반규칙을 정한 것으로 회원국이 적절

조문으로 입안되어 당해 부속서에 편입되어 있다(Borchardt, 2010).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ESL은 그 대상을 물품,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서비스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거래에 기한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성안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그 적용은 역내 회원국에 한정하지 않고 역외의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 또한 동법안의 부차적 특징으로 취급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순기능적 시각에서 EU와의 경제적 의존관계가 가일층 긴밀하고도 성숙하게 급진전 되었는데,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발효된 한-EU FTA를 그 저변에 두고 동반자적·협력적 상생관계를 견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차제에 있다. 특히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2000년 초반 약 800억 달러에서 정체되었던 무역규모가 당해 FTA가 발효된 2011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약 2,000억 달러를 상회하기에 이르러 EU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최대의 경제권이자 무역대상으로 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EU 역내 우리기업은 약 750여개 업체가 진출하여 있는데, 당해 기업은 첨단·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IT 및 반도체 기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⁵⁾ 이러한 경제적 실상은 본 연구의 논제에 기하여, EU를 전 범위로 신속·민활한 국제상거래를 견인하고 나아가 합목적적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 보장은 물론, EU 역내 투자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에 진출을 의욕하고 있는 우리기업에게는 저마다의 이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그 올바른 이해를 담보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EU 위원회에서 입법추진 중에 있는 CESL은 이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설령 그것이 법적용상 현재 확정·공표된 EU 역내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EU 역내 B2B 또는 B2C 거래 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매매법으로서의 입법실현을 다름없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CESL에 대한 사전적 그리고 전 방위적 법적 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법에 수용될 수 있다. 결정은 특별한 이슈를 포함하여 특별히 언급된 대상 또는 조직에 대하여 다룬다. 이상의 구분은 EU 위원회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참고한다. 상세는 「ec.europa.eu/legislation/index_en.htm」.

5) 통계지표는 「www.ois.go.kr」을 참조.

• 장점을 추론하여 총체적 대응태세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한
긴요할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그간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소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⁶⁾과
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실무계를 향하여 CESL의 명료한 법리적 이해를 제
고함에 있어 일말의 단초제공에 본연의 목적을 두었다. 이로부터 EU에 진출하
고 있거나 그 진출을 의욕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EU와의 상거래에 있어
예견가능한 다종다양의 법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나아가 이에 관련한 유의성을
제고하거나 분별함에 있어 총체적인 법적 대응태세 부양에 기여코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CESL은 EU 위원회가 2011년 10월 채택하
여, EU 의회 및 이사회에 상정한 최종입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향후
CESL 개정 내지 효력발생에 관한 사항은 차시연구로 보충하고자 하며, 나
아가 본 연구논제에 기한 유관분야에서의 후속연구에 일임해 두고자 한다.

6) 2014년 9월 현재를 기준으로 CISG에 가입한 ‘계약국’(contracting states)은 총 83개국에 이
르고 있다. 「www.cisg.law.pace.edu/cisg/countries」. CISG에 대한 입법적 상세 내지 전체 조문에
대한 해제와 이하 개별조문에 대한 국문인용은 심종석, 2013에 의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그간 EU 위원회는 역내 통일계약법을 성안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노력은 특히 소비자를 포함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집중되었는데, 일례로 EU 역내 B2C의 계약과 기업과 중소기업 B2B 간의 계약을 원활히 하고자 성안한 소위 ‘공동참조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 ‘CFR’)과,⁷⁾ ‘공동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은⁸⁾ 그 대표적 입법성으로 취급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B2B 계약을 포함한 이유는 국제상거래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필요외적 상거래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에 두었는데, 이로써 복잡다단한 국내법에 우선하여 하나의 통일법체계를 통해 그 경제적 실익을 담보하기 위함에 입안취지를 두었다.

한편 우리기업의 관점에서, 일례로 EU 역내 회원국과 계약체결 시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CISG의 ‘계약국’(contracting state)이므로, 만약 CESL을 ‘적용법’(applicable law)으로 선택하는 경우 CISG와 충돌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 자치에 따라 선택한 역내 계약법[CESL]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국제적 협약[CISG]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특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점을 배경에 두고 CESL상 가급적 B2C는 지양하고 B2B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성체계와 범위를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단계로 삼분하여 당해 개별사안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는 CISG와의 비교를 통하여 계

7) CFR은 EU 위원회의 재정지원을 통해 착수되었는데, CFR의 목적은 역내 계약법분야의 통일을 통해 이를 EU의 통일법 제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에 두었다. CFR의 주요 내용은 법적 용어의 통일, EU 규정개정 시 원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 및 일관성 있는 법리적 사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8) 2008년 EU 역내 계약법 전문가는 학리적인 측면에서의 DCFR을 EU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DCFR은 계약법의 원칙, 정의 및 모델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당해 규칙의 법리적 해제에 구체적인 사례를 접목하여 국내법적 체계, 현재의 공통법 또는 국제법에 있어서 법적 위치를 명료히 하고 나아가 개별사안에 대한 유의사항을 후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상 CFR, DCFR에 관한 상세는 「ec.europa.eu/justice/contract/cesl/background/index_en.htm」.

약당사자 간 당해 법리적 실익 내지 실무적용상 계약책임에 관한 명료한 이해를 도출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코자 한다.

살피기에 본 연구에 기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대개 CESL과 국제법규범과의 법리적 비교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연구 성과는 그것도 CESL에 대한 입법연혁과 일부 특정사안에 따른 개괄적 총설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김진우, 2012; 박희호, 2014; 백경일, 2013; 성준호, 2014; 신동현, 2014; 장병일, 2014).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CESL의 당면한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특단의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CESL은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전 부문의 입법이 종료된 상황에서 추후 형식적이고도 부차적인, 이를테면 동법안의 자구수정에 기한 종료단계에 놓여있다고 보아, 이 같은 선행연구의 부재는 외국의 선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의성 측면에서나 관심도 측면에서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적시할 수 있다고 본다(Rainald, 2012).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에 기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국외 선행논문과 단행본 및 학술연구자료, EU 내지 국제기구 등에 의해 발표된 공식 기관지·부속서·의견서·권고안·지침서 및 그 밖의 EU 회원국 의견서 내지 보고서뿐만 아니라 CISG를 위시하여 CESL과 관련한 법규범 및 각국의 실정법 등을 포함한 문헌연구방법에 의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그 저변에 크게 두 가지의 과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는 EU 회원국과의 국제상거래에 있어 CESL의 법리적 해석 및 법적용상의 시사점을 명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법적 기준에 관한 고찰의 성과와, 다른 하나는 CESL의 실무적용 시 유의점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무적 고찰의 성과로 대별할 수 있다. 본 결과로부터, 곧 이 같은 과급효과를 병합하여 학제 간 후속되는 연구 성과가 가일층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당해 구성체계의 근간은 CESL하에서 계약당사자의 계약책임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계약의 성립단계, 계약의 이행단계, 계약의 종료단계별로 삼분하여 당해 법적 기준의 명료한 추론을 통해 이에 대한 유의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기술한 본장으로 갈음하

고, 제2장에서는 CESL의 제정취지·입법연혁·적용범위·구성체계 등을 포함한 CESL의 의의, 법적 특징, 지위 및 규율범위를 다룬 CESL의 특질 그리고 계약단계별 주요 골자의 개괄적 수준에서의 내용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제3장에서 제5장은 CESL상의 B2B 계약에 주안점을 두고 CESL의 개별조문을 중심으로 각각의 계약단계에서의 법적 기준 및 특·장점을 추론하여 그 결과를 CISG와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주요 골자는 우선 제3장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을 계약의 성립 전과 계약의 성립단계로 각각 구분하고, 전자에서는 B2B에서 계약당사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정보제공의 정확성 보장,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등을, 후자에서는 계약체결의 방법, 의사표시의 하자, 계약내용의 해석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 경우 전·후자 공히 CISG와의 비교결과는 별도로 개별 항목에 이기하여 그 결과를 요약·분설하고자 한다.

제4장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을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로 대별하고, 각각의 의무위반에 기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CISG와의 비교를 통하여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제5장은 앞선 장에 준하여 계약의 종료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에 관하여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및 소멸시효로 대별하고 각각의 법률효과와 이에 대한 CISG의 처지를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6장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CESL의 국문번역본을 부록에 수록하여 본 연구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장 CESL의 의의와 특수성

제1절 CESL의 의의

앞서 본 바와 같이 EU 위원회는 2011년 10월 CESL을 채택하여 EU 의회에 상정하였는데, 당해 법안에는 물품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에 관한 법적 기준을 역내 회원국의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이후 동법안은 ‘본문’[regulation]⁹⁾ 및 ‘부속서’(annex) 형태로 종료되었는데, 본문은 CESL 제정배경 및 적용원칙에 대하여, ‘부속서 I’에서는 CESL의 186개 조문을, ‘부속서 II’에서는 국경 간 소비자 거래 시 적용되는 소비자의 주요 권리에 대한 요약정보를 담은 표준정보통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CESL은 ‘부속서 I’에 첨부되어 있다.

한편 이에 앞서 EU 위원회는 CESL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내 기업들이 회원국 간 거래에서 각국의 복잡한 계약법으로 인하여 260억 유로에 상당하는 거래가 좌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5억 명에 이르는 역내 소비자들이 재화의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있다고 적시하면서,¹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제적 기반 인프라로서 CESL의 필요성 및 유용성을 부각하였다. 이에 CESL은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 계약에도 적용 및 원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테면 EU 역내 국가 간 그리고 역외 국가와의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그 대상도 물품의 매매,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등으로 폭넓고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입안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처럼 하나의 법안에 B2C, B2B 분야는 물론이고 그 대상에 있어 물품 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 일부 회원국 및 법계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차제에 이에 상당한 법적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특히 디지털

9) 이하 CESL의 ‘본문’[regulation]은 기술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속서’(annex) I에 첨부된 개별조문과의 구분을 위하여 ‘CESL 총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0) 「www.allenoverly.com/SiteCollectionDocuments/CESL.pdf」.

콘텐츠의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조사에 따라 그 문제점이 상당하였다.

CESL은 법인격 및 행위능력의 결합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계약의 무효성, 불법성 또는 비도덕성, 계약내용에 대한 언어의 해석, 무차별의 폭과 범위, 무권대리 및 다수의 채무자 및 채권자의 법률효과, 양도·상계 및 합병을 포함한 당사자의 권리득실, 소유권 이전, 지적재산권 및 불법행위 등의 일련의 법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법정지, 서비스 및 그 집행에 관한 법적 기준 등에 대하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CESL은 당초 이 같은 광범위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 법이 아니고 오로지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이해보전을 위한 특정사항을 국내법의 일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던 까닭에, CESL은 계약당사자 자치에 따라 선택하고 또한 적용법으로서 취사할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1. 제정취지

EU의 통합 이후에도 역내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었다. 곧 EU 회원국에 소재한 대다수 기업들의 수출입활동은 일부 특정회원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환경은 세금부과의 복잡성, 필요외적 행정처리, 물품의 인도와 인도상의 위험이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배경은 무엇보다도 B2B 및 B2C 거래를 적의 규율할 수 있는 통일법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EU 회원국 간 상이한 계약법으로 인하여 역내 무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한다.

당해 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적용법은 특히나 국경을 넘어서는 무역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법기능상 수단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기업이 당해 적용법을 선택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이를 적의 조정·규율할 수 있는 통일법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으나, 달리 당해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단의 장애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이 같은 문제가 상당한 장애로 부각될 수 있기에 충분할 것인데, 통상 이는 법적용상 장애로 취급된다.

계약법상 적용법 관련 장애는 모름지기 수출지향적인 대부분의 무역기업들

의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인으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애는 필요외적 현저한 비용발생 내지 증가를 초래하고 그 결과 비용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전 방위적인 시장 창출 효과, 물품에 대한 R&D 내지 효율적인 영업이익 재분배 차원에서 다수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해 계약법상 장애가 강행적인 소비자 보호법과 상이하거나 때로는 상호 충돌할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B2C 거래에 관련하여 역내 경제활동을 현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 EU 역내 이 같은 환경의 실례로 계약주체에 적용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¹¹⁾[EC Regulation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Rome I), ‘EU 593/2008’] 제6조에서는,¹²⁾ 기업은 다른 회원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물품 내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익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매우 높고 나아가 동조에 의하여 이 경우 당해 수준을 이탈할 수 없는 소비자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같은 처지는 심지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단의 적용법이 선택된 경우

11) 「en.euabc.com/word/2077」.

12) EC 「593/2008」, Art. 6 (소비자계약) : “1. 제5조 및 제7조에 대한 침해 없이 자연인이 자신의 직업 이외의 목적(소비자 자격으로)으로 자신의 직업상 행하는 타인과 체결한 계약은 소비자가 자신의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직업상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a) 소비자가 상거소를 둔 국가에서 자신의 상업상 또는 직업상 활동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해 국가 또는 당해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 대한 활동을 감독하고 당해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적용법이 없는 경우 전항에 기초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의거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보호를 당해 소비자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1의 (a) 또는 (b)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와 상인간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1과 2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a)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자기가 상거소를 가진 국가가 아닌 국가에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의 서비스 공급계약, (b) 패키지여행, 패키지휴일, 패키지시간에 대한 1990년 6월 19일자 이사회지침[Council ‘Directive 90/314/EEC’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의 의미상 패키지여행 관련 계약이외의 운송계약, (c) ‘Directive 94/47/EC’의 의미상 부동산 대물권리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부동산 사용권에 대한 계약 이외의 부동산 차용권리, (d) 금융증권을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양도성 증권의 공개입찰 및 공개인수입찰 발행 또는 청약을 다루는 조건을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금융서비스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집단 투자 사업에서의 신청 및 상환 단위, (e) 제4조 1항 (h)의 범주에 있는 시스템 유형 내에서 체결된 계약.” 「eur-lex.europa.eu/hompage.html」.

에도 다름없이 적용된다. 이에 기업들은 소비자보호법의 수준이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 높은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필요외적 비용을 발생케 하는 동인으로 기능하게 됨이 통상이다.

다른 한편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¹³⁾에 있어서 당해 계약법에 타방 소비자 국가의 강행적 소비자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다. 현재 EU 수준에서 각국 간 소비자보호법의 조화는 어느 정도 통일적 시각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장애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EU의 규정요건 준수방법, 적용법상의 선택, 소비자 보호 수준 등에서의 문제는 매우 첨예한 상황이다. 또한 계약법 관련 장벽은 소비자에게도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 곧 역내 무역규모의 둔화 내지 감소는 물품 및 재화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하여 이로 인하여 외국기업들은 자신들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가 쉽지 않고, 물품의 매매 또한 B2B 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거래의 경우 대개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자거래를 꺼려하고 있음이 통상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계약법 관련 사항으로 귀결되는데, 이를테면 하자있는 물품구입 시, 물품의 반환 시, 물품대금지급의무에 대한 불합리한 약관이 개입된 경우 당해 소비자보호법에 기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요컨대 EU 회원국 간 계약법의 상이는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단일시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기능하기에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법 관련 장애는 만약 계약이 계약당사자의 소재지 여부에 상관없이 통일계약법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순기능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법 관련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EU 위원회에서 성안한 것이 곧 CESL이다. EU 위원회는 이로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의미와 해석을 가진 통일화된 계약법, 즉 CESL로부터 당해 계약의 규율 필요성을 제정취지에

13) 본 연구에서는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를 정히 구별하여 사용한다. 그 취지는 계약당사자의 구분의 실익에 따른 앞선 ‘거래’(transactions)와 ‘상거래’(commerce)의 구분과 동일하다.

결부하여 두고 있다. 곧 CESL은 계약당사자가 적용·원용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역내 무역을 신속·민활하게 도모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필요외적 비용의 절감, 그 밖의 계약법 관련 장애를 제거함에 있어 선결되어야 하는 법적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제정취지에 결부하고 있다. CESL은 회원국 간 기존 국내계약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고, 회원국의 계약법 체제 하에서 선택·원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CESL은 회원국 간 및 역외무역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용법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해 두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1).

2. 입법연혁

1) EU 이사회 보고서(1999)

당시 EU 의회는 역내 사법의 조화는 단일시장의 완성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EU 계약법 통일은 단일시장의 완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1994년 역내 사법의 통일지침의 입안에 착수하였다. 이후 EU 업무계획에 관한 2000년 3월 결의문에서 이상의 사전 입법조사 결과를 2001년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 당해 사전조사의 내용은 향후 역내 상거래 및 기술적 추이를 고려하여 회원국 간 법적 차이를 분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에 두고 있었다. 이는 당시 EU 이사회(핀란드 Tampere)에서 채택된 결의문 제39항에서, 역내 계약법의 실체와 관련, 민사절차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법분야에서 개별 회원국의 규정을 기초로 이를 통일화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명문화하였다.(European Council, 1999).

본 조항에는 금융 분야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정책적 시각에서 전자상거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의견조회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CECL’)에 의한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¹⁴⁾과 이에 부수하는

14) CECL은 EC 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었고, 당해 PECL을 제I부와 제II부로 구분하여 2000년에 출간하였다. 이는 Ole Lando 교수와 Hugh Beale 교수에 의하여 편집되었다. EU 회원국을 위한 이러한 공통원칙은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계약내용의 해석, 대리인의

‘계약법초안’(Universita Di Pavis)¹⁵⁾이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각각 출간되었다. 이후 당해 원칙 내지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밖의 사안들로서, 특히 금융서비스·보험계약·도급계약·팩토링·임대·재산법 등의 분야도 후속하여 조사되었다. 이러한 학리적 연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실정법 제정에서부터 각양의 분야에 대한 역내 회원국의 법률상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재기술’(restatement)의 형태에 따라 시의성 있게 발표되었다.

그 과정에서 EU 위원회는 개별 회원국의 다양한 계약법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예견가능한 문제와, 향후 계약법에 대한 통일화에 대한 법적용상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경우 전자의 경우로서 당해 일련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통일화된 국제사법규칙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 해결책으로서 부각된 것은, 첫 번째로 모든 회원국에 의하여 승인된 소위 ‘1980년 로마협약’(Rom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의 적용이었다. 로마협약은 국가 간의 ‘법의 선택’(choice of law) 및 계약상 의무에 적용되는데, 동 협약 하에서 계약당사자는 자치에 따라 국내법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제적 통일법 수준에서 적용가능한 CISG였다.¹⁶⁾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국에 영업소를 소재하고 있는 경우 다름없이 적용된다.¹⁷⁾ 이 경우 동 협약은 계약의 성립(제2편),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만 적용된다. 한편 CISG는 ‘계약의 유효성’(validity)과 당해 계약이 판매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효과도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권한, 계약의 이행과 불이행 및 그에 따른 구제수단의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PECL의 규정 전체에 대한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는 심종석, 2013부록을 참조).

15) 동 초안에서는 계약의 성립, 계약의 내용 및 형식, 계약의 해석 및 그 효과,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 계약의 종료 그 밖의 비정상적인 계약 및 구제수단에 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16) ‘비계약국’(non-contracting state)으로 영국·포르투갈·아일랜드·몰타 등 4개국은 제외된다.

17) CISG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계약체결 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하지도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경매에 의한 매매, (c) 강제 집행 그 밖의 법률의 수권에 의한 매매, (d) 주식·지분·투자증권·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e) 선박·부선·수상익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 (f) 전기의 매매.”

이러한 각양의 문제점 및 도출된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 등에 관하여 EU 의 회에서는 역내 통일적 수준에서의 계약법에 대한 종합적인 조화를 위한 일련 의 조치가 모색되었다. 그러나 당해 조치는 ‘EC 조약’(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제5조에 기한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y)과 ‘비례성 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장애에 직면하 였다.¹⁸⁾ 이 경우 보충성 개념은 그 권한이 역내 공동체 수준에서 행사되어지 는 방법에 제한 지침만을 제공하고 있는 까닭에, 당해 통일법이 역내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당해 공동체 수준에서의 조치가 회원국 법체계 내에 서 동일한 대우를 담보함에 있어서 그리고 당해 통일법으로부터 회원국 간 효 과적인 상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기업, 정부기관, 지역단체 기 관에 과중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편 비례성 개념은 역내 공통법상 일반원칙 중의 하나로, 곧 공동체 기구 에 의해 채택된 일련의 조치가 관련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며, 이 로 인해 초래되는 불이익이 추구하는 목적에 반하는 경우 문제의 규정이 합법 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이다(Commission of the EC, 2001). 이상의 원칙과 기준 내지 문 제점 등을 재확인한 시초가 당해 위원회에 의한 보고서의 결과였다.

2) PECL의 검토 (2001) - 1차

EU 위원회는 역내 계약법의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통일적

18) TEU, Art. 5 : “1. EU의 권한의 한계는 위임의 원칙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EU 권한의 사용 은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2. 위임의 원칙에 의거, EU는 동 협정에서 회원국에 의하여 수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동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동 조약에서 EU에 수여하지 않는 권한은 회원국에게 있다. 3. 보충성의 원칙 하에서, EU의 배타적인 권한에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하여, EU는 제안된 조치의 목적 이 회원국에 의하여 중앙수준, 지역수준 및 지방수준에서 충분히 달성될 수 없지만 제안된 조치의 규모 및 효과의 사유로 EU수준에서 목적달성이 더 나을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U의 각 조직은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 적용에 대한 의정서에 규정된 대로 보충성 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의 의회는 동 의정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충성 의 원칙 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비례성의 원칙 하에서, EU 조치의 내용과 형식은 동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U의 조직은 보충성과 비 례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규정된 바대로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의 시각에서 통일법의 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1년 PECL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EU 위원회는 회원국 간에 계약법의 다양성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각양의 문제에 대한 유관정보를 수집하였고, 이에 역내 회원국 간 계약의 체결, 계약내용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문제로부터 예견 가능한 장애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그간에 취했던 계약법 조화를 위한 접근방식이 역내 불일치성을 초래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과 EU 차원에서 통일법의 적용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나 회원국 간 법적용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이에 결부하였다. 그 결과로서 만약 특단의 구체적인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EU 위원회는 어떤 해결책을 취하여야 하는지 또는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동 보고서에는 이러한 해결책에 대한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시장기능에 맡기거나, 계약당사자 또는 국내 법원이나 중재인 및 법안작성자에게 도움이 되는 구속력이 없는 공통계약법 원칙을 개발하여 각국의 법을 조화시키거나, 기존의 역내 계약법의 수준을 보다 더 일관성 있게 재개정하거나, 마지막으로 역내 종합적이고 새로운 법을 채택하는 것 등이었다. 이상의 개별사안에 대하여 EU 위원회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조회하였고(Commission of the EC, 2001), 그 결과로서 역내 단일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법 적용을 위하여 EU 계약법의 통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회원국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3) PECL의 검토 (2003) - 2차

2001년 PECL에 관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EU 위원회는 2003년 2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법률용어의 정의를 포함하여 PECL의 기본적인 원칙과 일관성 있는 법적 기준을 포함한 CFR을 제정함으로서 법 기능상 PECL의 통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두었다. 동 보고서는 PECL의 통일적인 적용과 역내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비교·검토를 통해 계약법 분야의 통일성 증진에 그 목적을 두었다(Commission of the EC, 2003). 이상의 보고서는 유럽통일계약법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필요불급한 산고의 과정이었다.

4) CFR 입안작업 (2004) - 1차

2004년 EU 위원회 보고서는 CFR 입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는 2003년 보고서에 기한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취급된다. 당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그간 집적된 역내 계약법상 법이론에 관한 일관성 향상을 위해 CFR을 향후 어떻게 입안·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2006년까지 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그간의 집적된 법이론을 명료히 하는 것 등이었다. 나아가 이들 목적은 EU 차원에서 각양의 표준계약내용을 정형화하는데 두었다. EU 의회 및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과 목적에 기한 당해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문화하여 보고서로 채택·공표하였다(Commission of the EC, 2004).

5) CFR 입안작업 (2005) - 2차

1차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CFR 초안은 역내 각계의 전문가그룹으로 편성되어 수행되었는데, 이는 2005년 9월 제1차 CFR 연구결과보고서로 채택되었다. 당해 보고서는 CFR로부터 계약법 분야에서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이를 EU 역내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하는데 그 핵심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법률용어의 정의, EU 통일법의 지향에 있어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법의 일반원칙 및 그 밖의 모델규칙 등이다.

6) CFR 입안작업 (2007) - 3차

EU 위원회는 2007년 7월 보고서에서 소비자계약법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소작업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또한 그간의 검토 작업에서 비롯된 CFR의 구성체계 및 법적 기준 등에 관한 실질적 개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집약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계약법에 대한 준비작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적정성을 설명하고, CFR 검토 작업 시에 도출한 실체적인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나아가 그간 CFR과 동시에 검토 및 수정·보완되었던 DCFR에는 계약 및 계약상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계약법의 일반원칙, 법률용어의 정의 및 계약법상의 모델규칙 등을 병행하여 포함하였다. 이 경우 공통참조기준안으로서 DCFR은 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그간 수행

되어 왔던, 곧 EU 위원회 예하 ‘작업반’(working group, WG)에서의 입법작업 및 검토결과를 그 배경에 두고 있다. 그 내용은 개별사안에 관한 설명 내지 해제를 위시하여 특히 사례를 통한 조문설명을 이에 결부하고 있음이 특징인데, 주요 골자는 회원국 간 국내법적 체계, 현재의 공통법 내지 통일법 및 역내 국제적 통일법의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한 유의사항 등이다.

7) EU 계약법 전문가그룹 창설 (2010)

EU 위원회는 향후 유럽통일계약법 성안을 위해 2010년 역내 계약법 전문가 그룹과 핵심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을 창설하였다. 전자는 민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계약법에 있어 탁월한 지식을 가진 개인자격으로 임용된 전문가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 EU 역내 시장에서의 계약관계와 관련된 실무적 수준에서의 법적 사안을 포함한 계약법 성안을 그 목적에 두었다. 한편 후자는 역내 소비자, 기업 및 이해당사자로 구성되어, 전자의 성안에 대한 실무적 검토차원에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내용은 전자의 작업방법, 성안된 입법결과의 문안, 제반 법률용어의 정의, 신의 및 공정거래, 계약내용의 해석, 계약의 성립요건, 국제사법과의 연관성, 계약상의 법률효과,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 상황변동, 계약의 유효성, 불이행과 구제수단,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금, 소멸시효, 소비자 보호수준, 원상회복, 서비스계약, 불공정한 행위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등 이었다(DiMatteo, 2012; European Commission, 2010).

8) CESL 연구 (2010) - 1차

2010년 7월 EU 위원회는 소비자 및 기업을 위한 역내 공통매매법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여 공개적인 논의에 착수하였다. 당해 보고서의 목적은 전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원국 간의 계약법 차이가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발생할 수 있고, 기업에게는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역내 단일시장에서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두었다. 곧 당해 보고서는 유럽통일계약법을 통하여 역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건언하

기 위하여 전 방위적인 입법토론을 개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중전에 역내 국제적 통일계약법 내지 일반원칙으로 기능하였던 CISG를 위시하여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에 의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PICC(2010)], CECL에 의한 PECL 등과의 총체적인 비교 또한 병행하였다. 그 결과로서 부각된 것은 이상의 통일계약법 내지 일반원칙들의 범주가 B2B 계약에만 한정되어 있고, 특히 CISG의 경우 물품의 매매에만 한정되어 있음이 적시되었다. 나아가 이들이 각국의 강행규칙의 적용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음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EU 위원회에서는 CFR의 성안을 요청하고 역내 계약법의 법적 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작업을 별단의 전문가 작업반을 결성하여 임하게 하였다. 동 작업반에서는 기업 및 소비자를 아울러서 거래 내지 계약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내 통일계약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DCFR의 일부를 선택하여 이를 재구성하고 나아가 수정·보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였다.

9) CESL 연구(2011) - 2차

이상의 1차 회의의 결과는 2011년 4월 전문가 작업반(WG)의해 총 189개의 조문으로 집약되었다. 당해 작업반의 결과는 회원국 간의 계약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적용상의 문제를 공히 CESL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위 ‘부속서’[Commission Expert Group on European Contract Law Feasibility study for a future instrument in European Contract law] IV에 수록되어 공표되었다. 당해 법안은 총 제8부 89개 조문 및 2개의 부속서[I (a), II(b)]로 구성되었다. 이 경우 제1부는 도입규정으로 법안에 사용된 특정개념의 의미, 신의 및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법상 강행규정을 제외한 계약자유 원칙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계약의 성립, 철회 및 취소, 계약 전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지급수단의 다양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3부는 계약내용의 해석, 무효로 취급할 수 있는 계약내용, 표준약관의 법적 기준, 소비자에게 있어서의 현저한 불균형 등을, 제4부는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제5부는 서비스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제6부는 손해배상

금, 불이행에 대한 지급 및 이자, 제7부는 원상회복, 제8부는 소멸시효를 다루고 있다. 부속서 I(a)는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속서 I(b)는 표준철회양식이 수록되어 있다(DiMatteo, 2012; European Commission, 2010).

10) CESL 제안 및 이후의 경과 (2011) - 최종

2011년 10월 EU 위원회는 CESL에 대한 최종 제안을 채택하고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제출 시 당해 제안은 제정배경 및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한 개요[explanatory memorandum], 제안 규정(제안배경 및 CESL의 적용원칙 및 발효) 및 당해 규정의 부속서로 CESL의 구체적인 조문 및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표준정보통지’(standard information notice)로 구성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법안의 목적은 기업에게는 국경 간 상거래를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재화의 효용가치에 기한 회원국 간 신속·민활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함에 있다. 당해 EU 위원회에 의한 제안은 EU 의회에서 통상적인 법률절차로서 사전 검수[first reading]를 거쳐 일부 수정안을 제시한 유럽의회 입법부 결의안을 2014년 2월에 채택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14). 이후 EU 의회는 일부 수정안을 EU 위원회에 송부하면서 동 위원회의 제안을 수정하거나 또는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안을 재차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이사회, 위원회 및 EU 회원국 28개 국가의 의회에 통보하도록 유럽의회 의장에게 요구하였다. EU 위원회는 당해 제안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고, 누락된 부분을 CESL에 보강하기 위하여¹⁹⁾ EU 위원회 2015년 업무계획[Modified proposal in order to fully unleash the potential of e-commerce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통해 철회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4). 현재 당해 사유에 기한 보강을 위해 저작권법을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함에 있어 일련의 규칙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CESL의 개정방향은 디지털 콘텐츠 구매 관련 규정작업과 EU 의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적의 반영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Clive, 2015).²⁰⁾

19) 「ec.europa.eu/justice/newsroom/contract/opinion/150609_en.htm」.

20) 「www.epln.law.ed.ac.uk/2015/01/07/proposal-for-a-commerce-european-sales-law-withdrawn」.

<표 01> CESL의 연혁

구 분		주요 내용
01	◦ EU 이사회보고서(1999)	◦ 역내 사법의 통일지침 입안 착수 ◦ PECL 계약법초안(<i>Universita Di Pavis</i>) 출간
02	◦ PECL의 검토 : 1차(2001)	◦ PECL의 법적 기준의 검토 ◦ 역내 통일법 제정 시 문제점 도출 및 검토
03	◦ PECL의 검토 : 2차(2003)	◦ PECL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발행 ◦ 당해 보고서에 기한 CFR의 필요성 제기
04	◦ CFR 입안작업 : 1차(2004)	◦ CFR의 입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법이론의 명문화 ◦ 역내 표준계약서식 및 내용의 정형화 작업
05	◦ CFR 입안작업 : 2차(2005)	◦ CFR 연구결과보고서 발행 ◦ CFR에 기한 법률용어, 일반원칙 등의 정비
06	◦ CFR 입안작업 : 2차(2007)	◦ 소비자계약법에 대한 법적 문제점 도출 ◦ CFR 구성체계 및 법적 기준 검토 ◦ DCFR의 정비와 수정·보완
07	◦ EU 계약법 전문가그룹(2010)	◦ 계약법 전문가그룹과 핵심이해관계자 그룹 ◦ 역내 공통계약법의 성안 ◦ 계약과 관련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검토
08	◦ CESL 연구(2010-1)	◦ 역내 공통매매법에 관한 정책보고서 발간 ◦ 국제통일계약법규범과의 비교 ◦ CFR 필요성 부각 및 입법안 수정·보완
09	◦ CESL 연구(2011-2)	◦ 189개 조문 및 부속서
10	◦ CESL 연구(2011-최종)	◦ CESL 최종안 채택 ◦ CESL, EU 의회에 의한 채택 ◦ CESL, EU 위원회에서의 철회 ◦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안 수정·보완

3. 적용범위

CESL 총칙[regulation]²¹⁾에서는 동법안이 회원국 간 실정법에 결부할 수 있는 선택적 권고사항이며(European Parliament, 2014), 동시에 제4조 내지 제7조의 범위 내에서 물품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관련된 서비스의 무역계약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조).²²⁾²³⁾ 이 경우 B2B 계약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영업소가 각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무역계약은 적어도 일방이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을 그 요건에 두고 있다(제4조).²⁴⁾ 한편 B2C 계약이 무역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상거소, 물품의 인도지 또는 대금청구지가 기업의 영업소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고 또한 이들 국가 중 하나는 회원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CESL이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는 매매계약을 위시하여 전자상거래의 경우 작성·저장·전송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에 한정하고

21) 이하 ‘규정’(regulation)은 CESL 편제에 따라 편의상 ‘CESL 총칙’ 또는 ‘총칙’이라 칭한다.

22) CESL상 ‘국경 간 계약’(cross border contract)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의 상무적 시각을 중시하기 위한 달리 그 의미가 왜곡 또는 변질되지 않음을 전제하고 이하 ‘무역계약’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23) CESL, Regulation, Art. 3 (Optional natur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 “The parties may agree that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governs their cross-border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for the provision of related services within the territorial, material and personal scope as set out in Arts. 4 to 7.”

24) CESL, Regulation, Art. 4 (Cross-border contracts) : “1.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may be used for cross-border contracts.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a contract between traders is a cross-border contract if the parties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in different countries of which at least one is a Member State. 3.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a contract between a trader and a consumer is a cross-border contract if: (a) either the address indicated by the consumer, the delivery address for goods or the billing address are located in a country other than the country of the trader's habitual residence; and (b) at least one of these countries is a Member State. 4.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the habitual residence of companies and other bodies, corporate or unincorporated, shall be the place of central administration. The habitual residence of a trader who is a natural person shall be that person'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5. Whe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the course of the operations of a branch, agency or any other establishment of a trader, the place where the branch, agency or any other establishment is located shall be treated as the place of the trader's habitual residence. 6.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 contract is a cross-border contract the relevant point in time is the time of the agreement on the us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있다. 제6조에서는 상기 언급한 계약을 제외한 혼합계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과 소비자 계약 시 신용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²⁵⁾ 제11조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다.²⁶⁾ 제13조에서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업의 영업소 또는 B2C 계약의 경우 기업의 영업소, 소비자의 상거소, 물품인도지 및 대금청구지가 회원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²⁷⁾

4. 구성체계

1) CESL 총칙

EU 의회 및 이사회 CESL 제안서는 총칙(regulation)²⁸⁾과 CESL의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는 ‘부속서 I’ 그리고 ‘표준정보통지’(standard information notice)를

-
- 25) CESL, Regulation, Art. 6 (Exclusion of mixed-purpose contracts and contracts linked to a consumer credit) : “1.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may not be used for mixed-purpose contracts including any elements other than the sale of goods,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the provision of related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Art. 5. 2.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may not be used for contracts between a trader and a consumer where the trader grants or promises to grant to the consumer credit in the form of a deferred payment, loan or other similar financial accommodatio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may be used for contracts between a trader and a consumer where goods, digital content or related services of the same kind are supplied on a continuing basis and the consumer pays for such goods, digital content or related services for the duration of the supply by means of instalments.”
- 26) CESL, Regulation, Art. 11 (Consequences of the us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 “Where the parties have validly agreed to use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for a contract, only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shall govern the matters addressed in its rules. Provided that the contract was actually concluded,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shall also govern the compliance with and remedi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contractual information duties.”
- 27) CESL, Regulation, Art. 13 (Member States' options) : “A Member State may decide to make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available for: (a) contracts where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traders or, in the case of a contract between a trader and a consumer,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trader, the address indicated by the consumer, the delivery address for goods and the billing address, are located in that Member State; and/or (b) contracts where all the parties are traders but none of them is an SME within the meaning of Art. 7(2).”
- 28) 소위 ‘chapeau’라고도 칭하여지며, 이는 CESL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 역내시장에 관한 법적 기초인 TFEU 제114조,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의 중요성, 인적·물적·영역적 범위, 국경간 거래에 대한 적용 메커니즘, 제3국의 위치 등을 다루고 있다.

다루고 있는 ‘부속서 II’로 구성되어 있다(Micklitz, 2012).

우선 총칙에는 제정취지를 비롯한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차례로 요약·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CESL의 목적 및 대상에 대하여,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물품의 매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무역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선택권을 다루고 있고, 제3조는 무역계약에 한정되는 범위, 제5조는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실질적 계약범위, 제6조는 적용범위에서 혼합목적의 계약 및 설치거래 등의 적용배제사항, 제7조는 B2C에 적용되는 개인용품의 범위와 B2B의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8조는 CESL 적용합의의 요건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B2C 계약은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되는 경우 그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9조는 B2C 계약 시 정보제공요건을 정하고 있다.

제10조는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기업이 위반한 경우 회원국에게 이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제11조는 CESL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안이 적용되고, 회원국의 국내법은 일절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본조에 따라 CESL을 당해 계약의 적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 계약 전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의 준수가 소급하여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수단의 소급효도 이에 준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CESL이 역내 단일시장 서비스에 관한 ‘2006/123/EC지침’(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²⁹⁾의 정보요건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제13조는 회원국 국내 및 B2B 계약에도 상거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별단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제14조는 역내 CESL에 의한 판결의 집적을 위하여 CESL이 적용된 개별 회원국의 판결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15조는 검토조항, 제16조는 CESL의 발효시기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Clive, 2012). 이상 CESL 총칙의 구성체계를 표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29)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6L0123&from=EN」.

<표 02> CESL 총칙의 구성체계

구분	조문의 내용
제01조	목적 및 대상(Objective and subject matter)
제02조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제03조	CESL의 선택(Optional natur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제04조	무역계약(Cross-border contracts)
제05조	CESL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 (Contracts for which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can be used)
제06조	혼합계약과 소비자 신용 관련 계약의 배제 (Exclusion of mixed-purpose contracts and contracts linked to a consumer credit)
제07조	계약당사자(Parties to the contract)
제08조	CESL의 적용에 관한 합의 (Agreement on the us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제09조	B2C 계약에서 표준정보통지 (Standard Information Notice in contracts between a trader and a consumer)
제10조	특정요건 위반에 대한 벌칙(Penalties for breach of specific requirements)
제11조	CESL의 적용 결과 (Consequences of the us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제12조	서비스 지침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요건 (Information requirements resulting from the Services Directive)
제13조	회원국의 선택사항(Member States' options)
제14조	CESL이 적용된 판결의 통보 (Communication of judgments applying this Regulation)
제15조	검토사항(Review)
제16조	발효 및 적용(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2) CESL의 조문구성

‘부속서 I’에 수록된 CESL은 총 8부,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1부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모든 거래당사자는 신의 및 공정거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CESL상 소비자 보호와 같이 강행적이라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유 원칙에 의거 CESL을 변경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2부는 유효한 계약 작성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위한 필수정보를 알 권리에 대한 규정과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원거리 및 장외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는 특별규정이 있다. 또한 착오·사기·강박 또는 부당행위의 경우 계약해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부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곧 계약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해석기준을 일반규정으로 명정하고 있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로 취급될 수 있는 사유, 계약내용 및 효과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제4부는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에 관한 것으로 매매계약,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한 특별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도 다루고 있다. 제5부는 관련된 서비스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에 대한 것으로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과 관련하여 설치·보수 또는 유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 경우 어떤 특별규칙이 적용되는가, 특히 당해 계약 하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가 어떤 것인가 등을 다루고 있다. 제6부는 손해배상금 및 이자에 대한 것이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한 보충적인 공통규칙을 다루고 있다. 제7부는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될 때 반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제8부는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계약 하에서 권리행사에 대한 시간경과 효과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부록(appendix) 1은 원거리 또는 장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철회지침모델을, 부록 2는 모델철회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부속서 II’는 CESL에 대한 표준정보통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CESL의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표 03> CESL 조문의 구성체계

조문 체계		조문구성
제01부 일반규정		
	제01장 일반원칙 및 적용	
	제01절 일반원칙	제001조-제003조
	제02절 적용	제004조-제012조
제02부 계약의 구속력		
	제02장 계약 전 정보	
	제01절 B2C거래 시 제공되는 계약 전 정보	제013조-제022조
	제02절 B2B거래 시 제공해야 할 계약 전 정보	제023조
	제03절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	제024조-제027조
	제04절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확보 의무	제028조
	제05절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029조
	제03장 계약체결	제030조-제039조
	제04장 B2C 간 원거리 및 장외계약 취소권	제040조-제047조
	제05장 의사표시의 하자	제048조-제057조
제03부 계약내용의 해석		
	제06장 해석	제058조-제065조
	제07장 내용 및 효력	제066조-제078조
	제08장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01절 일반규정	제079조-제081조
	제02절 B2C 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082조-제085조
	제03절 B2B 계약시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086조
제04부 매매계약 또는 디지털 콘텐츠공급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제09장 일반규정	제087조-제090조
	제10장 매도인의 의무	
	제01절 일반규정	제091조-제092조
	제02절 인도	제093조-제098조
	제03절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	제099조-제105조
	제11장 매수인의 구제	
	제01절 일반규정	제106조-제108조
	제02절 매도인에 의한 치유	제109조
	제03절 이행요구	제110조-제112조
	제04절 매수인의 의무이행 보류	제113조
	제05절 해제	제114조-제119조

	제06절	대금감액	제120조
	제07절	B2B계약 시 검사 및 통지요건	제121조-제122조
제12장	매수인의 의무		
	제01절	일반규정	제123조
	제02절	대금의 지급	제124조-제128조
	제03절	수령	제129조-제130조
제13장	매도인의 구제수단		
	제01절	일반규정	제131조
	제02절	이행요구	제132조
	제03절	매도인의 의무이행 보류	제133조
	제04절	계약해제	제134조-제139조
제14장	위험의 이전		
	제01절	일반규정	제140조-제141조
	제02절	B2C계약 시 위험의 이전	제142조
	제03절	B2B계약 시 위험의 이전	제143조-제146조
제05부 관련된 서비스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			
	제15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	
		제01절	계약에 대한 특정한 일반규칙의 적용
		제02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03절	고객의 의무
		제04절	구제수단
제06부 손해배상금 및 이자			
	제16장	손해배상금 및 이자	
		제01절	손해배상금
		제02절	지연이자(일반규정)
		제03절	기업에 의한 지급지연
제07부 원상회복			
	제17장	원상회복	
			제171조-제177조
제08부 시효			
	제18장	소멸시효	
		제01절	일반규정
		제02절	시효기간 및 개시
		제03절	시효기간의 연장
		제04절	시효기간의 갱신
		제05절	시효의 효과
		제06절	합의에 의한 수정

제2절 CESL의 특질

1. 법적 특징

CESL은 EU 역내 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각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경우 특별법의 법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이로써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기에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CESL은 무역계약에 있어 법적용상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용된다.

CESL은 당초 법안 제정 시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14조에 근거하고 있는데,³⁰⁾ 곧 CESL은 역

30) TFEU, Art. 114: “1. 이 조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정은 제26조에서 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용한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통상적인 법률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 조약의 목적으로서 역내시장의 설립 및 기능을 가지는 회원국에서의 법, 규정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규정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전항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련하여 금전적 규정에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고용된 자의 권리 및 이익에 관련된 금전적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는 건강·안전·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항에 있는 제안에 있어서,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새로운 발전을 특별히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또한 EU 각각의 권한 하에서,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모색하여야 한다. 4. 만약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조화조치를 채택하고 난후, 회원국이 제36조에 언급된 주요 필요성의 근거로 또는 환경이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자국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위원회에 동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과 이러한 규정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또한 4항의 침해 없이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조화조치를 채택하고 난 후, 회원국이 조화조치의 채택이후 발생하는 당해 회원국의 특정 분야에 대한 근거에 대한 환경 또는 작업환경 관련한 새로운 과학적인 증명에 기초한 자국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규정안 및 동 규정도입에 대한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4항 및 5항에 정한 바대로 통지를 받은 후 6월 이내 동 통지가 회원국 간에 무역에 대한 위장 제한 또는 독단적인 차별의 방법인지 그리고 역내시장의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지를 확인한 후 회원국 자체의 규정을 승인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만약 4항 및 5항에 있는 회원국 자체 국내규정을 정해진 기한 안에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경우, 4항 및 5항에 언급된 회원국 자체 국내규정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사람의 건강에 위험하지 않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회원국에게 이 조항에서 언급한기간이 추가로 6월 연장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다. 7. 6항에 의거, 회원국이 조화조치에서 벗어나는 자국의 규정을 유지하거나 도입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위원회는 동 조치에 대한 적용규정을 제안할지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 8. 일국 회원국이 사전 조화조치의 대상인 분야에서 공공보건에 관한 특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제안할지 여부를 즉시 검토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9. 제258조 내지 제259

내 공통매매법의 형태로 소비자보호규칙을 포함한 일체형의 계약법으로서 역내 회원국의 이룰데면 특별법의 형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국내법으로서 그 지위를 보유한다(Kuipers, 2008).

이러한 해결책은 역내 회원국의 국내법 간 법리적 차이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고 또한 무역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상이 내지 복잡성에 기한 추가비용 절감,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구매력 상승 등의 효과를 그 배경에 두고 있다. TFEU 제114조에 따라 CESL은 기존 EU 소비자법 하에서 소비자 보호수준을 제고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강행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법안은 TEU 제5조에 있는 보충성의 원칙과 일치하고 있다(Kuipers, 2008).

CESL은 역내 거래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개별 회원국 국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분야는 배제된다. 또한 CESL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각국 법체계 및 상관행 등을 방해하지 않고 역내 계약법의 최소기준을 명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실효성을 부각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1).

2. 법적 지위

국제적 통일법으로서 CISG에 비추어 CESL은 당사자의 의무 및 불이행의 법적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요컨대 이들 법안은 그 구성면에서 대칭적 편제로 체계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양자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CESL은 법계 간 타협에 의해 성안된 결과로서 CISG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하자, 계약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 표준약관의 삽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소유권 또는 담보권의 이전에 대한 법률효과 및 계약의 유효성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기준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CESL은 서비스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계약에 대한

조에 있는 절차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위원회 및 여타 회원국은 만약 본조에서 정한 권한을 다른 회원국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판단되는 경우 동 사안을 EU사법재판부에 바로 제기하여야 한다. 10. 상기에 언급한 조화조치가 적절한 경우에, 제36조에 언급된 비경제적인 1개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EU 통제절차 조건의 임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서는 동 회원국에게 허가하는 긴급조치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것 또한 다루고 있음을 이에 후보할 수 있다. 또한 CESL은 ‘서식의 교전’(battle of forms)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여 그 위상을 돋보이고 있다. 곧 CESL은 보다 포괄적이고 응집된 규칙을 갖고 있다(Loos, 2012).

그렇지만 규정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CESL과 CISG의 입법체계 내지 조문 내용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그럼에도 역내 법원이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CISG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하는 시각에서 CESL의 법적 지위를 엿볼 수 있다(Aksoy, 2013).

이 같은 사실은 CISG보다 CESL을 선택하는 것이 역내 계약주체에게 있어서는 보다 유리할 것임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가 역내 계약주체로서 당사자의 이해를 법적 안정성 내지 예견가능성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단초는 아닐 것이라 본다.

요컨대 CESL에 대한 보충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례로 표준약관, 서식교전 및 이행보류권에 대한 CESL의 법리적 접근은 CISG의 법적 기준 보다 명확히 하고 나아가 실무적용상 법적 안정성 내지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효용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Zoll, 2012).

3. 규율범위

1) 목적 및 대상

CESL의 목적은 EU 역내 통일계약법을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내시장의 설립조건 및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두고 있다. 당해 법안은 물품판매를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무역거래를 위하여 적용된다. 요컨대 CESL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확실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당해 법안을 통해 실질적 기대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내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고 있다. 나아가 B2C 계약과 관련하여 동 법안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천명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로부터 역내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총체적인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Kornet, 2012).

2) 용어의 정의

CESL의 목적상 제반 용어의 정의를 차례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약’(contract)이라 함은 의무 또는 그 밖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합의를 의미한다. ‘신의 및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라 함은 정직·개방·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고려 또는 당해 관련성에 의하여 특정되는 행위의 표준을 말한다. ‘손실’(loss)이라 함은 삶의 질의 손상 또는 기쁨의 상실과 같은 비경제적 손실의 기타 형태를 제외한 고통형태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표준계약’(standard contract terms)이라 함은 여러 당사자가 개입된 일련의 거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작성되었으며, 동 법안의 의미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은 계약내용을 말한다. ‘기업’(trader)이라 함은 당사자의 사업·거래·직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소비자’(consumer)라 함은 당사자의 사업·거래·직업상이 아닌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손해배상금’(damages)이라 함은 당사자의 손실·상해·손상에 대한 배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물품’(goods)이라 함은 전기 및 천연가스, 한정된 수량의 판매를 제외한 물 및 그 밖의 가스를 제외한 유형의 동산을 말한다. ‘대금’(price)라 함은 판매된 물품 및 공급된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로서의 금전을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라 함은 매수인의 사양에 따라 비디오, 오디오, 그림 또는 작성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게임, 소프트웨어, 기종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인화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공급되는 자료를 의미하나, 온라인 은행서비스 등의 금융서비스,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법적 또는 금융서비스, 전자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전자적인 통신서비스 및 네트워크와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서비스, 도박, 소비자에 의한 또는 다른 사용자의 생성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의 작성 및 기존 디지털 콘텐츠의 수정 등은 제외한다. ‘매매계약’(sales contract)은 기업[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타인[매수인]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것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제조되거나 생산될 물품

의 공급계약을 포함하며 공매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행사와 관련 된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소비자 매매계약’(consumer sales contract)은 매도인이 기업이고 매수인은 소비자인 매매계약을 말한다. ‘관련된 서비스’(related service)는 매매계약,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 또는 이와 동시에 체결된 별단의 관련된 서비스계약 하에서 물품의 매도인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치·유지·수리 또는 그 밖의 가공과 같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 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이 경우 운송서비스, 훈련서비스, 통신지원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등은 제외한다.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는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물품의 매도인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자를 말한다. ‘고객’(customer)은 관련된 서비스를 구매한 자를 말한다. ‘원거리계약’(distance contract)은 기업의 물리적인 존재 없이 체결되는 원거리 매매 하에서 또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 당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거리 통신방법에 의하여 그 기업을 대리하는 자연인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장외계약’(off-premises contract)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약을 의미하며, 기업이 물리적인 존재 하에서 체결되거나 또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 그 기업을 대리하는 자연인과 소비자가 기업의 영업지가 아닌 장소에서 체결되거나 또는 동일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한 청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기업의 영업장소에서 체결되거나 또는 소비자가 기업의 물리적인 존재 하에서 기업의 영업지가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즉시 원거리 통신수단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 그 기업을 대리하는 자연인과 소비자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기업에 의하여 조직된 행사기간 동안에 체결되거나 또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 그 기업을 대리하는 자연인이 당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촉·판매하거나,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소’(business premises)은 기업이 영구적인 장소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이동할 수 없는 소매장소 또는 기업이 통상적인 기초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이동할 수 있는 소매장소를 말한다. ‘상업적 보장’(commercial guarantee)이라 함은 불일치의 경우 지급된 대금의 상환·대체·수리 또는 만약 물품이 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보증서나 계약 체결 시까지 입수된 관련 광고에 있는 일치와 관련이 없

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내구성 있는 매체’(durable medium)는 정보목적상 적절한 시기동안 장래에 참고하기 위하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언급된 정보를 일방이 저장할 수 있고 또한 저장된 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의 재현을 허용하는 매체를 말한다. ‘공매’(public auction)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기업이 개인적으로 공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나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공매자가 운영하는 명백하고 경쟁적인 입찰절차에 의하여 제공되고 성공적인 입찰자가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구매를 구속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강행규칙’(mandatory rule)은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당사자가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채권자’(creditor)는 타인 즉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을 불문하고 의무이행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채무자’(debtor)는 타인 즉 채권자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을 불문하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의무’(obligation)는 일방이 법적 관계에 있어서 타방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Magnus, 2012).

3) CESL의 선택과 무역계약

계약당사자는 CESL이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무역계약을 동 법안에서 언급한 영역, 물적, 인적 범위 내에서 다룬다고 합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역계약’(cross-border contracts)은 CESL의 목적상 B2B 계약에 있어 만약 그들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일방의 영업소가 회원국에 소재한 경우, B2C 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표시한 주소, 물품송부처 또는 대금지급지가 기업의 영업소가 소재한 이외의 국가에 위치해 있거나 이러한 국가의 하나가 회원국인 경우를 총칭한다. 또한 계약이 기업의 지점, 대리점 등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그 지점 또는 대리점 등이 소재한 장소가 그 기업의 영업소로 취급된다.

4) CESL의 적용요건과 배제

CESL은 매매계약, 디지털 콘텐츠가 대금지급과 교환으로 공급된 것과는 상

관없이 또는 사용자가 저장하고, 처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매체로 제공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과, 별도의 물품대금이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합의된 여부와 상관없는 서비스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이외의 요소를 포함한 혼합목적의 계약과, 기업이 연지급·대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융약정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을 허여하거나 허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B2C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동일 종류의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소비자가 그러한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기간 동안 분할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계약에는 적용할 수 있다.

5) 계약당사자와 합의의 요건

CESL은 물품의 매도인 또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자가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되나, 계약당사자가 모두 기업인 경우 적어도 일방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250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고, 연매출액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4천3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영업소가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CESL은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 경우 B2C 간 관계에 있어서 동 법안 사용에 대한 합의는 소비자의 동의가 계약체결을 위한 합의를 표시한 진술과 별도로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그러한 합의의 확약서를 내구성이 있는 매체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B2C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동 법안은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Whittaker, 2012).

6) 표준정보통지

CESL에 규정된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 이외에 B2C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은 부속서 II에 있는 정보통지서를 확실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합의 전에 CESL의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만약

CESL의 사용에 대한 합의가 전화 또는 소비자에게 정보 통지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정보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당해 합의에 관한 여하한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정보통지가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하이퍼링크가 있거나 그 밖의 웹사이트가 표시되어야 한다(Hesselink, 2012).³¹⁾

31) 그 밖에 CESL의 사용결과, 정보요건, 회원국의 선택, 판례통보, 검토 등에 관한 공적 사항은 부록에 의한다.

제3절 CESL의 내용

1. 계약의 성립단계

1) 제1부 : 일반규정

계약의 성립단계는 일반규정(제1부), 계약의 구속력(제2부), 계약내용의 해석(제3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계약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계약의 자유, 신의 및 공정거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적용사항으로는 해석, 합리성, 불요식,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 계약의 해제, 혼합목적의 계약, 통지, 기간의 계산, 일방적인 진술 및 행동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본문에서 명기하는 조문내용은 기술편의상 요약본으로 같음하고 원문해석은 부록에 의함을 참고한다).

<표 04> CESL 제1부

제1부(일반규정)
제01장 : 일반원칙 및 적용
제1절 : 일반원칙
제001조(계약의 자유) 계약체결자유, 강행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내용결정자유
제002조(신의 및 공정거래) 신의 및 공정거래 행동의무와 위반 시 권리행사 배제
제003조(협력) 계약의무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의무
제2절 : 적용
제004조(해석) CESL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CESL 범위에 있지만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슈는 이 법의 목적과 이 법이 기초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해석, 일반규칙과 특별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규칙이 우선 적용
제005조(합리성) 합리성은 계약의 성격, 목적, 당해 사안의 상황, 관련 업종의 관습 및

관행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임

제006조(불요식)

달리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진술, 행위 등은 불요식에 기함

제007조(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

일방이 제공하였고 상대방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중 일부만 선별하여 제공한 경우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것으로 봄. 개별적으로 협상되었다는 입증은 주장하는 당사자의 책임임

제00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쟁해결 계약내용은 계약해제 이후에도 유효함.

제009조(혼합목적의 계약)

계약대상이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관련된 서비스 제공인 경우 비례계산되어질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해제 가능

제010조(통지)

법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진술의 전달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또한 도달주의에 의함

제011조(기간의 계산)

일, 주, 월, 연으로 표기하는 기간에 대한 계산 기산방법

제012조(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동)

일방적 진술은 수령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되며, 특징의 미는 상대방이 그러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경우 의도한 대로 해석

2) 제2부 : 계약의 구속력

제2부에서는 구속력 있는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4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서, 첫 번째 장은 계약 전 정보, 두 번째 장은 계약체결, 세 번째 장은 B2C간 원거리 및 장외계약 취소권, 네 번째 장은 의사표시의 하자 등이다. 계약 전 정보는 B2C 간 그리고 B2B 간 거래 시 제공하여야 할 계약 전 정보로 구분되고 나아가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확보의무, 정보제공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이에 결부하고 있다. 계약체결의 장에서는 계약체결요건·청약·승낙·계약체결시기·승낙적격·충돌되는 표준약관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에서는 착오·사기·강박·불공정 착취·취소·추인·손해배상·구제수단 등을 다루고 있다.

<표 05> CESL 제2부

제2부(계약의 구속력)
제02장 : 계약 전 정보 제1절 : B2C 거래 시 제공되는 계약 전 정보 제013조-제022조(※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2절 : B2B 거래 시 제공하여야 할 계약 전 정보 제023조(물품 및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공급자의 정보제공 요소 및 미제공시 신의 및 공정거래 위반 제3절 :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 제023조(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원거리 계약에서의 정보제공 추가의무) 기업이 전자적으로 계약체결 시 청약을 작성하거나 승낙하기 전 잘못된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 제공의무 제025조-제027조(※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4절 :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확보의무 제028조(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보할 의무)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정보제공자는 제공정보가 정확하도록 합리적 주의기울일 의무가 있음.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신뢰한 자는 구제수단 행사 제5절 정보제공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조치 제029조(정보제공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정보제공의무 위반자는 그러한 결과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책임부담 제03장 : 계약의 체결 제030조(계약체결요건)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짐. 제031조(청약) 제안이 청약이 되기 위하여서는 계약의사가 있고 계약내용이 충분하고 확실하여야 함. 제032조(청약의 취소) 청약의 취소요건과 무효가 되는 경우 언급 제033조(청약의 거절) 청약의 거절이 청약자에게 도달 시 청약 소멸 제034조(승낙) 청약에 대한 동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행위로 표시

제035조(계약체결시기)

승낙이 송부되는 경우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체결되며, 행위는 행위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기로 봄. 당사자 간 관행에 의한 경우 통지없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행위 개시시점

제036조(승낙의 시기)

청약에 명기한 기한 내 도달 시 유효. 지정기한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 청약자에 도달 시 유효

제037조(지연된 승낙)

청약자가 유효하다고 지체없이 통보하는 경우 유효

제038조(수정된 승낙)

피청약자가 실질적 변경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청약

제039조(표준약관의 충돌)

청약과 승낙이 충돌되는 표준약관의 경우에도 합의에 이른 경우 계약이 성립되며, 공통부분만 계약의 일부가 됨

제04장 : B2C 간 원거리 및 장외계약 취소권

제040조-제47조(※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05장 : 의사표시의 하자

제048조(착오)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될 때 존재하고 있는 사실 또는 법의 착오로 인하여 계약취소 가능

제049조(사기)

일방은 타방이 구두 또는 행위에 의하여 신의 및 공정거래 또는 여타의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가 그 당사자로 하여금 요구하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

제050조(강박)

일방은 상대방이 잘못되고 압박하고 심각한 손해 또는 잘못된 행위의 위협으로 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제051조(부당한 착취)

일방은 계약체결 시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가졌거나 경제적인 고통 또는 긴급 수요를 가졌거나 무지, 경솔, 경험이 없고 상대방은 이것을 악용하여 과도한 혜택 또는 불공정한 이익을 취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제052조(취소의 통지)

취소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유효하며, 착오의 경우에는 6월, 사기·강박·부당한 착취의 경우에는 1년임

제053조(추인)

이 장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관련 상황을 알거나 명시적 묵시적으로 추인한 경우 계약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음

제054조(취소효과)
 취소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 일단 취소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로 취급

제055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 장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거나 기한의 발효 또는 추인에 의하여 상실되기 전에 그 계약이 취소되는 지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착오·사기·강박·부당한 착취의 결과로 고통받은 손실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

제056조(구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한)
 사기·위협 및 부당착취에 대한 구제수단은 직·간접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

제057조(구제수단의 선택)
 본장에 의하여 구제조치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불이행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경우 본장의 구제수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3) 제3부 : 계약내용의 해석

제3부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은 해석, 두 번째 장은 내용 및 효력, 세 번째 장은 불공정한 계약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내용의 해석은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 내용 및 효력에 있어서는 계약내용, 계약 시 관습 및 관행, 묵시적일 수 있는 계약내용, 통합조항, 가격의 결정, 일방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 제3자에 의한 결정, 계약 관련 언어,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 제3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불공정한 계약내용의 효과, 불공정 계약내용의 예외, 강행성격, B2B 계약 시 불공정의 의미에 대하여 명정하고 있다(Loos, 2012).

<표 06> CESL 제3부

제3부(계약내용의 해석)
제06장 : 계약내용의 해석 제058조(계약해석의 일반원칙) 계약해석은 거래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 제059조(관련사항) 계약해석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룸 제060조(전반적인 계약 참고) 계약서에 사용된 표현은 전체적으로 보아 해석 제061조(언어의 불일치) 2개 이상 언어 작성 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최초 작성된 것이 정본 제062조(개별적으로 협상된 계약내용에 대한 우선 적용) 계약내용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협상된 내용이 우선함. 제063조(계약내용에 효력을 부여하는 해석에 대한 우선 적용) 계약내용에 효력을 부여하는 해석이 그러지 않는 해석보다 우선함. 제064조(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 (※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065조(계약내용의 공급자에게 불리한 해석) 계약내용의 의미에 의심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제07장 : 내용 및 효력 제066조(계약내용) 거래당사자의 합의, 관습 및 관행, 거래당사자 합의 부재 시 적용되는 CESL규칙, 묵시적 계약내용으로 구성 제067조(B2B 계약 시 관습 및 관행) 당사자가 합의한 관습 또는 확립된 관행에 구속되며, 만약 개별적으로 합의되었으나 CESL의 강행규칙과 충돌되는 경우 강행규칙 적용 제068조(묵시적일 수 있는 계약내용)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사항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계약의 성격 및 목적, 계약체결상황, 신의 및 공정거래 등을 고려함 제069조(특정계약 전 진술로부터의 계약내용)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달리 신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계약내용의 일부가 됨 제070조(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의 주의 환기의무)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을 제공자가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주의 환기한 경우 원용가능

제071조(B2C 간 계약에서의 추가지급) (※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072조(통합조항)

계약서에 통합조항이 없는 경우 동 문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전진술, 약속 또는 합의내용은 계약내용에서 배제

제073조(가격의 결정)

가격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 체결시점에 비교가능상황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 합리적인 가격 순으로 함.

제074조(일방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

일방적인 결정 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결정의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가격 또는 체결시점에서의 비교가능상황에서 통상적인 내용으로 하고 그 후순위로 합리적인 가격 또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한다.

제075조(제3자에 의한 결정)

제3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나 계약내용이 중대하게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가격 또는 계약체결시점에 유사한 상황에서의 통상적인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 또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대체됨

제076조(언어)

계약언어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 언어는 계약체결시점의 사용 언어이다.

제077조(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계약)

계약의 종료 또는 효과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방은 2달을 경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해제가능

제078조(제3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게 권리를 허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권리 성격 및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상대방의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동일한 구제 권리를 가짐.

제08장 :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1절 : 일반규정

제079조(불공정계약내용의 효과)

불공정계약내용은 구속력이 없으며, 동 내용이 없이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 구속력 있음

제080조(불공정 계약내용의 예외)

B2B 계약 시 당해 계약의 주요 대상물의 정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비적용

제081조(강행성격)

본장의 적용 배제 또는 효과 변경이나 수정 불가

제2절 : B2C 간 계약에서의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082조-제085조(※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3절 : B2B 계약 시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086조(B2B 계약 시 불공정의 의미)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내용이 계약의 일부인 경우, 신의 및 공정거래에 반하는 상관습으로 이탈하는 경우, 불공정으로 취급하며, 불공정성 평가 시 고려요소 규정

2. 계약의 이행단계

1) 제4부 : 매매계약 또는 디지털콘텐츠 공급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계약의 이행단계에서는 매매계약 또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제4부), 관련된 서비스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제5부)으로 그 편제를 구성하고 있다.

우선 전자는 일반규정,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구제수단,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구제수단, 위험의 이전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례로 일반규정에는 불이행과 중대한 불이행, 불이행의 면책, 상황의 변동, 지급 및 승낙되지 않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용규칙 연장을 다루고 있다. 매도인의 의무에는 매도인 의무의 총괄, 제3자에 의한 이행에 대한 일반규정과, 인도에 관한 사항,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는, 일반규정, 매도인에 의한 치유, 이행요구, 매수인의 의무이행 보류, 해제가 있다. 매수인의 의무로는 매수인 의무의 총괄을 다룬 일반규정, 대금의 지급, 수령이 있으며, 매도인의 구제수단으로는 일반규정, 이행요구, 매도인의 의무 이행 보류, 계약해제가 있다. 위험의 이전은 일반규정과, 기업 간 계약 시 위험의 이전에 다루고 있다(Lando, 2011).

<표 07> CESL 제4부

제4부(매매계약 또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제09장 : 일반규정 제087조(불이행과 중대한 불이행) 불이행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불인도 또는 지연, 인도된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불일치, 대금지급이며, 중대한 불이행은 상대방이 당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가 해당 제088조(불이행의 면책) 불이행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장애로 기인하고 체결시점에 그 장애 또는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089조(상황의 변동) 이행이 예외적 사정으로 인해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경우 협상개시 의무 부여. 제090조(지급 및 승낙되지 않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용규칙의 연장) 제12장의 매수인에 의한 대금지급에 대한 규칙을 준용 제10장 : 매도인의 의무 제1절 : 일반규정 제091조(매도인 의무의 총괄) 물품의 매도자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자는 해당 계약물품을 공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약과 일치되고 매수인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사용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함 제092조(제3자에 의한 이행) 매도인은 타인에게 이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행을 위임한 매도인은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짐 제2절 : 인도 제093조(인도장소) 인도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에 운송이 포함된 경우 최초 운송인의 집하점, 운송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시의 매도인의 영업소. 제094조(인도방법)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최초운송인에게 인수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직접 제공 제095조(인도시기)

인도시기가 특정화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후 부당한 지체없이 인도되어야 함.

제096조(매도인의 운송물품에 대한 의무)

매도인이 운송을 수배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상황에 맞는 운송수단 그리고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계약 체결하고, 인도 시 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 선적서류 제공

제097조(매수인이 승낙하지 않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제098조(위험의 이전효과) (※ 제14장)

제3절 :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

제099조(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명기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되어야 함. 일치여부는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제100조(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에 대한기준)

계약체결시점에 매도인에게 알려진 그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되어야 함.

제101조(소비자 매매계약에 의한 부정확한 설치) (※ 생략)

제102조(제3자의 권리 및 청구)

물품과 디지털 콘텐츠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없어야 하며, 또한 청구도 없어야 한다.

제103조(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에 대한 제한)

디지털 콘텐츠가 계약체결 이후 업데이트된 경우 그 이유로 계약불일치로 취급하지 않음.

제104조(B2B 계약 시 불일치에 대한 매수인의 인지)

B2B 계약 시 계약체결시점에 매수인이 불일치를 안 경우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음

제105조(일치성 확보를 위한 관련시기)

매도인은 제14장에 의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불일치에 대하여 책임을 짐.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나중 업데이트하여야 하는 경우 동 계약기간동안 일치시켜야 함.

제11장 : 매수인의 구제수단

제1절 : 일반규정

제106조(매수인의 구제수단 일반)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시 매수인은, 당해 계약물의 구체적인 이행, 수리 또는 대체 요구. 매도인의 불이행면책의 경우에는 이행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불가

제107조(금전의 대가로 공급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구제수단 제한)

디지털 콘텐츠가 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제수단 행사 불가

제108조(강행성격) (※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2절 : 매도인에 의한 치유

제109조(매도인에 의한 치유)

조기이행을 하고 계약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이행허용기간동안 치유가능. 치유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한 손해와 지연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유

제3절 : 이행요구

제110조(매도인의 의무이행 요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경우, 이행부담과 혜택이 불균형인 경우 이행요구 불가

제111조(수리와 대체간의 소비자의 선택) (※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112조(대체물품의 반환)

매도인이 물품 대체로 불일치 해결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물품회수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매수인은 대체 전 까지 지급의무가 없음

제4절 : 매수인의 의무이행 보류

제113조(이행보류권)

매도인의 이행과 동시 또는 이후 이행하는 매수인은 그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할 권리를 가지며, 불이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행보류가능

제5절 : 해제

제114조(불이행에 대한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

제115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통지 후 인도지연시 해제)

매수인은 인도지연의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기간 지정을 통해 이행가능하며, 해제는 추가통지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가능

제116조(예측되는 불이행에 대한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불이행선언 또는 달리 명백한 경우 이행만료 전에 계약해제가 가능

제117조(해제권의 범위)

해제근거가 비례배분 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만 해제가능. 구분불가능 하거나 다른 부분 이행 승낙불가 시 전체 해제 가능.

제118조(통지)

본 절에 의한 해제권은 매도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행사

제119조(해제권의 상실)

매수인의 권리발생 또는 매수인의 불이행 인지 시 또는 알 수밖에 없는 상당한 기간 중 나중 것을 기준 해제통지 불이행 시 해제권 상실

제6절 : 대금감액

제120조(대금감액권)

계약에 일치하지 않는 이행을 수락한 매수인은 대금감액 권리를 가지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유

제7절 : B2B 계약 시 검사 및 통지요건

제121조(B2B 계약 시 물품에 대한 검사)

매수인은 당해 물품의 인도,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에 검사. 운송이 포함된 경우 목적지 도착이후까지, 경로변경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목적지 도착이후까지 연기가능

제122조(B2B 계약 시 불일치의 통지요건)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불일치를 통지해야 함. 기산점은 공급 시 또는 불일치 발견 시 그 나중일로 하며,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임.

제12장 : 매수인의 의무

제1절 : 일반규정

제123조(매수인 의무의 총괄)

대금지급의무,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 수령의무, 관련서류 인수 의무

제2절 : 대금의 지급

제124조(지급방법)

계약내용에 표시된 방법으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지급장소에서의 통상적인 방법, 수표 또는 그 밖의 지급지시서를 수락하는 매도인은 정히 인수되는 조건으로 취급

제125조(지급장소)

지급장소 미결정 시 계약체결시점에서의 매도인의 영업소, 영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 대금지급의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매도인의 영업소

제126조(지급시기)

인도 시이며, 매도인의 합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지급만기이전 제안

거절 가능

제127조(제3자에 의한 지급)

매수인은 타인에게 지급 위탁 가능하며, 매도인은 제3자가 매수인의 동의로 또는 제3자가 지급 시 합법적 이익이 있고 매수인이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지급거절 불가

제128조(지급의 충당)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수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총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통지. 충당은 만기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되는 의무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방에 의한 유효한 충당이 없는 경우 충당 기순서에 따라 충당됨.

제3절 : 수령

제129조(수령)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위를 수행하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 수령 의무가 있음

제130조(조기 및 잘못된 수량의 인도)

매도인이 정해진 기간 전에 공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여야 하며, 합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수령 거절 가능. 수량 과부족의 경우 합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거절 가능

제13장 : 매도인의 구제수단

제1절 : 일반규정

제131조(매도인의 구제수단 일반)

매수인의 의무불이행 경우 제2절 이행요구, 제3절에 의한 자신의 이행보류, 제4절에 의한 계약해제, 대금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매수인의 불이행 면책 경우 이용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제외하고 그 이외 구제조치 행사가 가능. 매도인 자신의 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구제수단 행사 불가능

제2절 : 이행요구

제132조(매수인의 이행요구)

매도인은 대금지급만기 시 대금지급청구권이 있으며, 매수인의 미수령 또는 이행 의향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합리적인 대체거래가능 시 예외

제3절 : 매도인의 의무이행 보류

제133조(이행보류권)

매수인의 이행과 동시 또는 그 이후 이행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럴

때까지 이행보류권을 가지며, 매수인이 불이행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매도인은 이행보류가 가능.

제4절 : 계약해제

제134조(중대한 불이행에 대한 해제)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이행이 당해 계약 하에서 중대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

제135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통지 후 지연에 대한 계약해제)

매도인은 이행지연의 경우 해제가능하며, 그 지연은 중대하지 않지만 이행추가기간 통지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며, 통지서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해제 규정이 있는 경우 통지없이 해제효력 발생

제136조(예측되는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

매도인은 이행만기 전에 매수인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경우 그리고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

제137조(계약해제권의 범위)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가 별도 이행 또는 달리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해제. 불이행이 계약전반과 관련 중대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제138조(통지)

본 절에 의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에 대한 통지에 의함.

제139조(계약해제권의 상실)

매도인의 이행지연 또는 계약과 불일치한 이행의 경우 해제권을 상실하며, 매도인은 제136조에 의한 통지로 해제권리 상실함. 매수인이 대금 미지급 또는 중대한 불이행 시 매도인은 해제권 보유.

제14장 : 위험의 이전

제1절 : 일반규정

제140조(위험이전의 효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난 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해제 불가. 다만 손실 또는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는 예외

제141조(계약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

위험은 계약상 제공되어야 할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식별되기까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음.

제2절 : 소비자 매매계약에서 위험의 이전

제142조(소비자 매매계약에서 위험의 이전) (※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3절 : B2B 계약 시 위험의 이전

제143조(위험의 이전시기)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인수시점에서 위험이 이전

제144조(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있는 물품)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위험은 인도예정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있는 경우 위험은 인도가 만기가 되고 매수인이 자신의 처분 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점에 이전

제145조(물품의 운송)

매도인이 특정장소에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특정장소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

제146조(운송 중 매각된 물품)

위험은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 계약체결 시점에 매도인이 당해물품이 손상되었음을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당해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 부담

2) 제5부 : 관련서비스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제5부는 관련서비스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본장은 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는 매매계약에 대한 특정한 일반규칙의 적용,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고객의 의무 등이다.

<표 08> CESL 제5부

제5부(관련서비스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제15장 : 거래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제1절 : 계약에 대한 특정한 일반규칙의 적용
제147조(계약에 대한 특정한 일반규칙의 적용)
매매계약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계약해제시 관련서비스 계약도 해제됨
제2절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48조(결과 달성 의무 및 주의와 기술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특정결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그러할 의무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수준의 주의 및 기술 그리고 강행규칙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

제149조(손해경감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서비스 이행과정 중 손실이나 손상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사전조치 필요

제150조(제3자에 의한 이행)

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에게 이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임 불가.

제151조(송장 제공의무)

서비스가격이 계약체결 시 합의된 총액제가 아닌 경우 대금계산방식을 설명하는 송장을 제공하여야 함.

제152조(기대하지 않거나 비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경고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비용이 표시금액보다 많거나 물품 가치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 진행여부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 필요

제3절 : 고객의 의무

제153조(대금의 지급)

고객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지금은 서비스가 완료되고 관련된 목적물이 이용 가능할 경우 지급

제154조(접근 제공)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고객 장소에 접근필요시 합리적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4절 : 구제수단

제155조(고객의 구제수단)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불이행시 제11장의 매수인을 위한 규정대로 구제조치(특정이행요구, 고객자신의 이행보류, 계약해제, 대금경감, 손해배상청구) 행사 가능

제156조(B2B 간의 관련된 서비스계약에서 불일치의 통지요건)

고객은 불일치 성격을 구체화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한 경우에는 불일치 원용가능하며, 통지기간은 서비스 완료 또는 불일치 발견시점 중 나중의 날로 개시한다.

제157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수단)

서비스 제공자는 제13장 매도인을 위해 정한 구제수단(이행요구, 서비스제공자 자신의 이행보류, 계약해제, 이자, 손해배상청구) 행사 가능

제158조(소비자의 이행거절권) (※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3. 계약의 종료단계

계약의 종료단계에는 손해배상금 및 이자(제6부), 원상회복(제7부), 시효(제8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6부는 하나의 장으로 손해배상금 및 이자에 관한 조문을 다루고 있다.

1) 제6부 : 손해배상금 및 이자

<표 09> CESL 제6부

제6부(손해배상금 및 이자)
제16장 : 손해배상금 및 이자 제1절 : 손해배상금 제159조(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예외임 제160조(손해배상금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은 의무이행 시 채권자가 누릴 수 있는 위치 또는 가장 유사한 경우의 총금액이며, 채권자가 박탈당한 이익을 포함. 제161조(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 채무자는 계약체결시점에 불이행결과로 예측 또는 예측 가능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짐. 제162조(채권자에 의한 손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불이행에 기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의한 발생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163조(손실의 경감) 채무자는 채권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감할 수 있었던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음 제164조(대체거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한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경우 해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체거래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액에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

상 권리 있음

제165조(시가)

채권자가 계약해제하고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이행시가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은 계약가격과 해제 시의 시가 차액에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보유함.

제2절 : 지연이자 : 일반규정

제166조(지연이자)

총대금에 대한 지급지연시 채권자는 지급만기시점에서 유럽중앙은행 변동금리절차에서 정하는 한계이자율 또는 회원국 국립중앙은행이 정하는 동등율에 2% 추가와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가능

제167조(채무자가 소비자인 경우의 이자) (※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제3절 : 기업에 의한 지급 지연

제168조(이자율 및 증식)

기업은 만기 시 대금지급지연 시 유럽중앙은행 변동금리절차에서 정하는 한계이자율 또는 회원국 국립중앙은행이 정하는 동등율에 8% 추가와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가능

제169조(비용복구를 위한 보상)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고정금액 40유로 또는 채권자충당비용 보상금으로 계약가격에서 합의한 통화로 이에 상당 금액 수령 가능

제170조(지연이자관련 불공정한 계약내용)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율 또는 비용충당관련 보상내용은 그 내용이 불공정한 정도만큼 구속하지 못함.

제171조(강행성격)

본 절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

2) 제7부 : 원상회복

제7부는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원상회복 불가능시 금전가치에 의한 지급, 사용에 대한 지급 및 수령한 금액에 대한 이자, 지출에 대한 배상, 공평한 수정, 강행성격 등의 순으로 조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표 10> CESL 제7부

제7부(원상회복)
제17장 : 원상회복 제172조(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계약이 일방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일체 반환할 의무가 있음. 반환 시 자연적 및 법적 과실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함. 분할 또는 일부 이행계약이 받은 것에 대한 반환이 양측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 분할 또는 일부 관련 반환은 요구되지 않음 제173조(금전가치에 대한 지급) 수령한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수령자는 금전적 가치로 지급. 물품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 가지게 되는 가치임. 대가로 거래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반환 불필요 제174조(사용에 대한 지급 및 수령한 금액에 대한 이자) 물품을 사용한 수령자는 그 사용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금전반환 의무 시 이자는 상대방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수령자가 사기·강박·부당한 착취로 계약취소의 경우 제166조에서 정한 율로 한다. 제175조(지출에 대한 배상) 수령자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출을 부담한 경우 그 지출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준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 제176조(공정한 수정) 본장에 의하여 반환 또는 지급의무는 그 당사자가 취소 또는 해제사유를 유발하지 않았거나 인식이 결여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그 이행이 중대하게 불공평한 정도만큼 변경 가능 제177조(강행성격) (※ 소비자 관련 규정으로 생략)

3) 제8부 : 시효

제8부는 시효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차례로 ‘일반규정’, ‘시효기간 및 개시’, ‘시효기간의 연장’, ‘시효기간의 갱신’, ‘시효의 효과’, ‘합의에 의한 수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11> CESL 제8부

제8부(소멸시효)
제18장 : 소멸시효 제1절 : 일반규정 제178조(시효대상의 권리) 의무이행을 집행할 권리 및 그러한 권리에 부수적인 모든 권리는 본장에 따라 시간만료에 의하여 시효대상이 됨. 제2절 : 시효기간 및 개시 제179조(시효기간) 단기는 2년이며, 장기는 10년,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권리는 30년임. 제180조(개시) 단기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결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시간으로부터 계산하며, 장기는 채무자가 권리 이행하는 시기부터 개시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발생시킨 행위시점부터 개시됨. 제3절 : 시효기간의 연장 제181조(사법적 및 그 밖의 절차 중지) 사법적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중지되며,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그 사건이 달리 처분될 때 까지 계속됨. 상기사항은 조정 등 제3자에게 의뢰되는 절차 또는 당해권리에 관련된 결정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지급불능회피를 위하여 개시된 모든 절차에 적용됨. 제182조(협상의 경우 시효의 연기) 거래당사자가 권리에 대하여 또는 권리 관련 청구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협상하는 경우 협상에서 마지막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또는 일방이 타방에게 협상결렬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함. 제183조(무능력의 경우 시효의 연장) 무능력한 자가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자의 시효기간은 무능력이 종료되거나 대리인 임명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료되지 아니함. 제4절 : 시효기간의 갱신 제184조(승인에 의한 갱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권리 승인한 경우 새로운 단기시효가 개시됨. 제5절 : 시효의 효과

제185조(시효의 효과)

시효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채무자가 문제의 의무이행거절 권리가 있고 채권자는 이행 보류한 것을 제외하고 불이행에 대한 모든 구제수단 행사는 상실됨. 이자 지급권리 및 부수적인 성격의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시효기간은 원 권리와 동일하게 종료.

제6절 : 합의에 의한 수정

제186조(시효에 대한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거래당사자는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본조의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

제3장 계약의 성립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

제1절 일반규정

1. 일반원칙

계약의 일반원칙은 CESL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계약의 자유’와 ‘신의 및 공정거래’ 및 ‘협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계약당사자는 강행법규의 준수를 조건으로 계약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신의 및 공정거래에 따라 행동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방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구제수단, 항변권의 제한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여하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상호 기대하고 있는 바의 성취를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적용요건

CESL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제12조에서 ‘해석’, ‘합리성’, ‘불요식’,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 ‘계약의 해제’, ‘혼합목적의 계약’, ‘통지’, ‘기간의 계산’, ‘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CESL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당해 목적과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나아가 CESL의 범위 내에 있지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당해 법 적용상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특별규칙이 우선된다. 이 경우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성격, 목적, 당해 사건의 상황, 동일한 부류의 관습 및 관행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을 요건에 두고 있다. 이 경우 동 법안에 의한 계약,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불요식에 기한다.

한편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계약내용이

일방에 의하여 제공되고 타방이 그 내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거나 또는 계약내용 중 일부만 선별하여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표준약관의 일부로 제공된 계약내용이 개별적으로 협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과된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내용과 해제 이후에도 그 유효성이 보장된다.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당해 계약이 해제되기 전의 대금과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당해 계약에 기한 지급대상으로 취급되며, 계약해제가 불이행 또는 불이행에 부수되는 중대한 경우 계약해제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장래 이행 대신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부여된다.

혼합목적의 계약은 계약서에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각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계약상 의무가 별도로 이행되거나 달리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불이행에 대한 해제의 근거를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물품대금의 일부가 비례 계산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통지는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거나 또는 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진술의 전달로서, 당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도달주의에 기하나, 당해 통지가 지연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각된다. 다만 통지의 효과로서 취소의 통지가 도착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 당해 통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CESL의 목적상 기간계산이 일·주·월·연으로 표시된 기간은 그 기간의 첫째 날 첫 시간부터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효력을 종료한다. 일방이 타방에게 수신인이 답변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요건에 둔 경우 그 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 언급하지 않은 서류를 보낸 때, 그 기간은 수신인에게 그 서류가 도착한 순간부터 기산된다.

일방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행동은 피전달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진술자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하여 그 진술을 사용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러한 의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진술한 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3. CISG와의 비교

1) 일반원칙

앞서 본 바와 같이 CESL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계약의 자유’(제1조), ‘신의 및 공정거래’(제2조), ‘협력’(제3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편 CISG는 연관규정으로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협약배제 또는 변경’(제6조), CISG의 ‘해석원칙’(제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곧 CISG에서는 제6조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내법의 형식요건’(제12조)을 유보한 계약국의 경우에는 CISG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³²⁾ CESL에서는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강행규정에 대한 표시는 해당 개별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CESL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쌍방이 공히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일부 강행규정이 우선하고 있는 까닭에, CISG보다 그 자율성면에서는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다(Magnus, 2012).

CESL에서는 신의 및 공정거래에 따라 행동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2조), 또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이행한 당사자가 달리 가질 수 있거나 또는 타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 구제수단 또는 항변을 원용하거나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금지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것은 거래당사자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는

32) CISG, 제6조(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또는 변경) : “당사자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의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석원칙) : “(1)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성 및 국제상거래에서 신의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문제로서, 본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본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12조(국내법상의 형식요건) : “매매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청약·승낙 또는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본 협약 제11조, 제29조 및 제2편의 규정은 당사자가 본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계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본조를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감퇴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이하 CISG의 원문은 「www.unilex.info」.

관습법은 물론 CISG의 의무보다 더 엄격하다(Lando, 2011). 위원회 전문가그룹에서 특히 신의 및 공정거래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지, 이러한 의무의 위반 시 특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해야 하는지, 즉 방패막이로서 손해배상금 또는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면 법을 적용할 때 판사가 동 의무를 해석하기 위한 여지를 얼마큼 남겨놓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신의 및 공정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채택하게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0).

CISG에서는 신의칙은 CISG를 해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고 계약당사자의 상거래 그 자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제7조).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CESL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작위 또는 부작위가 어떤 종류의 권리 또는 부채의 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사실의 문제’(the matter of facts)로서 이는 법원이 결정할 것이다. CISG와 비교하여 이러한 상황은 계약당사자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이익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제한규정으로서 기능할 개연성이 있음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CESL에서는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바에 대한 상호 협력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제3조), 다만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명백한 제재가 없다. CISG의 처지 또한 이와 다름이 없다. 이 경우 상호 협력에 대한 불이행은 만약 그러한 불이행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위반의 제재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라 본다.

요컨대 계약당사자는 법정에서 타방으로부터 상기 협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 또한 이러한 의무의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서 당해 의무는 포괄적일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다(DiMatteo, 2013).

<표 12> CESL과 CISG의 비교 : 일반원칙

CESL	CISG
제1조(계약의 자유) 1. 당사자는 강행규정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 및 내용의 결정에 자유를 보장 2. 당사자는 CESL의 규정적용의 배제 또는 CESL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과변경이 가능 제2조(신의 및 공정거래) 1. 당사자는 신의 및 공정거래에 준하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 2. 당해 의무 위반자는 그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구제수단 항변 등 행사 불가 또는 이로 인한 손실책임 제3조(협력) 당사자는 자신들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기대하고 있는바 협력의무	제6조(계약에 의한 배제 또는 변경) 당사자는 CISG 적용배제 또는 제12조를 조건으로 CISG 효과변경 가능 제7조(계약의 해석원칙) (1) CISG의 해석 시 CISG의 국제성, 적용상 통일성, 국제거래 신의의 준수를 고려할 것을 명시 (2) CISG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명백하게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국제사법의 순서에 준하여 해결할 것을 명시 (해당조문 없음)

2) 적용요건

CESL은 적용요건에 대하여, ‘계약의 해석’(제4조), ‘합리성’(제5조), ‘불요식’(제6조),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제7조), ‘계약의 해제’(제8조), ‘혼합목적의 계약’(제9조), ‘통지’(제10조), ‘기간의 계산’(제11조), ‘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동’(제12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CESL에서는 자치적인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곧 CESL에서 다루고 있거나 그것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 CESL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일반원칙 및 이에 상당한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규정은 일반규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석에 관한 규정 순서는 DCFR 제II-8-101조 및 제

II-8:102조와 같이 객관적인 해석보다 주관적인 해석 우선으로 하였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착오 및 사기에 대한 무효규칙과 이 규칙과의 조화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0). 반면에 CISG에서는 여하히 독립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즉 CISG의 국제성과 적용상 통일성 증진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CESL의 합리성에 대한 기준에 비추어, 이 경우 무엇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사안은 당해 사안의 환경, 관련 업종이나 상관습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계약의 성격 및 그 목적에 기초한다. 이에 대하여 CISG에서는 합리성을 제8조에서 다루고 있는데,³³⁾ 다만 당해 조문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술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 자의 판단기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들 규정 간에는 그다지 특단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해 사안의 상황은 계약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작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류의 관습 및 관행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Hondius, 2013). 계약형식의 자유에 대하여 CESL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나 의사표시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별단의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각된다. 이 경우 형식요건은 통상 B2C 거래에서 그 제한이 엄격하다. 반면에 CISG에서는 특정합의의 종류에 서면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제96조에 의거 서면을 요구하는 법정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³⁴⁾

33) CISG, 제8조(당사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의 해석) : “(1) 본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전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습, 관행, 당사자의 후속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4) CISG, 제96조(국내법상 형식요건의 고수) : “국내법상 매매계약이 서면으로 체결 또는 입증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계약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 또는 청약, 승낙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가 서면 이외의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의 어떠한 규정이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CESL은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를 한 1인 이상의 당사자에 의한 표준약관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CESL을 선택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표준약관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제70조),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적용될 수 없으며(제86조), 불일치한 경우 개별적으로 협상된 내용이 우선한다(제62조). 이 경우 이들 규정은 표준약관을 적용하려는 일방 또는 쌍방을 다루는 B2B 거래에 적용된다. 반면에 CISG는 이에 상응한 규정이 없다.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CESL은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수용하고 있다. 하나는 ‘착오·사기 또는 부당한 착취’(제54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취소와, 다른 하나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제114조). 전자는 유효하지 않은 계약에 의한 해제, 후자는 불이행에 대한 해제를 그 요건으로 두고 있다. CESL에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해제 후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종식시키는 것을 말한다(제8조). 이 경우 계약해제 전에 존재하고 있는 대금지급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급부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만약 불이행에 대하여 또는 부수적인 불이행에 대해 계약을 해제하는 일방이 타방의 미이행 대신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원상회복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상회복에 대한 효과가 적용된다. 반면 CISG는 계약은 당사자의 단순한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9조; Shkira, 2012).³⁵⁾

혼합목적의 계약에 대해 CESL은 물품판매,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 이외의 요소에 대한 계약에 CESL 적용을 금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의 2개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 혼합계약에 어떤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 CISG에서는 생산 또는 제조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한 계약이 매매로 취급되며,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러한 생산 또는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상당부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내용에 있어 용역은 CISG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제3조; Illescas, 2012).³⁶⁾

35) CISG, 제29조(계약의 변경과 서면요건) : “(1) 계약은 당사자의 단순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2) 합의에 의한 변경 또는 종료를 서면으로 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서면계약은 다른 방법으로는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신뢰한 범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6) CISG, 제3조(서비스 계약 등의 제외) : “(1)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매

법적 효과를 가지거나 그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방식에 관하여 CESL은 도달주의의 수용, 도달로 취급되는 시점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 경우 CISG의 규정(제24조)은 CESL과 유사하다.³⁷⁾ 다만 CISG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CESL과는 달리 전자우편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고 전보와 텔렉스만 포함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제13조).³⁸⁾ 기간계산에 대하여 CESL에서는 일반규정으로서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있다. 곧 별도 명시적인 제한이 없는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고 기간의 종기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종료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ISG에서는 문서로서 통지된 경우 기간은 문서에 있는 날짜 또는 봉투에 있는 날짜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통신의 경우 그것이 피청약자에게 도착하는 순간에 개시된다. 이 경우 공휴일은 포함되며, 수락일의 마지막일이 공휴일인 경우 승낙의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기간은 그 다음 근무일로 연장된다.³⁹⁾ 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위에 대하여 CESL에서는 수신인이 그것들을 이해하였음에 틀림없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다고 선언하는 일방적인 작위를 해석하기 위한 지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CISG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한편 CESL 제1부의 일반규정은 ‘신의 및 공정거래’(제2조) 조문을 제외하고 강행적인 성격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계약내용의 해석, 혼합된 목적의 계약, 기간계산 등이 강행규정의 성격이 아니

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실질적인 부분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7) CISG, 제24조(도달의 정의) : “본 협약 제2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의 선언 그 밖의 의사표시는 그것이 수신인에게 구두로 전해지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수신인 또는 그의 영업소나 우편송부처에 전달된 때, 수신인이 영업소나 우편송부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한다.”

38) CISG, 제13조(서면의 정의) : “본 협약의 적용에 있어 서면은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한다.”

39) CISG, 제20조(승낙기간의 해석) :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그 전보가 발신을 위해 교부되는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된 일자 또는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부터 기산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2)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영업일까지 연장된다.”

라고 할 때, 이는 CESL의 제정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제1부 전체가 강행적인 성격이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제2부 이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된다(Koitz, 2012).

<표 13> CESL과 CISG의 비교 : 적용요건

CESL	CISG
제4조(해석) 1. CESL은 독립적으로 CESL 목적과 동 법안이 기초하는 원칙에 따라 해석 2. CESL 범주에 있으나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CESL이 기초하고 있는 원칙에 의거 해결 3. 일반규정과 특별규칙 충돌 시 특별규정 우선적용 제5조(합리성) 1. 합리성의 기준은 계약의 성격, 목적, 당해 사건의 상황, 관련 업종의 관습 및 관행을 고려 2. 특수상황에서 기대될 수 있는 언급은 합리성을 갖추어야 함 제6조(불요식) 계약, 진술, 그 밖의 행위는 불요식 제7조(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계약내용)	제7조(계약의 해석원칙) (1) CISG 해석 시, 국제성, 적용상 통일성 증진, 국제거래 신의준수를 고려 (2) CISG에서 명백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국제사법의 순으로 해결 제8조(당사자 진술 또는 기타 행위해석) (1) CISG의 목적상 일방의 진술 및 행위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대로 해석 (2) 전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일방의 진술 및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수준에서 해석 제11조(계약의 형식) 매매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되거나 증빙될 필요가 없음. 증거의 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 가능 제96조(국내법상 형식요건의 고수) 계약국은 자국법에서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CISG 제11조, 제29조 및 제II부 모든 규정에서 서면 이외 방법을 허용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해당조문 없음)

1. 일방으로부터 제공된 계약내용이 상대방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협상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
2. 일방이 일부만 선별하여 제공한 경우 개별협상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음
3. 표준약관의 일부로 제공된 계약내용은 개별적으로 협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

제8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종결. 분쟁해결 계약내용과 해제이후 작용하는 계약내용은 유효
2. 해제되기 전 만기지불금과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지급대상. 해제가 불이행 또는 예측되는 불이행인 경우 상대방의 장래 이행 대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3. 대금 환불,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반환에 대한 해제효과와 그 밖의 원상회복 효과는 원상회복 장에서 다루어짐

제29조(계약의 변경과 서면요건)

- (1) 당사자 합의로 수정·해제 가능
- (2)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수정 또는 종료하기로 한 규정이 있는 서면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달리 수정 또는 해제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방은 상대방이 신뢰한 정도만큼 동 규정의 적용을 그 행위로 배제할 수 있음.

제81조(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 (1) 계약해제는 동 계약에 의한 의무를 해제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해제는 분쟁해결계약규정 또는 계약해제 후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계약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당사자는 계약에 의해 원당사자가 공급하거나 지급한 것을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청구가능. 양당사자 공히 모두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시이행

제4조(적용사항과 비적용사항)

매매계약의 성립, 이로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만을 다룸. (a) 특히 CISG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및 계약 규정은 관습의 유효성, (b) 계약이 판매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 효과 등은 배제

제9조(혼합목적의 계약) 1. 물품매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은 제4부에서,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의무 및 구제수단은 제5부에서 다름 제10조(통지) 1. 법적 효과를 표창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 2. 통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함 3. 수신인 도달 시 유효 4. 수신인 도달시점 5. 통지취소가 동시 또는 그 이전 도착 시 통지효력 상실 제11조(기간의 계산) 1. 기간계산 시 적용 2. 일·주·월·연이 표시된 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을 규정. 첫날 첫 시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짜 마지막 시간에 효력 종료 제12조(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위) 1. 의사표시자의 일방적 진술은 그 수령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 2.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아는 경우 진술자 의도대로 해석 3. 제59조에서 제65조는 의사표시 일방진술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 4. 제5장에서 의사표시 하자규칙은 일방적인 진술 적절히 조정 5. 행위도 진술과 상응하게 취급	제3조(제조될 물품 및 서비스) (1) 물품을 제조,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매매로 취급. 다만 주문자가 실질적 부분의 재료공급은 매매가 아님 (2) 공급자가 압도적 노동력 또는 기타 서비스공급은 대상이 아님 제24조(도달의 정의) 청약, 승낙의 선언 또는 의사표시는 구두로 전해지거나 수신인에게 또는 일상적 상거소에 전달 시 도달로 봄. 제27조(통신상의 지연 또는 오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보내진 경우 지연이나 오류, 불착에 당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음 제13조(서면의 정의)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 제20조(승낙기간의 해석) (1) 전보·서신은 발신 또는 교부되는 순간, 서신은 표시된 일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봉투표시일. 전화, 텔렉스 또는 기타는 도달하는 순간 기산 (2) 승낙기간이 공휴일일 경우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 (해당조문 없음)
--	---

제2절 계약의 성립 전 단계

1. B2B 간 제공하여야 할 계약 전 정보

CESL은 B2B 간 제공해야 할 정보와 관련, 계약체결 전 공급자가 당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의 및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공급자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정보의 취득 시 공급자의 비용, 상대방이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용이성, 정보의 성격, 상대방에게 있어 정보제공의 중요성, 관련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상관습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2.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원거리 계약에 대하여 CESL은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자적 방법의 계약체결을 용인하고 있다(제24조). 이 경우 기업은 청약 또는 승낙하기 전에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면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적 단계, 계약서류가 기업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지, 접근가능한지,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계약체결을 위한 언어, 계약 내용, 내구성 있는 전달방법 등을 확보해야 한다. B2C 계약 시에는 당해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있으나, B2B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은 계약내용의 구속력 확보를 위해 또는 그 밖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 부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상대방에게 제공되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보를 신뢰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제28조).

한편 구속력 있는 계약내용으로 취급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러한 결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유발한데 따른 책임을 진다 (제29조).

4. CISG와의 비교

1) B2B 간 제공하여야 할 계약 전 정보

CESL은 B2B에서도 매도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주요 특징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상대방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의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 취급되며, 이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기준, 예컨대 매수인의 지식수준에 따라 또는 매도인이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에 따라 손해 배상의 폭과 범위가 결정된다. 또한 CESL상 매도인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거래하는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곧 매도인은 신의 및 공정거래에 기초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지식 및 전문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다 안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기업은 상당한 정보제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해 조건은 강행적이지 아니하다.

CISG는 매수인의 위험부담원칙에 기초하여 특별한 경우, 예컨대 매수인이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32조).⁴⁰⁾ 이때 허위표시 및 정보제공의 위반에 관한 효과는 국내법에 의한다. (Piers, 2012)

40) CISG, 제32조(운송의 수배) :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본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에 그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에 및 그 운송을 위한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담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이 그렇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 14> CESL과 CISG의 비교 : B2B에서 제공하여야 할 계약 전 정보

CESL	CISG
제23조(물품 및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 기업이 기업에게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 전에 이에 대한 주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적절한 수단으로 통보할 의무로 인해 정보는 상대방이 미제공시 신의 및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 2. 공급자의 정보제공 수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제32조(운송의 수배)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CISG에 따라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그 물품이 물품의 화인, 선적서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에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 탁송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 (2) 매도인이 물품운송 수배 시, 매도인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또한 그러한 운송을 위한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계약체결 (3) 매도인의 물품운송과 관련하여 보험 부보의무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 요청에 따라 보험에 부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입수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정보제공의무

2)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

입법연혁에 비추어 CISG는 1980년에 제정되어 이에 해당되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심종석, 2013).⁴¹⁾ CESL은 인터넷으로 계약체결을 청약하는 기

41) CISG는 전자상거래 등장과 함께 경화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에 UNCITRAL에서는, CISG 등의 부속협약으로서 소위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UECIC’)을 제정하여 공포해 두고 있는데, 본절과 관련하여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핵심기축으로서, 시의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정보처리시스템(IPS)은 B2B 상거래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그 자체가 상거래 활동의 배경이 되고도 있다. 그 결과 당해 상거래 계에 있어 법적 확신에 의한 상관습의 체계화는 상대적으로 실정법상의 경화현상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같은 시각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 급진전은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예컨대 ‘데이터 메시지’, ‘전자적 의사표시’, ‘전자서명’,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등의 개념을 상용화하였는데, 주지하듯 이들 개념은 그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새로운 법규범을 제

업은 통상적으로 제24조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해 거래가 수정될 수 없다면, 이것은 상당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자원을 구속하거나, 유리한 계약체결을 방해할 수 있는 원인으로 기능할 개연성이 다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CESL상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은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그 요건에 두도 있다.

<표 15> CESL과 CISG의 비교 :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CESL	CISG
제24조(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된 원거리 계약에서 정보제공의 추가의무) 1. 기업이 계약체결방법으로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경우 적용 2. 기업은 청약 및 승낙 전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의무 3. 상대방에게 정보제공 시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적 단계, 계약서류에 대한 접근가능성,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계약체결 언어, 계약의 내용, 내구성 있는 매체로 전달, 전자적인 방법으로 청약 또는 승낙의 수령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할 의무	(해당조문 없음)

정하는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개념은 전통적 종이문서에 기한 종래 국제상사법규범이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경우 정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자적 통신수단의 사용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법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었던 까닭에, 당해 새로운 법규범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기능적 차원에서의 피치 못할 입법적 경과이자 산물이었다. 한편 그간 종이문서에 기초한 종래 국제상사법규범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국제계약에 있어, 그 적용상 상당한 법적 장애 내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예컨대 전자계약의 성립요건,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청약과 청약의 유인’, ‘전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소재지’,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및 형식요건’, ‘데이터 메시지 송·수신시기 및 장소’ 등은 법적용상 대표적인 혼선의 대상이었다. 이에 UNCITRAL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원칙을 제시하고, 동시에 전통적 종이문서에 기한 법적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CISG 등의 부속협약의 성격으로 UECIC을 제정하고 2005년 11월 제60차 UN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5일 UECIC에 공식 서명하였다.

3)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

B2B거래에 대하여 CESL은 계약체결 전에 또는 체결 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은 CESL상 합리적인 주의를 기여야 하고, 만약 부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당해 의무위반에 기하여 일방에게 제공되고 합리적으로 그것으로 제공한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신뢰한 당사자에게 구제수단을 허용하고 있다(제28조). 이에 부수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이 경우 본조가 제28조상의 합리적인 노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본조는 손해배상의 사유로서 착오·사기 등 제48조 이하 조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보의 정확성을 판별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잘못 제공받은 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Teigg-Flesner, 2012)

<표 16> CESL과 CISG의 비교 : 정보의 정확성 의무와 구제

CESL	CISG
제28조(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보할 의무) 1.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일방은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 합리적인 의무 준수 2. 부정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정보 제공에 따라 계약체결 시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신뢰한 자는 제29조상의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를 보유 제29조(정보제공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일방은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의무 준수 3. 본조상의 구제수단은 착오에 기한 제48조 또는 사기의 제49조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 대상이 됨	(해당조문 없음)

제3절 계약의 성립단계

1. 계약의 체결

통상 계약체결은 청약자의 청약과 피청약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CESL은 계약체결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합의, 당해 합의에 기한 법적 구속력, 충분한 계약의 내용과 확실성을 요건에 두고 있다(제30조 내지 제33조). 곧 청약의 요건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 충분한 계약내용과 확실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청약의 취소는 계약체결 전 피청약자에게 도달 시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취소가 무효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는 취소불능청약이거나 청약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리고 피청약자가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승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침묵 및 부작위는 승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나아가 ‘계약체결시기’(제35조), ‘승낙시기’, ‘지연승낙’, ‘변경된 승낙’ 등을 이에 결부하고 있다(제36조 내지 제38조). 이 경우 변경된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청약으로 보며, 여기서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요건은 가격, 대금지급, 품질, 수량, 인도장소 및 시기, 타방에 대한 책임의 정도,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 등이다. 또한 표준약관의 경우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통인 정도만 계약의 일부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제39조).

2. 의사표시의 하자

CESL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기하여, ‘착오’·‘사기’·‘강박’·‘부당한 착취’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루고 있으며(제48조 내지 제51조), ‘취소통지’(제52조), ‘취소효과’(제54조), ‘추인’(제53조), ‘손해배상금’(제55조), ‘구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안과 구제수단의 선택’(제56조 및 제57조)을 추보하고 있다.

이상의 조문에 비추어, ‘취소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서 유효하고, 취소통지는 착오의 경우에는 6월, 사기·강박·부당한 착취에 대하여는 1년 안에 통지하는 경우 유효하다. ‘추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관련 상황을 알았거나 이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착오·사기·강박 또는 부당한 착취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취소 통지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이에 상당한 직·간접적 구제수단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계약내용의 해석

CESL은 계약내용을 해석기준으로서 계약내용 해석의 원칙, 계약내용 및 그 효력, 불공정한 계약내용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우선 계약내용 해석의 원칙으로는 거래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하고(제58조),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59조), 계약서에 사용된 표현은 계약내용의 전반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기준(제60조), 계약내용에 기한 언어가 복수 이상인 경우 원래 작성된 계약이 정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언어불일치에 대한 규정(제61조), 불일치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협상된 내용의 우선 적용(제62조),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는 계약내용이 의미상 불명확한 경우 그것을 제공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공급자 불리의 해석원칙(6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계약내용 및 그 효력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으로 강행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거래당사자를 구속하는 관습 및 관행, 거래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그와 반대로 적용되는 CESL 규칙, 묵시적인 계약내용의 구성(제66조), B2B 계약 시 당사자가 합의한 관습, 확립된 관행에 의하여 구속되며, 관습과 관행이 개별적으로 합의되었거나 CESL의 강행규칙인 계약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충돌되는 정도까지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적 기준(제67조), 묵시적인 내용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사항으로 당해 계약의 성격 및 목적,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 신의 및 공정거래 등은 묵시적이라는 규정(제68조), 기업이 당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기업이 당해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정하여 진술하는 경우 계약내용의 일부로 병합된다는 규정(제69조), 일방이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계약내용은 상대방이 그것들을 알았다면 또는 제공자가 계약체결 전에 또는 체결 시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원용할 수 있다는 규정(제70조), 서면 상 계약에 통합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여하한의 사전 진술, 약속 또는 합의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제72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시점의 통상적인 청구금액 또는 합리적인 가격이 된다는 결정기준(제73조), 가격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이 일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그 결정이 불합리한 때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가격 및 계약체결 시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나 내용으로 대체된다는 규정(제74조), 제3자가 가격 또는 계약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제75조),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계약체결 시의 언어로 한다는 제한요건(제76조),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는 2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당한 기간 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규정(제77조), 계약당사자가 계약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허여할 수는 부가기준(제78조) 등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불공정 계약내용의 주요 골자로서, 일방이 제공한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타방을 구속하지 못하며, 불공정 계약내용이 없는 그 나머지 계약내용은 구속력을 가진다는 규정(제79조), 불공정 계약내용으로 규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불공정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당해 계약의 주요 목적물의 정의 또는 지급가격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불공정 검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제80조), 불공정 계약내용에 기한 CESL상의 규정은 임의로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제81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추보하여 B2B 계약 시 불공정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불공정에 대한 의미를 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데(제86조), 이는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내용, 신의 및 공정거래에 반하는 상관습으로부터 중대하게 이탈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할 급부의 성격, 계약 체결의 과정 및 이와 관련한 그 밖의 내용,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CISG와의 비교

1) 계약의 체결

계약체결의 유효성 담보요건으로서 CESL은 계약자유 원칙을 기저에 두고, 계약당사자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의사가 있고 또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한 합의의 충분성과 정확성 보유를 당해 요건에 두고 있다(제30조). 이에 대하여 CISG는 청약은 충분히 확정적이며, 승낙의 경우에 청약자가 구속할 의사가 있어야 함을 요건에 두고 있다(제14조).⁴²⁾

한편 CESL 본조에서는 승낙이 명시적으로 또는 그 밖의 진술이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계약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사는 계약당사자의 진술 및 행위의 전반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CISG에서는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며,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정하고 있다(제18조).⁴³⁾

42) CISG, 제14조(청약의 기준) : “(1) 1인 또는 복수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는 때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당해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수량과 대금을 정하고 있거나, 이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이다. (2) 1인 또는 복수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의는 당해 제의를 행한 자가 다른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43) CISG, 제18조(승낙의 시기 및 방법) : “(1)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는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意的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은 동意的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하여 거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한 관행이나 또는 관습의 결과로 인하여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피청

CESL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체결의 요건으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당해 계약체결을 용인하고 있지 않으나, CISG는 이에 상당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CESL은 당해 제의가 승낙된 경우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고 나아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내용과 확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를 청약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이 경우 청약은 1인 이상의 특정인을 그 대상에 둘 수 있으나, 불특정 당사자에 대한 청약은 이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청약으로 취급될 수 없음을 명정하고 있다. CISG의 연관규정(제14조)은 CESL의 당해 조문과 동일하다.

CESL에서 청약은 피청약자가 승낙서를 송부하기 전에, 행위에 의한 승낙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철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2조), 이것은 CISG와 일치하고 있다(제16조).⁴⁴⁾ 다만 차이는 행위에 의한 계약의 체결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CISG가 행위에 의한 승낙을 전통적인 승낙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보아 이는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제18조).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이와 동일하게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CISG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청약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특정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또는 그것이 달리 피청약자가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피청약자가 청약을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다면, 철회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CISG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제16조).

청약의 거절에 관해서는 CESL(제33조)과 CISG(제17조)의 규정은 일치하고 있다.⁴⁵⁾ 곧 청약의 거절이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청약은 효력은 상실된다. 승

약자가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의 지급에 관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당해 행위가 행해지는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 44) CISG, 제16조(청약의 취소) : “(1) 청약은 계약이 성립하기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취소의 의사표시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경우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a) 청약에서 승낙을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b)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피청약자가 당해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 45) CISG, 제17조(청약의 거절) : “청약은 비록 그것이 취소불능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낙에 관해서는 CESL(제34조)과 CISG(제18조)에서 마찬가지로 피청약자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진술이나 행위가 청약에 동의하고 있다면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승낙이 되지는 않는다.

계약의 체결시기에 대하여 CESL은 계약은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또는 계약체결통지 행위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체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35조), 이는 CISG(제23조)와 동일하다. 곧 CESL은 주문에 동의하지 않고 물품발송과 같은 단순히 행위에 의한 효과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청약에 의해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한 관행이나 또는 관습의 결과로 인하여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피청약자가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의 지급에 관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당해 행위가 행해지는 순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CISG 조문과 일치한다(제18조).

청약의 시기에 관하여 CESL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청약자에게 자신이 청약서에 지정한 기한 내에 도착하는 경우 유효하거나 또는 당해 기한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한이어야 하며, 행위에 의한 승낙은 동일한 기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이는 CISG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제18조).

지연승낙에 대하여는 CESL에서 부당한 지체없이 청약자가 자신이 그것을 효력이 있는 승낙으로 본다는 것을 피청약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승낙이 되며, 그 밖에 피청약자에 의해 하자없이 명백히 지연된 통신에 관한 효과와, 청약자는 청약이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피청약자에게 부당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제37조), CISG(제21조)와 일치하고 있는 규정이다.⁴⁶⁾

한편 수정된 승낙에 대하여 CESL에서는(제38조) 피청약자에 의한 회신이 청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달리함으로써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절이며, 이는 새로운 청약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CISG는 추가·제한 또는 그 밖의 수정에 관한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의 효과에 관하여

46) CISG, 제21조(지연된 승낙) : “(1) 지연된 승낙은 그 지연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를 피청약자에게 구두로 알리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유효하다. (2) 지연된 승낙을 담고 있는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그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그것이 제때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정 아래 발송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승낙은 승낙으로서 유효하다. 다만,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자신의 청약이 실효하였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루고 있다(제19조). 이 경우 CESL에서는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함은 가격·대금·물품의 품질 및 수량·인도장소 및 시기·일방의 타방에 대한 채무의 정도·분쟁의 해결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문면상 CISG(제19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CESL 실질적인 변경없이 청약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동의하는 승낙은 승낙적격으로서 유효하며, 청약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다른 사항은 합의의 일부가 된다는 조문내용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조건에 관한 조문내용은 양 규정 공히 동일하다.

다른 한편 표준약관의 충돌, 곧 ‘서식의 충돌’(battle of forms)에 대하여 CESL(제39조)에서는 당해 약관의 공통적인 사항만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으나, 일방당사자는 부당한 지체없이 사전에 표준약관의 비적용을 명시한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은 법제 간 타협의 결과로서 서식의 충돌을 다루고 있지 않은 CISG에 비하여 보다 진일보한 법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CESL의 순기능적 법적 특징으로 취급할 수 있다(Kruisinga, 2013).

<표 17> CESL과 CISG의 비교 : 계약의 체결

CESL	CISG
제30조(계약체결요건) 1. 계약체결시점으로 합의의 도달, 합의가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의사, 필요한 경우 보충적 합의로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내용과 확실성을 가진 경우 2. 합의는 청약에 대한 승낙의 요건으로 승낙은 진술 및 행위에 의해 명시적이어야 함. 3. 법적 효과를 가지는 합의는 진술 또는 행위에 의함 4. 일방이 특정 사항에 대한 요건 합의 시 그 사항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제23조(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성립 제14조(청약의 기준) (1) 1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표명이 있는 경우 청약이 됨. (2) 1인 이상 특정인에 대한 제의 이외의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청약의 유인으로 봄

제31조(청약)

1. 청약은 승낙되면 계약이 된다는 의사가 있고, 계약이 되기 위한 충분한 내용과 확실성이 있는 경우임
2. 1인 이상 특정인에게 이루어져야 함.
3. 대중에게 하는 제안은 청약이 아니며, 달리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임

제32조(청약의 취소)

1. 청약은 취소가 피청약자가 승낙서 송부 전에 또는 행위에 의한 승낙 시

제18조(승낙의 시기 및 방법)

- (1) 청약에 대한 동의표시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 행위는 승낙. 침묵 및 부작위는 승낙이 되지 아니함.
-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도착하는 순간 발효. 지정한 기간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 도달하면 효력인정. 구두청약은 즉시 승낙.
- (3) 당사자 간 확립한 관습이나 또는 관행의 결과로 아무런 통지없이 피청약자가 물품 발송이나 대금지급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동의를 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

제14조(청약의 기준)

제15조(청약효력 발생시기와 사전철회)

- (1)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 시 유효
- (2) 청약은 취소불능이더라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도달 전에 또는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 시 철회가능

제16조(청약의 취소)

- (1) 계약체결되기 전까지 청약취소가능. 다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도달
- (2) 취소불능의 경우로 청약에서 승낙기간을 명시하고 그것이 취소불능인 경우와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제17조(청약의 거절)

청약은 취소불능이라도 거절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시 효력 상실

제22조(청약의 철회)

승낙은 효력발생 전 또는 동시 철회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 시 철회

당해 계약체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 시 취소가능 2. 대중에게 이루어지는 제안이 청약인 경우 동일한 수단으로 취소 3. 청약의 취소는 취소불능이라고 표시한 경우, 청약이 승낙에 대한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으로 신뢰하여 행위를 한 경우 제33조(청약의 거절) 청약의 거절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청약은 무효가 됨. 제34조(승낙) 1. 피청약자에 의한 여하한의 동의표시는 승낙이 됨 2. 침묵 또는 부작위는 승낙이 아님 제35조(계약체결시기) 1.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 시 계약체결 2. 청약이 행위에 의한 수락 시 행위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 시 체결 3. 당사자간 확립된 관행 또는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통지없이 행위에 의한 경우 당해 행위개시의 시점 제36조(승낙의 시기) 1. 승낙은 청약에 명기한 기한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 시 유효	제17조(청약의 거절) 청약은 취소불능이라도 거절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 시 효력 상실 제18조(승낙의 시기 및 방법) (1) 청약에 대한 동의표시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 행위는 승낙이 됨. 침묵 부작위는 승낙이 되지 아니함.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순간 발효. 지정기간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 도달. 구두청약은 즉시 승낙. (3) 당사자 간 확립한 관습이나 또는 관행의 결과로 아무런 통지없이 피청약자가 물품발송이나 대금지급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동의를 표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행하는 순간 효력발생 제23조(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본 협약규정에 따라 효력발생시 성립 제18조(승낙의 시기 및 방법)
---	--

2.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 내 도달
3. 청약이 청약자에게 지체없이 승낙된 경우. 승낙기간 내 이루어진 경우. 기한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

제37조(지연된 승낙)

1. 청약자가 유효한 승낙으로 지체없이 통보 시 유효
2. 통상 송부되었다면 제시기간에 도달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경우. 다만 청약자가 지체없이 소멸통보 시 예외

제38조(수정된 승낙)

1.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다른 것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암시한 답변은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임.
2. 가격, 대금지급, 품질, 수량, 인도장소 및 인도시기, 일방의 타방에 대한 책임정도, 분쟁해결 관련 계약내용 추가나 변경하는 것은 청약의 실질적 변경으로 취급
3. 청약에 대한 확정적 동의를 주는 답변은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면 승낙이 되며, 변경 또는 추가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됨
4. 추가 또는 다른 계약내용이 청약의 거절로 되는 경우는 청약이 승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청약자가 반대하는 경우, 피청약자가 변경한 경우 청약자의 동의를 전제로 승낙되고 그 동의가 피청약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제39조(표준약관의 충돌)

1. 충돌되는 표준약관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합의에 이른 경우 표준약관은

제21조(연착된 승낙)

(좌동)

제19조(청약을 변경하는 승낙)

- (1) 승낙을 의도하지만 추가, 제한 또는 기타 변경의 내용을 담은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며 대응청약이 됨
- (2)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추가 또는 상이한 조건을 담은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임. 다만 청약자가 지체없이 반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예외임.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 변경사항이 추가되어짐
- (3) 대금, 품질 수량, 인도장소, 인도시기,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 관련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상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취급

(해당조문 없음)

공동부분만 계약의 일부가 됨 2. 일방이 표준약관 방식으로 구속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당한 지체 없이 그러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함.	
---	--

2) 의사표시의 하자

CESL에서 다루고 있는 ‘착오’·‘사기’ 및 ‘강박’에 대하여(제48조 내지 제57조), CISG에는 이에 상응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CISG는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제4조).⁴⁷⁾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는 해당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CESL 조문(제48조)은 B2B를 단순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는 하나, 당사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정보 제공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에서 일견 예견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에게 적절하지 않은 규정이라고도 보인다.

CESL에서는 일방이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며, 타방은 이러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예측되는 경우 사실 또는 법의 착오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49조). 이 경우 전제조건은 타방이 계약 전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의 및 공정거래가 그 착오를 알고 있는 일방이 그것을 지적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나 또는 동일한 착오를 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일방이 착오의 위험이 안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고 있다면 당해 착오에 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한편 진술의 표현이나 전달의 부정확은 진술을 행한 자의 착오

47) CISG, 제4조(적용사항과 비적용사항) : “본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율한다. 특히 본 협약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은 다음의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a)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b) 계약이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에 미치는 효과”

로 다루어진다는 규정은 착오에 대한 대다수의 국내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CESL은 기업들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신의 및 공정거래의 시각에서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의 위험을 내재한다. 아울러 CESL에서는 사기에 관한 법률효과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구두 또는 행위에 의하여 사기적 허위표시로 또는 신의 및 공정거래나 계약 전의 정보제공의무가 그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여하한 정보를 고의로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을 유도했다면,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사기를 허위의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아 상대방이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알거나 믿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타방으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는 사기에 해당된다. 이에 부수하여 신의 및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일방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Ackermann, 2012). CESL상 ‘강박’에 관한 조문(제50조)에 비추어, 일방이 잘못된 위협, 긴급하고 심각한 손해 또는 잘못된 행위에 의한 위협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착취’(제51조)에 관한 조문을 통해, 당해 착취를 타방이 일방을 의존하고 있거나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곤란 또는 긴급히 필요하거나 예견가능성이 없고 무지하거나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일방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음이 분명하고 계약의 목적과 상황에 비추어 일방이 이러한 타방의 형편을 이용하여 과도한 혜택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취소의 통지’에 관한 조문(제52조)에서, 취소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기간은 착오의 경우에는 6개월, 사기·강박 또는 착취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당해 기간의 개시는 당사자의 인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지의 정확한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실무상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통상 대부분의 법체계는 그 명확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당해 계약의 체결을 당해 시점과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기·착오·강박과 관련된 규정에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고려할 때, 기업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계약해

제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이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는 최종적인 기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추인’(제53조)은 일방이 자신의 취소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해 계약을 추인하지 않은 경우 당해 권리는 상실되며, ‘취소효과’(제54조)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일단 취소되었다면 소급효가 적용된다. 달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일부가 취소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일부만 취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은 이하 별도의 장(제17장)에서 다루고 있다. CISG는 해제와 취소 간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이 경우 ‘해제의 효과’(제81조)만을 다루고 있다. 곧 계약의 해제는 양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에 의한 의무를 면하게 하나, 다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해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 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계약의 여하한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ESL에서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규정(제55조)에서, 계약해제와 상관없이 그리고 계약의 소멸시효 종료 이후 또는 당해 계약의 확인 이후에, 착오·강박·위협 또는 착취에 기한 타방은 일방에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일방이 그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이 경우 B2B 간에도, 착오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외하고 계약상의 의무에 대한 구제수단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제56조).

마지막 ‘구제수단의 선택’에 대한 조문(제57조)에서, 만약 타방이 당해 계약을 해제권과 또는 불이행에 대한 구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이 경우 타방은 이들 두 가지 권리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표 18> CESL과 CISG의 비교 : 의사표시의 하자

CESL	CISG
제48조(착오) 1.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존재하는 사실 또는 법의 착오로 계약취소가능 2. 일방이 착오의 위험을 떠안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부담되어야 한다면 착오	(해당조문 없음) 왜냐하면 동 협정 제4조 (b)항에 있는 협약의 범주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를 이유로 계약취소 불가. 3. 진술이나 전달 시 부정확성은 그렇게 한 자의 착오로 간주한다. 제49조(사기) 1. 일방은, 상대방의 신의 및 공정거래의 무 또는 계약 전 정보 제공의무를 구두, 행위나 사기적인 정보 비제공에 의하든 허위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취소가능 2. 허위표시는 사기에 해당되며, 정보의 미제공이 착오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 3. 신의 및 공정거래가 특정정보를 통지하도록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식, 관련 정보 취득비용, 상대방의 정보 취득 용이성, 정보의 성격,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기간 계약서에서 해당상황에서의 상관습 고려 제50조(강박) 일방은 상대방이 잘못되고 압박한 손해나 잘못된 경위로 계약체결 유도하였다면 계약취소 가능 제51조(부당한 착취) 일방은 상대방에 달렸거나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가졌거나 경제적 고통 또는 긴급수요를 가졌거나 무지하고 무경험이고,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과도한 혜택 또는 불공정이익을 취함으로써 원당사자를 이용한 경우 계약취소가능 제52조(취소의 통지) 1. 취소는 상대방에게 통지로서 유효 2. 통지의 유효기간은 착오 6월, 그 밖의 경우는 1년	
---	--

제53조(추인) 계약취소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경우에는 취소 불가 제54조 취소효과 1. 취소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될 때 까지 유효 2. 취소근거가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내용은 그 일부만 한정함 3. 일방이 취소된 계약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금전반환은 제17장에서 다룸 제55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계약취소와 상관없이 착오, 사기, 강박, 부당한 착취로 인한 고통에 대한 손상은 손해배상 대상이 됨. 제56조(구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한) 1. 사기·위협·부당한 착취에 대한 구제수단은 직·간접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불가 제57조(구제수단의 선택) 구제수단대상자는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을 받을 상황이면 여러 구제수단 중 하나를 선택	
---	--

3) 계약내용의 해석

CESL상 계약내용의 해석은 해석원칙, 내용 및 효과, 불공정 계약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계약은 비록 그 의사가 계약에 사용된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공통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음에 틀림이 없다면 특정한 의미가 우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그 밖의 경우 계약은 합리적인 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석되어 진다. 이 경우 진술의 해석에 대한 CISG의

규정(제8조)은 내용상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CESL에서는 계약해석에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제59조), 본조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ISG상의 조문(제8조 내지 제9조)과 일치한다.⁴⁸⁾ 다만 차이점은 CESL에서는 신의 및 공정거래 원칙이 명백하게 당해 계약 및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데 적용되고(제59조), 반면에 CISG에서는 당해 조문(제8조 내지 제9조)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규정에 의한 소송 시 CISG의 실제적인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거래당사자는 이들 규정으로부터 CISG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계약서에 사용된 표현들은 동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비추어 해석하도록 하고 있고(제60조), 계약상 정본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어떤 언어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제61조). 또한 CISG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협상이 된 내용은 자동적으로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며(제62조),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제63조 내지 제65조).

계약의 내용 및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차례로 계약내용, 관습 및 관행, 묵시적 계약내용, 계약 전 진술에서 나온 계약내용, 개별적으로 협상되어진 계약내용의 주의환기 의무, 합병조항, 가격결정, 일방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 제3자에 의한 결정, 언어,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계약, 제3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의 순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골자를 차례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약내용에 대하여 CESL 제66조에서는 계약구성이 강행적인 규정을 준수로 한 합의, 관습 및 관행, 기본적인 CESL규칙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내용의 순대로 나

48) CISG, 제8조(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 행위의 해석) : “(1) 본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전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습, 관행, 당사자의 후속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관행과 관습의 구속력) : “(1)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습에 구속된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상거래에서 당해 상거래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하는 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이를 계약 또는 계약의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아가 이러한 순서에 관한 CESL규칙은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제66조). 관습 및 관행에 관한 사항은 CISG 당해 조문(제9조)과 유사한데, 곧 관습은 거래당사자의 명시적 동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가 되며, 관행은 거래당사자 간에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관습 및 관행은 개별적으로 합의한 계약내용 또는 CESL의 강행규정과 충돌 될 경우에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표준약관을 통해 배제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CISG하에서 관습은 CISG 규정에 우선하여 단순히 합의를 완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에 반하여, CESL에서는 그것이 강행규정의 배제사유로는 취급될 수 없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

묵시적인 계약내용에 대하여 CESL에서는 특정사항이 합의, 관습과 관행, 그리고 기본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다만 법원은 계약의 성격, 상황 및 신의 및 공정거래에 기초하여 추가내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8조). 또한 계약 전 특정진술에 의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전의 진술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제69조), 다만 타방이 진실성 또는 진술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결정하는데 별단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신뢰한 경우를 그 조건에 두고 있다.

개별적으로 협상된 계약내용을 환기시킬 의무와 관련,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 즉 표준약관은 계약체결되기 전 또는 적어도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이 경우 기업은, 예컨대 표준약관의 적용을 강조하고, 서명된 특별확인서를 받거나 또는 계약 그 자체에 의심스러운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ISG는 표준약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표준약관이 계약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차제에 있다.

통합조항과 관련, CESL은 그것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진술은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고, 다만 계약내용의 해석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제72조). 이 규정은 CESL에 있는 친기업적인 규정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CESL은 가격이 달리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거래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은 합의된 대로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급하고 있다(제

73조). 본조는 CISG의 규정(제55조)과 일치한다. 다만 CISG에서는 특별규정(제56조)을 부가하여, 만약 가격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의심이 있는 경우 순중량(net weight)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⁴⁹⁾

일방에 의한 가격결정에 대하여, CESL은 심하게 불합리한 일방적 가격결정을 금하고 있다(제74조). 그러나 중대한 불합리성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이것은 특히 가격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에게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수하여 제3자에 의한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CESL은 제3자에 의한 가격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제75조), 당해 사항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곧 만약 지정된 제3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하지 않는다면, 중재판정부를 포함한 법원은 또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만약 그 가격이 중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전조(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반복되는 이행계약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2달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내 종결할 수 있다(제77조).

다른 한편 제3자에 유리한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이행의무가 있는 제3자와 계약당사자는 상호 간에 불이행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계약내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반 규정과 불공정 계약내용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불공정 계약내용과 그 효과에 관련하여, 일방이 제공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은 타방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만약 계약이 불공정한 규정없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구속력을 보유한다(제79조). 이 경우 일방이 제공한 계약의 정확한 의미는 협정문 초안에서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은 까닭에, 이것은 오직 전형적인 표준약관만을 다룬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그것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 전체에 대한 해제를 선언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다른 한편 CISG는 불공

49) CISG, 제55조(대금불확정계약)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대금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반대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관하여 통상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순중량에 의한 대금의 결정) : “대금이 물품 중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의심이 있는 때, 순중량에 의해 대금을 결정한다.”

정한 계약내용에 대한 규정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따라서 당해 문제는 국내법에 의하여 다루어 질 것이다. 그 밖의 CESL의 조문내용으로서, 표준약관에 대한 통제기준, 곧 선적조건, 지급방법, 보험 등에 있는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이러한 개별조건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제86조). 위원회 작업반에서는 B2B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불공정 테스트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졌으나 특정 유형의 기업, 예컨대 중소기업 또는 특정 유형의 거래, 곧 일방이 타방에 비하여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불공정 테스트 및 벌칙조항을 두도록 작업하게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0).

<표 19> CESL과 CISG의 비교 : 계약내용의 해석

CESL	CISG
제58조(계약내용 해석의 일반원칙) 1. 계약은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로 해석 2. 계약서에 특정의미를 가진 것으로 의도하고 계약체결시점에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원당사자대로 해석 3. 합리적인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해석 제59조(관련 사항) 계약해석 시 고려사항으로 예비교섭 등을 포함한 계약체결사항, 계약체결 이후의 거래당사자의 행위, 계약에 사용된 표현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여한 의무로 해석,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습, 당사자 간 관습, 관련 활동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의미, 계약의 성격 및 목적, 신의 및 공정거래 고려함.	제8조(당사자 진술 또는 기타 행위해석)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의 진술 및 행위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대로 해석 (2) 전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일방의 진술 및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수준에서 해석 (3) 당사자 간 확립한 관습, 관행, 기타 후속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해석 제9조(관행과 관습의 구속력) (1)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동의한 관행과 자신들 사이에 확립된 관습에 구속 (2) 당사자가 알고 있는 관행으로 국제 거래에서 관련된 종류의 계약에 널리 알려져 있는 통상적인 관행은 계약 또는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

제60조(전반적인 계약 참고) 계약서는 전반적으로 비추어 해석	(해당조문 없음)
제61조(언어의 불일치) 2개 이상언어로 작성되고 모두 정본이라고 언급되지 않는 경우 원래 작성한 계약이 정본임	(해당조문 없음)
제62조(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 내용에 대한 우선적용) 불일치 시 개별 협상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내용을 우선	(해당조문 없음)
제63조(계약내용에 효력을 부여하는 해석의 우선적용) 계약내용에 효력을 부여하는 해석이 그러지 않는 해석보다 우선	(해당조문 없음)
제65조(계약내용의 공급자에게 불리한 해석) 계약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우선	(해당조문 없음)
제66조(계약내용) 계약내용은 강행규칙 준수 조건부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에게 구속되는 관습 및 관행, 당사자 합의 부재 시 그 반대로 적용되는 CESL 규칙, 묵시적 계약내용으로 구성됨.	(해당조문 없음)
제67조(B2B 계약 시 관습 및 관행) 1. 거래당사자는 합의한 관습에 의하여 확립된 관행에 의하여 구속 2. 거래당사자와 동일한 상황에서 기업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습에 구속을 받음 3. 관습과 관행은 개별 합의되었거나 강행규정인 계약내용과 충돌 시 그 정도만큼은 당사자를 비구속	제9조(관행과 관습의 구속력) (상동)

제68조(목시적일 수 있는 계약내용) 1.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것은 당해 계약의 성격 및 목적, 계약체결상황, 신의 및 공정 거래를 고려 2. 거래당사자가 목시적인 계약내용을 정하였다면 아마도 합의하였을 것에 효과를 부과하는 정도임 3. 고의적으로 특정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비적용됨. 제69조(특정계약 전 진술로부터의 계약 내용) 1. 기업이 상대방 또는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의 특정진술 시 그 진술은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그 진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 계약내용이 통합됨 2. 기업을 위하여 정보 또는 마케팅에 종사한 자에 의한 진술은 그 기업이 한 것으로 취급함. 제70조(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 내용의 주의 환기 의무) 1. 개별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또는 제공자가 계약체결 전까지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상대방에게 원용할 수 있음 3. 거래당사자는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없음 제72조(통합조항) 1. 서면상의 계약이 당해문서가 모든 계	(해당조문 없음) 제35조(물품의 일치성) (1)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량, 품질, 명세에 일치하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용기나 포장으로 물품 인도 (2)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용목적에 적합하거나, 계약체결 시 명시적 또는 목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특정 목적에 적합하거나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물품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되는 경우이다. (3)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매도인 책임없음 (해당조문 없음) (해당조문 없음)
---	---

약내용(통합조항)을 언급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문서에 있지 않은 여하한의 합의내용은 계약일부가 되지 않음 2. 통합조항은 당사자 사전진술을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제73조(가격의 결정) 계약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지급가격은 체결시점의 비교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이며, 그럴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함 제74조(일방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 1. 가격이나 여타 내용이 일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 결정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가격 또는 계약체결시점에서의 비교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가격 또는 내용으로 대체된다. 2. 거래당사자는 본조의 적용 또는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제3자에 의한 결정) 1. 제3자가 가격 또는 계약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할 경우 법원은 계약내용과 불일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음 2. 제3자가 결정한 가격이나 내용이 중대하게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가격 또는 계약체결시점에서	제55조(대금불확정 계약)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대금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성립 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매되는 물품의 일반적인 청구대금을 묵시적으로 원용함. 제56조(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제) 대금이 중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의심이 있을 때는 그 대금은 순중량으로 결정한다. (해당조문 없음) (해당조문 없음)
---	--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용 또는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 합리적 가격 또는 내용으로 대체 3. 전항 목적상 법원은 중재재판소 포함	
제76조(언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전달을 위한 언어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시 사용한 언어임	(해당조문 없음)
제77조(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계약) 1.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계약의무 이행에 관한 경우, 기간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달이 경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해제가능	제73조(분할이행계약의 해제) (1) 분할분 계약의 경우 일방의 어떠한 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분과 관련하여 계약해제 가능 (2) 장래 분할 분에 대하여 일방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장래분할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 계약해제 가능. 다만 상당한 기간 내에 알려주어야 함. (3) 특정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선언하는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 장래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해제 가능. 다만 상호의존관계로 계약체결 시 쌍방이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제78조(제3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 1. 계약당사자는 계약으로 제3자에게 권리하여 가능 2. 제3자의 권리성격 및 내용은 계약에 따라 결정. 3.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해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행제공의무가 있을 때, 제3자는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권리구제는 계약당사자와 동일 4. 제3자는 계약당사자중 한쪽에게 통지로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거절할	(해당조문 없음)

수 있다. 5. 계약당사자는 권리를 허여한 계약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이 중 일방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이미 수여받았음을 통지하기 전이라야 함	
제79조(불공정한 계약내용의 효과) 1. 불공정 계약내용은 상대방 구속 불가 2. 불공정 계약내용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그 나머지 계약내용은 구속력을 가짐	(해당조문 없음)
제80조(불공정한 계약내용의 예외) 1. 불공정확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적용될 CESL의 규칙 반영한 계약내용은 비적용 3. 당해 계약의 주요 목적물 정의 및 지급가격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비적용	(해당조문 없음)
제81조(강행성격) 불공정 계약내용의 적용 배제 또는 효과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해당조문 없음)
제86조(B2B 계약 시 불공정의 의미) 1.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내용의 일부, 신의 및 공정거래에 반하는 선량한 상관습으로 이탈된 경우에는 불공정으로 본다. 2. 계약내용의 불공정 평가 시 당해 계약에 의거 제공하여야 할 대상의 성격, 계약체결동안의 우세한 상황, 그 외 계약내용,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그 밖의 계약내용	(해당조문 없음)

제4장 계약의 이행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

제1절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

1. 매도인의 의무

CESL상 매도인의 의무는 일반규정(제91조 내지 제92조), 인도(제93조 내지 제98조),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제99조 내지 제105조)로 각각 구분하여 명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규정은 ‘매도인의 의무 총괄’(제91조), ‘제3자에게 이행을 위임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이행’(제92조)으로 구분된다.

인도는 인도장소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의 ‘인도장소’(제93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인도방법’(제94조), 인도시기가 달리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인도시기’(제95조),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을 수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매도인의 물품운송에 대한 의무’(제96조), ‘매수인이 승낙하지 않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방법’(제97조), 그 밖에 ‘위험이전의 효과(제98조)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와 관련해서는, ‘물품의 일치성의 요건’(제99조), ‘일치성에 대한 기준’(제100조), ‘제3자의 권리 및 청구’(제102조), 디지털 콘텐츠 업데이트가 계약체결 이후 계약에 불일치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일치성에 대한 제한’(제103조), ‘B2B 계약 시 매수인의 불일치 인지시 매도인의 면책’(제104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불일치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일치확립을 위한 시기’(제105조) 등의 조문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Samoy, 2011).

2. 매수인의 구제수단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일반규정, 매도인에 의한 치유, 이행요구, 매수인 의무 이행의 보류, 해제, 대금경감, B2B 계약 시 검사 및 통지요건 등으로 대별하여

이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일반규정으로는, ‘매수인의 구제수단 일반’(제106조), ‘금전의 대가로 공급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구제수단 제한’(제107조) 등이 있다. 주요 골자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매도인에 의한 치유에 대하여, 매도인이 이행을 조기에 제공하고 당해 이행이 계약내용에 불일치함을 통지받은 매도인은 허용되는 기간 동안에 일치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치유를 위한 제안은 해제통지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고, 매도인이 치유할 때까지 당해 이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치유에도 불구하고 치유로 인하여 손해 또는 치유에 의하여 예방하지 못한 손해뿐만 아니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는 ‘매도인에 의한 치유’(제109조), 매수인은 계약과 불일치한 경우 의무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매도인의 의무이행 요구’(제110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수인의 의무이행 보류에 대하여는 단일조문(제113조)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곧 본조는 매도인이 이행과 동시에 또는 이행 이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때까지의 이행을 보류할 권리를 가지며, 매도인의 이행만기 전에 불이행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을 보류할 수 있음을 명정하고 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우선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제114조), 매수인은 인도지연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인도지연이 중대하지 않는 경우 이에 상당한 추가기간을 통지하고 매도인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제115조), 매수인은 이행종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불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거나 달리 명백히 그러한 경우 당해 불이행은 계약해제를 정당화한다는 규정(제116조), 매도인의 의무가 별도로 이행되거나 달리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불이행이 당해 계약전체로 해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전체로 해제가 가능하며, 매도인의 의무가 구분할 수 없거나 대금의 일부가 비례계산 될 수 없는 경우 계약전체로 해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규정(제117조), 해제권은 매도인에게 통지함으로서 행사된다는 규정(제118조), 매수인이 해제통지를 행사하였을 때 또는 당해 불이행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중 나중 것을 기준으로 이행을 제공

하지 않는 경우 해제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제11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금경감에 대하여는 단일조문(제120조)으로서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계약에 일치하지 않는 이행을 수락한 매수인은 대금을 경감할 수 있고, 대금을 경감한 매수인은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고통 받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유한다는 것이다.

B2B 계약 시 검사 및 통지요건에 대하여, 매수인은 당해 물품의 인도,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서비스 제공 시 당해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검사를 받게 하여야 하며, 계약에 운송이 포함된 경우 이는 목적지 도착하고 난 이후 까지 연기되며, 경로가 바뀌거나 재발송되는 경우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이후까지 연기된다는 규정(제121조),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불일치한 내용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제반 권리를 상실하며, 또한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불일치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는 규정(제12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Wagner, 2012).

3. CISG와의 비교

1) 매도인의 의무

CESL에서는 매도인의 주요 의무에 대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91조), 본조는 CISG와 동일하다(제30조 및 제34조).⁵⁰⁾ 한편 CESL은 ‘제3자에 의한 이행’(제92조)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CISG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79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제3자의 이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

50) CISG, 제30조(매도인의 의무 총괄) : “매도인은 계약과 본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 :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은 본 협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保有한다.”

다른 한편 인도장소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인도장소를 명정하고 있는데(제93조), 곧 운송이 합의된 경우 최초운송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CISG의 경우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를 요하고 있음은 다르지 않으나, 만약 물품이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도되거나 또는 아직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제31조).⁵¹⁾ 아울러 CESL과는 달리, 매도인이 영업소를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영업소는 인도의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영업소로 특정하고 있다.

인도방법과 관련하여 CESL은 매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운송인에게 물품과 모든 서류를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밖의 모든 경우는 매수인에게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4조). 이는 CISG 연관규정과 동일하다(제30조 내지 제34조).⁵²⁾

인도시기에 대하여,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인도는 부당한 지체없이 이

51) CISG, 제31조(물품인도장소) :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인도의무는 다음과 같다. (a)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한다. (b)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한 물품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로부터 인출되어질 또는 제조 또는 생산되어질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물품을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둔다. (c) 그 밖의 경우에는 물품을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었던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둔다.”

52) CISG, 제32조(운송의 수배) :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본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그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하여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에 및 그 운송을 위한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담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이 그렇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인도의 시기) :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a)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b)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할 것이라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그 기간 내의 어떠한 시기 또는 (c)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 :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그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은 본 협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保有한다.”

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ISG 또한 이와 동일하다(제33조).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할 수 있는 경우 인도는 그 시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추보하고 있음은 차이점이다. 이 경우 매수인이 특정한 날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유는 조각된다.

매도인의 물품운송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CESL에서는 당해 물품을 구체화하는 사항, 적절한 운송방법, 보험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고(제96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 경우 매도인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존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97조), 이는 CISG 유관규정(제85조)과 동일하다.⁵³⁾ 매도인이 당해 물품을 합리적인 조건하에서 당해 물품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이다(제87조).⁵⁴⁾ 또한 물품을 판매하여 매도인에게 순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매도인은 판매대금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발생한 여하한 비용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CISG 유관규정(제88조)에 견주어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⁵⁵⁾

물품과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에 대하여, 물품의 일치는 계약에서 합의된 바대로 품질, 수량, 명세, 그 밖의 추가사항도 충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제99

53) CISG, 제85조(매도인의 물품보존의무) : “매수인이 물품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의 합리적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때까지 물품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54) CISG, 제87조(제3자 창고에의 임치) :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상대방 비용으로 제3자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55) CISG, 제88조(물품의 매각) : “(1)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반환받거나 또는 대금이나 보존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불합리한 지체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물품이 급속하게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존에 불합리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존하여야 할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그 매각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의 보존과 매각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조),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치기준(제100조), 제3자의 권리와 청구(제102조)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물품과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에 대한 기준으로서 당해 물품은 매도인에게 요청한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나,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 및 판단에 의존하지 않았거나 의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모형이나 견본이 제공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디지털 콘텐츠는 그것에 일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항상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해 물품은 계약 전 매도인의 진술에 일치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매도인은 권리의 제한없이 또는 명백히 제3자의 권리청구가 없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하는데(제102조), 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계약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당해 국가의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영업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에 의거 당해 물품이 매도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그러한 권리나 청구가 없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조는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계약의 체결시점에 알 수 없었던 권리나 청구에 적용된다. CISG는 본조와 동일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제41조), 이에 부수하여 특별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제42조). 한편 CISG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당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기간 내에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제43조), 다만 매도인이 그 권리나 또는 청구를 알고 있는 경우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⁵⁶⁾

56) CISG, 제41조(물품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 :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이 공업소유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2조(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한 제3자의 클레임) : “(1)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가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하여야 한다. (a)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한 경우 그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b) 그 밖의 경우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2) 전항의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 이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던 경우 (b) 이러한 권리나 클레임이 매수인에 의해 제공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의 명세를

기업 간 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점에 매수인이 불일치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불일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04조). CISG의 조문도 이와 동일하다(제35조). 이 경우 당해 일치를 결정하는 시점은 위험이전 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가 그것을 업데이트하여야 할 의무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기간 동안 당해 일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CISG는 이에 상당한 규정을 보유하고는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치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인도기일 전·후의 보완권(제37조 및 제48조)에서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⁵⁷⁾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제43조(제3자 클레임에 관한 통지) : “(1)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클레임의 내용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2)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 및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은 전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 57) CISG, 제37조(인도기일 전의 보완권) :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는 인도된 물품의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또는 수량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또는 인도된 부적합 물품에 갈음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본 협약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48조(인도기일 이후의 보완) : “(1) 제49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인도기일 이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본 협약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인수할지의 여부를 알려주도록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요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기간 내에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의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전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본조 (2) 또는 (3)에 따른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이 수령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표 20> CESL과 CISG의 비교 : 매도인의 의무

CESL	CISG
제91조(매도인 의무의 총괄) 물품 매도자 또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자(이하 매도인)는 해당 목적물을 공급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계약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권리를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보하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인도해야 할 의무 제92조(제3자에 의한 이행) - 매도인은 타인에게 이행 위임 가능. 개인적인 이행인 경우에는 제외 - 타인에게 이행을 위임한 매도인은 이행책임을 짐 제93조(인도장소) - 인도장소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매매 계약이 하나 이상의 운송인에 의한	제30조(매도인의 총괄의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서류 교부. 요구 시기 이전에 서류교부 시 매도인은 모든 흠결 보완가능. 만약 매도인이 불편 또는 불합리한 비용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 보유 제79조(손해배상책임의 면책) - 의무불이행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고 계약체결 시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회피,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책임 면제 - 불이행이 계약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에 기인한 경우 그 당사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고, 제3자에게 (1)이 적용된다면 면책됨 - 면제는 장애가 존재하는 한 효력 - 불이행당사자가 상대방의 장애 또는 그 장애가 그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손해책임을 있음 - 본조는 본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모든 권리행사도 가능 제31조(물품인도장소)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물품의 최초운송인에

운송의 경우 최초운송인의 집하지점이며, 운송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 시 매도인 영업소. 2. 매도인이 2개 이상 영업소가 있는 경우 인도의무와 가장 관련 있는 곳 제94조(인도방법)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의 운송인에 의하여 물품 운송하는 그 밖의 경우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서 그리고 운송인으로부터 인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 제95조(인도시기) 인도시기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인도	계 인도, 그러지 않는 경우 특정장소에서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며, 기타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둬 제33조(인도시기)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택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 어떠한 시기, 또는 기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
제96조(매도인의 물품운송에 대한 의무) 1. 매수인이 운송계약 시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운송수단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계약체결 2. 매도인은 당해 계약에 따라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화물에 표시하고, 선적서류 또는 그 밖의 것을 제공하는 물품으로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구체화하는 화물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제공 의무 3. 매도인으로 하여금 부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 시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의무 제97조(매수인이 승낙하지 않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1. 매수인이 인도하도록 된 때, 인수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보호하고	제32조(운송의 수배)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운송인에게 인도 시 물품 상에 확인에 의하여 또는 선적서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2) 매도인이 운송을 수배하는 경우 적절한 운송수단에 의해 통상적 조건으로 지정장소까지 운송계약 체결 (3) 매도인이 운송관련 담보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담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수가능한 정보제공 의무 제85조(매도인의 물품보존의무) 매수인의 물품 수령지체, 대금지급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매도

- 보전할 합리적인 조치 의무가 있음
2.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시에 두도록 제3자에게 합리적 조건으로 맡겨둔 경우 매수인에게 통지한 후 합리적 조건으로 판매하고 이익금을 매수인에게 주는 경우 인도의무에서 해제됨.
 3. 매도인은 매매수익금으로 합리적으로 발생비용을 상환 또는 공제권리 있음

제99조(물품의 일치성)

1. 계약일치를 위해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량, 품질, 명세이어야 하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되어야 하며, 여하한의 부속품, 설치 지침 또는 그 밖의 지시사항에 따라 공급되어야 함.
2. 계약일치를 위해 제100조 및 제10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처분을 지배할 수 있다면 매도인은 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보상받을 때까지 물품 보유권리 있음.

제87조(제3자 창고에 보관)

물품보관조치의무자는 물품을 상대방의 비용으로 제3자의 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불합리하지 않아야 함.

제88조(물품매각)

- (1) 물품보존의무자는 상대방이 불합리한 지체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리적으로 매각의사를 통지하여야 함.
- (2) 물품이 급속하게 변질, 보존이 불합리한 비용이 드는 경우 매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매각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
- (3) 매각당사자는 물품 보존 및 매각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보전 받을 권리가 있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함.

제35조(물품의 일치성)

- (1)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용기 및 포장으로 인도
- (2) 다음의 경우 계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 계약체결 시 묵시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특정 목적에 적합,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 보유, 물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

	법으로 용기 또는 포장함 (3)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전항의 책임이 면제 제36조(물품손상 일치성에 미치는 효과) (1) 매도인은 불일치에 대하여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책임지며, 그 불일치가 그 시점 이후 밝혀지더라도 동일함 (2) 매도인은 불일치가 전항 시점 이후 발생하더라도 의무위반에 기인한 경우 책임을 부담. 그의 의무위반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물품의 통상의 목적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증이나 보유할 것이라는 보증의 위반이 포함됨.
제100조(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에 대한 기준) 계약체결시점에 알려진 특정한 목적에 적합. 통상의 사용목적에 적합. 견본 또는 모델로서 제시된 품질 보유. 통상적인 방법으로 용기에 들었거나 포장.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기대할 수 있는 부속품, 설치지침 또는 그 밖의 지침서와 함께 제공. 계약내용의 일부가 되는 계약 전 진술로 표시된 품질 및 이행능력 보유.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품질 및 이행 보유	제35조(물품의 일치성) (상동)
제102조(제3자의 권리 및 청구) 1. 제3자로부터의 권리가 없어야 함. 2. 지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여하한 권리가 없어야 함 3. B2B 계약에서 전항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점에 지재권에 기초한 권리가 청구를 알고 있는 경우 제외	제41조(물품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 그러나 그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이 지재권 등에 기초하는 경우 제42조에 따라 적용 제42조(지재권 등에 의한 제3자 클레임) (1)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이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 다만

	이것이 다음 국가의 법에 기초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예상한 경우 그 국가의 법. 기타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 (2) 전항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는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알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기술적 설계, 디자인 등에 의한 경우에는 비적용됨 제43조(제3자의 클레임에 관한 통지) (1)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 내용을 알고서 상당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제41조, 제42조상 권리의 원용 상실 (2)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및 클레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은 전항의 권리 원용 상실.
제103조(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에 대한 제한) 디지털 콘텐츠는 업데이트된 버전이 계약체결 이후 이용가능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불일치로 보지 않음	(해당조문 없음)
제104조(B2B 계약 시 불일치에 대한 매수인의 인지) 계약체결시점에 매수인이 그러한 일치결여를 안 경우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음	제35조(물품의 일치성) (상동)
제105조(일치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기)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불일치에 책임을 짐 4. 디지털 콘텐츠가 기업에 의하여 나중에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경우 기업은 디지털 콘텐츠의 계약기간동안 계약에 일치하여야 할 의무	제37조(인도기일 전의 보완권) 인도기일 전에 인도한 경우 매수인이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한, 불일치를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매수인의 구제수단

매수인의 구제일반에 대하여 CESL에서는 당해 계약의 무효성에 기한 구제를 제외하고, 이행, 수리 또는 대체의 효과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제106조). 그 내용으로서, 매수인은 자신의 이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종료하거나, 대금지급 또는 청구하고자 하는 손해배상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는 치유 및 확인 내지 통보대상으로 그 기준을 명정하고 있다. 또한 면책된 불이행은 이행 및/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고 있으며, 만약 매수인이 이행결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는 어떠한 구제수단도 행사할 수 없으며, 양립할 수 없는 구제수단은 누적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CISG에서는 매수인의 구제총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제45조),⁵⁸⁾ 특정이행을 제외하고 그 내용은 상호 일치하고 있다.

매도인에 의한 치유로서, 매도인이 초기 하자가 있는 이행을 제공한 경우 그는 이행기간 내에 당해 결함을 치유할 자격을 보유한다(제109조). 그 외에는 자신의 경비로 당해 치유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계약의 종료 통지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당해 치유가 불편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또는 지연되어 그것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주목할 수 있는 사안으로 CISG에서는 별단의 규정(제37조)을 보유하고 있는데,⁵⁹⁾ 곧 조기인도의 경우 매도인은 인도예정시기까지 당해 물품의 일치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매수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된다. 또한 인도일 이후 매도인의 치유는 유관규정(제48조)에

58) CISG, 제45조(매수인의 구제수단) :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a) 제46조 내지 제5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이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59) CISG, 제37조(인도기일 전의 보완권) :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는 인도된 물품의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또는 수량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또는 인도된 부적합 물품에 갈음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본 협약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 치유가 허용되는데, 이는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에 따라 중대한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에 허용된다.⁶⁰⁾ 한편 CESL에서는 당해 치유가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부담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9조). 이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으나, 치유와 불일치한 권리를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치유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모든 손해뿐만 아니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치유를 하지 못한 결과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의 구제수단이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가 실패한 치유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도인의 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특정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제110조). 다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또는 그 경비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된다. CISG에서는 불일치한 구제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제46조) 그리고 제공정보 정확성 보장의무(제28조)를 조건으로 이행청구를 허용하고 있다.⁶¹⁾

60) CISG, 제48조(인도기일 이후의 보완) : “(1) 제4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인도기일 이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본 협약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인수할지 여부를 알려주도록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요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기간 내에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의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전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본조 (2) 또는 (3)에 따른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이 수령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본 협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이르게 되는 경우 (b) 인도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이 제47조 (1)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에 계약해제를 선언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a)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b) 인도지체 이외의 모든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i)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ii) 매수인이 제47조 (1)에 따라 지정한 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추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iii) 제48조 (2)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한 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인수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61) CISG, 제46조(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수리와 대체 중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하여는, 소비자만이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제111조). 기업은 그러한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특별 합의가 없는 경우 부족분을 구제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달려 있다. CISG하에서는 매수인은 중대한 계약위반의 경우 대체 물품 인도를 선택할 수 있다(제46조). 대체물품반환의 경우 매도인은 당해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반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그것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제112조).

한편 이행보류권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 때까지 이행권을 유보할 권리를 보유한다(제113조). 본조는 CISG의 조문과 일치하고 있다(제58조).⁶²⁾ 곧 물품대금의 지급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CISG 본조에 따라 매수인은 당해 물품을 확인하기 전에 대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 또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위반의 경우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는 모든 중대한 계약위반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제114조). CISG 또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9조).⁶³⁾ 이행을 위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러한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약부적합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고 대체물품의 청구가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 한다. (3)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리청구는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28조(특정이행과 국내법) : “당사자 일방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법원이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62) CISG, 제58조(대금지급의 시기) : “(1) 매수인이 다른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본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 CISG,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본 협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이르게

한 추가기간을 지정한 통지 이후 인도지연에 대한 계약해제에 대하여 CESL에서는 당해 불이행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114조). 만약 매도인이 부당한 지체없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한 기간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매도인이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당해 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한 경우 계약해제는 더 이상의 통지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CISG에서도 매수인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취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 동안에 추가기간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47조).⁶⁴⁾

부수적인 불이행에 대한 종료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거나 또는 달리 명백히 한 경우 그리고 불이행이 종료를 정당화하는 정도의 불이행이라면 이행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당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제116조). CISG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제72조),⁶⁵⁾ 다만 예외적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명정하고 이 경우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CESL에서의 통지요건(제118조)은 이에 준한다.

분리할 수 있는 이행의 해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제117

되는 경우 (b) 인도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이 제47조 (1)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에 계약해제를 선언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a)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b) 인도지체 이외의 모든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i)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ii) 매수인이 제47조 (1)에 따라 지정한 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추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iii) 제48조 (2)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한 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인수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64) CISG, 제47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 “(1)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당해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65) CISG, 제72조(이행기 전의 계약해제) : “(1) 계약의 이행기 전에 일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선언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 다만 계약 전체의 해제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된다. CISG 역시 일부해제에 대하여 명정하고 있다(제51조).⁶⁶⁾ 해제통지는 매도인에게 통지로서 행사되어지며(제118조), 매수인이 인지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예측되고 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19조). 불인도의 경우에 해제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CISG의 경우 인수받은 물품을 인도 시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하는 것은 해제의 전제조건이 된다(제82조).⁶⁷⁾

가격인하권리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한 경우 매수인은 당해 물품을 인수하거나 또는 물품대금 인하권리를 보유한다(제120조). 설령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인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CISG의 처지 또한 마찬가지이다(제50조).⁶⁸⁾ 다만 당해 규정은 가격인하가 매도인이 치유할 수 있는 경우 실행할 수 없다.

B2B 계약 시 물품,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는 기업 간 상당한 기간 내에 확인되어야 한다(제121조). 그 기간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CISG에서는 당해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제38조).⁶⁹⁾ 그러나 CISG 본조에서

66) CISG, 제51조(물품일부의 부적합) : “(1)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된다. (2)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중대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전체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67) CISG, 제82조(물품반환의 불가능) :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이유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b) 제38조에 규정된 검사로 인하여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c)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이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 의하여 이미 통상적인 상거래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소비 또는 변형된 경우”

68) CISG, 제50조(대금의 감액) :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라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그 의무의 불이행을 보완하거나, 매수인이 당해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69) CISG, 제38조(물품검사시기) : “(1) 매수인은 상황에 비추어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를 위한 합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 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은 유의할 사항이다. 한편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이후까지는 물품확인이 연기될 수 있다. 이는 CISG의 본조와 일치한다. 다른 한편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의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 물품검사는 최종 목적지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내용은 CESL(제121조) 및 CISG(제38조) 경우 공히 동일하다.

B2B 간 계약서에 불일치 통보요건에 대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기업은 당사자가 당해 결함을 발견하거나 발견하였음에 틀림이 없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당해 불일치 사실 및 그 상세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22조). 이 역시 CISG와 동일하다(제39조).⁷⁰⁾ 이 경우 제척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다. CESL 본조에 의해 제공된 보증은 보증이 끝날 때 까지 확장된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모든 물품이 인도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머지 물품이 인도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는 아마도 수량이 부족한 경우 통지의 시기는 매수인이 인도되지 않은 물품이 더 이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때임을 의미한다. 만약 매도인이 부족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경우 그는 통지에 의한 지연을 원용할 수 없다. 본조는 CISG와 일치하고 있다.

리적인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하여 운송 중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전송되고 또한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그러한 변경이나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 70) CISG, 제39조(계약부적합의 통지) : “(1)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당해 부적합의 내용을 명세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2)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그에 따른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기간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21> CESL과 CISG의 비교 : 매수인의 구제수단

CESL	CISG
제106조(매수인의 구제수단 일반) 1.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행요구,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구체적인 이행, 수리 또는 대체를 포함하며, 자신의 이행보류, 계약해제, 원상회복, 가격인하의 조치가 있음 2. 치유대상이 되고 매수인이 불일치 원용할 권리는 검사요건과 통지대상임 4. 매도인의 불이행 면책시, 매수인은 이행요구 및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구제수단 행사 5. 매수인은 자신이 매도인의 불이행을 초래한 정도의 구제수단 행사 불가 제109조(매도인에 의한 치유) 1. 이행을 조기에 제공하고 계약내용 불일치를 통보받은 매도인은 허용기간에 일치되는 이행을 제공할 수 있음 2. 불일치되게 이행을 제공한 매도인은 불일치를 통지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치유하도록 제안 가능 3. 치유제안은 해제통지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4. 치유제안 거절은 매수인에게 불편하	제28조(이행청구와 국내법)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 이행 요구권리가 있더라도 법원이 본 협약에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특정이행판결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법원은 특정이행판결내릴 의무가 없다. 제44조(불통지의 정당사유) 매수인이 요구된 통지를 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감액, 또는 이익손실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제45조(매수인의 구제권 총괄) (1)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제46조 내지 제52조 권리행사와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2) 매수인은 다른 구제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리도 청구가능 (3)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법원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 허여 불허 제37조(인도기일 전의 보완권) 인도기일 전에 인도한 경우 매수인이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한, 불일치를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8조(인도기일 이후의 보완) (1)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주거나 매수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매도인으로 부터 보상받는데 대한 불안을 야기

거나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미래 이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지연이 중대한 불이행에 상당하는 경우, 가능 - 매도인은 치유할 상당한 기간 보유 - 매도인은 치유까지 이행 보류 가능. - 매수인은 치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 또는 그 치유에 의하여 예방되지 못한 손해뿐만 아니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유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인 손해배상 청구권리는 보유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 인수 여부를 알려주도록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요구에서 제시한 기한 내 이행가능.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체청구권한 보유 - 특정기간 내에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전항의 요구 포함한 것으로 추정 -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제110조(매도인의 의무이행 요구) -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 요구 권리가 있음 - 요구될 수 있는 이행은 계약과 불일치한 이행을 구제하는 것 포함 - 이행은 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경우 또는 이행 부담 또는 매수인이 취하는 혜택에 비하여 불균형인 경우에는 요구불가.	제46조(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청구 가능. -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체품 인도청구 가능. 다만 불일치로 인하여 중대한 위반이 되고 대체품 청구가 통지와 연계하여 상당기간 내 행해지는 경우에 한함. - 불일치하는 경우 매도인에 관하여 수리에 의한 불일치 시정 청구 가능. 수리청구는 통지와 연계하여 상당기간 내 행해지는 경우에 한함.
제112조(대체물품의 반환) - 매도인이 대체로 일치결여를 해결하였다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물품 회수의무와 권리 가짐 - 매수인은 대체하기 전 기간 동안 대체물품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음	제84조(이익의 반환) - 매도인이 대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대금지급한 날로부터 이자도 지급 - 매수인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제113조(이행보류권)

1. 매도인의 이행과 동시 또는 이후 이행을 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을 제 공할 때까지 이행보류 권리
2.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하기 전에 이 행하여야 하고 매도인의 이행이 만기 에 불이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사유 가 있는 경우 이행보류
3. 불이행으로 정당화되는 정도의 이행 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보류됨.

제114조(불이행에 대한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이행이 제87조 의 중대한 불이행인 경우 계약해제

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반환할 수 없음에도 계약해제를 선언 하였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매체품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제58조(대금지급시기)

- (1) 매수인이 특정시기에 대금지급의무 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 또는 물 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 처분에 두는 때에 대금 지급.
- (2) 운송물품 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물 품 또는 물품처분서류가 매수인에게 인 도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물품 발송
- (3) 매수인은 물품검사기회를 가질 때 까지는 대금지급의무 없음.

제71조(이행정지)

- (1)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의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 정지가능. (a) 상대방의 이 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흠결, (b) 계약이행을 준비하거나 계약이행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함.
- (2) 전항의 사유가 명백하기 전 매도인 이 물품을 발송한 때 매수인이 서류 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음
- (3) 이행정지자는 물품발송 전, 후를 불 문하고 상대방에게 정지통지를 보내 야 하고, 또한 그 이행에 관한 적절 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이행 계속

제49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1)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 계약해제 선 언가능. (a) 의무불이행이 중대한 계 약위반인 경우, (b) 불인도의 경우 추 가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매

제115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통지 후 인도지연시 계약해제) 1. 매수인은 인도지연의 경우 계약해제 가능. 인도지연이 중대하지 않지만 추가기간 지정하여 통지하고 매도인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2. 추가기간은 매도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매도인 통지에 의하여 기간 내 불이행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 추가통지 불필요	도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한 경우 매수인이 기한 내 해제선언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선언 권리상실. (a) 지연된 인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인도가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 (b) 그 이외의 경우 모든 위반과 관련해서 다음의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을 때,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기간 경과 때, 또는 매도인이 추가기간 내 의무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때, 매도인이 추가기간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때 제47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지정) (1)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기간의 추가기간 지정 가능 (2)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추가기간 내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 구제수단 행사 불가능. 그러나 이행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리 보유 제48조(인도기일 이후의 보완) (1)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주거나 매수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데 대한 불안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인 손해배상 청구권리는 보유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인수할지 여부를 알려주도록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요구에서 제시한 기한 내 이행가능. 매수인은
---	---

제116조(예상되는 불이행에 대한 해제) 매수인은 이행만료 전에 계약해제 가능. 매도인이 불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거나 명백한 경우 그리고 불이행이 해제를 정당화할 정도인 경우에 한함 제117조(해제권의 범위) 1. 매도인의 의무가 별도로 이행되거나 구분되는 경우 비례 배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매수인은 부분해제가능 2. 매수인이 다른 부분의 이행을 승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거나 전체 해제가 정당화되는 경우 제1항 배제. 3. 매도인의 의무가 구분되지 않거나 금액일부가 비례 계산될 수 없는 경우 전체로 해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전체로 해제 제118조(통지) 해제권은 통지에 의해 행사 제119조(해제권의 상실) 1. 매수인은 해제통지권리가 발생하였을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청구권한 있음 (3) 특정기간 내에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전항의 요구를 포함한 것으로 추정 (4)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제72조(이행기전의 계약해제) (1) 어느 일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제 선언가능 (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계약해제 선언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지 필요 (3) 전항은 상대방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1조(물품일부의 불일치) (1) 물품일부만 인도하거나 일부만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 부족 또는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는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 적용 (2) 인도 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 전체 해제 선언 가능 제82조(동일한 상태의 물품반환 불가능) (1) 매수인이 수령한 상태로 동일하게
--	---

때, 또는 매수인이 불이행을 알게 된 경우 상당한 기간 중 나중 것을 기준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 해제권 상실 2. 이행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비적용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선언 또는 대체품인도청구 상실 (2) 전항은, 원상태 반환불가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에 규정된 검사로 인하여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변질된 경우, 매수인에 의하여 이미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매각되었거나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소비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비적용 제83조(그 밖의 구제권의 존속) 매수인은 제82조에 의한 해제선언권리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요구권리 상실시 계약 및 본 협약에 따른 모든 구제권 보유
제120조(대금감액권) 1. 계약불일치 이행을 수락한 매수인은 대금감액 가능 2. 대금감액받을 권리가 있고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초과분 받을 수 있음 3. 대금감액된 매수인은 손해를 회복할 수 없지만 고통받은 손실에 대한 청구권 있음	제50조(대금감액)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하는 경우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가액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가액에 관하여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가능.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불이행을 보완하거나 매수인이 그러한 조항들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인수 거절시 매수인은 대금 감액 불가
제121조(B2B 계약 시 물품에 대한 검사) 1. 매수인은 당해 물품의 인도,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물품검사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함. 2. 운송계약이 포함된 경우 검사는 당해 물품이 목적지 도착 후까지 연기 3. 당해 물품이 경유지가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시 매도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제38조(물품검사시기) (1) 매수인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검사되도록 하여야 함. (2) 운송계약이 포함된 경우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 도착이후까지 연기 (3) 물품이 운송중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매도인이 그러한 변경을 안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 도착이후까지 연기 제122조(B2B 계약시 불일치의 통지요건) 1.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 내 불일치 특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 원용 불가 2.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불일치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 원용권리 상실 3. 거래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하여 또는 통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당해 물품이 적합하다고 합의한 경우 통지기간은 합의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만료되지 아니함. 4. 제2항은 제102조에 언급된 권리 또는 청구를 제3자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6. 매도인은 불일치를 알고 있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조의 원용자격 상실	도착이후 까지 연기 제39조(불일치 통지) (1) 매수인이 불일치 발견 시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불일치 내용을 명세하여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불일치 원용권리 상실 (2) 매수인은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불일치 원용권리 상실 제40조(매도인의 악의) 매도인이 물품의 일치를 알고 있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했던 사실은 매도인은 제38조 및 제39조 규정 원용권리 상실
---	--

제2절 매수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구제수단

1.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일반규정’(제123조), ‘대금의 지급의무’(제124조 내지 제128조), ‘수령’(제129조, 제130조) 등의 3가지로 대별된다. 일반규정에서 매수인 의무의 총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는 물품대금지급과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수령과 관련 서류를 인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23조).

대금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지급은 계약내용에 표시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지에서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도인의 동의를 전제로 수표 또는 그 밖의 지급지시서나 지급약속어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제124조). 대금지급장소에 대하여, 지급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장소는 계약의 체결시점에서의 매도인 영업소이다. 이 경우 2개 이상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지급의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된다(제12조). 한편 대금지급 시기는 물품인도 시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이 만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합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조기의 지급제안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6조). 또한 매수인이 타인에게 지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매수인의 동의가 전제된 경우, 제3자가 지급하는데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또한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 한다(제127조). 지급충당과 관련,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여러 번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이 충분히 충당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점에서 당해 대금이 충당되는 의무를 매도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충당 시 매수인에 의한 지급은 경비, 이자, 원금의 순이다(제128조).

수령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대리하는 서류를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9조). 아울러 조기인도 및 과부족 수량의 인도에 대하여, 조기인도의 경우 합리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은 인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족수량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초과수량을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결정하며, 대금지급은 비율대로 지급하게 된다(제130조; Magnus, 2012).

2. 매도인의 구제수단

매도인의 구제수단은 ‘일반규정’(제131조), ‘이행요구’(제132조), ‘매도인의 의무이행 보류’(제133조), 해제(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매도인의 구제수단 총괄로 매수인의 의무불이행 시 이행요구, 매도인의 자신의 이행보류, 계약해제,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손해배상 중의 어느 하나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 이행요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 구제수단 중 어느 것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제131조).

이행요구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대금지급만기 시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이 수행한 그 밖의 의무이행에 따른 권리가 있다. 매수인이 인수할 의향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인수요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중대한 노력 또는 비용없이 합리적인 대체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제132조).

매수인이 이행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이행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을 제공하거나 이행할 때까지 이행을 보류할 권리를 보유한다(제133조). 매수인이 불이행 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매도인은 그러한 믿음이 지속되는 한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적절한 이행을 약속하거나 담보 제공 시에는 상실된다. 아울러 매수인의 불이행이 매도인의 이행 전부를 보류할 만큼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전체가 해당된다.

매도인은 당해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134조),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통지 후의 지연도 마찬가지이다(제135조). 또한 매도인이 이행만기 전에 매수인이 불이행을 선언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36조). 해제권의 범위에 기하여, 매수인의 의무가 별도로 이행되거나 달리 분리될 수 있고 이것이 해제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만 계

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제137조). 통지의 요건은 이에 부수한다(제138조). 아울러 해제권의 상실과 관련하여 이행이 늦게 제공되었거나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권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 해제통지가 매도인이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제139조). 다만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해제권은 존속된다(Piltz, 2012).

3. CISG와의 비교

1) 매수인의 의무

CESL상 매수인 의무의 총괄로서 매수인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서류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서에서 합의된 지급방법이 우선 적용된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당해 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시점에서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여하한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수표 및 그 밖의 약속어음은 인수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만 인정된다. 만약 매도인이 양도를 수용한다면, 이전 채무는 소멸되고 제3자의 약속어음은 매도인이 보유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CISG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세한 명시규정이 없고, 다만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단계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따름이다(제54조).⁷¹⁾

한편 CESL에서 지급장소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면, 지급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된다. 영업소가 여러 곳일 경우에 지급장소는 당해 계약상 의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된다. CISG에서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대금지급을 요구하고 있거나 또는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매도인의 영업소 변경으로 필요외적 비용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7조).⁷²⁾

71) CISG, 제54조(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급시기에 대하여 CESL에서는 당해 지급은 인도 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도인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급이 만기가 되기 전에 지급하도록 하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가 자유로이 표준약관을 변경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한편 CISG에서는 대금지급의 시기에 관하여 매수인이 다른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본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CESL에 비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제58조).⁷³⁾

CESL에서는 제3자의 지급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곧 매수인은 제3자에게 지급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대금지급에 책임을 진다. 매수인의 동의로 지급하거나 지급에 있어서 합당한 이자를 가지는 제3자는 매도인에 의하여 거절 될 수 없다. 또한 대금지급이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만약 매도인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

72) CISG, 제57조(대금지급의 장소) :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a) 매도인의 영업소 (b)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그 인도가 행하여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73) CISG,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 “(1) 매수인이 다른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본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않은 제3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다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에서 해제되고, 매도인은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CISG는 당해 관련조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CESL에서는 지급의 ‘산정’(imputation)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곧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채무가 있고 이 모든 채무를 다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하고 있다. 매수인은 어떤 채무에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거나, 매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만기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각된다. 마찬가지로 CISG는 이에 상응한 규정은 없다.

CESL상 매수인의 의무는 물품을 인수하고 매도인이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CISG의 규정과 일치한다(제60조). 그러나 CESL상 당해 조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 청구에 관한 규정(제132조)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분별하여야 한다. 곧 본조에서는 매수인이 당해 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충분한 노력이나 비용없이 합리적인 대체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조기인도 및 과부족 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은 조기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에 합의된 수량보다 적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이다. 달리 수량이 많은 경우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것처럼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CISG에서는 매수인은 항상 조기인도 및 수량 초과인도 시 이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제52조).⁷⁴⁾

74) CISG, 제52조(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 : “(1)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계약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표 22> CESL과 CISG의 비교 : 매수인의 의무

CESL	CISG
제123조(매수인 의무의 총괄) - 매수인은 대금지급,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인수, 물품대리 또는 이와 관련되거나 디지털 콘텐츠 관련 서류를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수 - 디지털 콘텐츠가 대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의무가 없음. 제124조(지급방법) - 지급은 계약내용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것이 없는 경우 지급지에서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 사용 - 수표, 그 이외의 지급 지시서, 약속어음을 수락하는 매도인은 정히 인수되는 조건으로 취급. - 매수인의 의무는, 제3자의 약속어음을 지급수단으로 수락하도록 이미 약정을 가지고 있는 제3자로부터 지급하도록 약속어음 수락 시 소멸 제125조(지급장소) - 지급장소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시점의 매도인 영업소가 됨 - 매도인이 2개 이상 영업소가 있는 경우 지급할 의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매도인의 영업소임. 제126조(지급시기) - 대금지급은 인도 시 이루어진다. - 매도인은 만기이전에 매수인의 대금지급 제안 시 합법적인 이익이 있는	제53조(매수인의 의무 총괄) 매수인은 물품 대금 지급과 물품인도 수령의무가 있음 제54조(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계약이나 또는 관련 법규 하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는 것임 제57조(대금지급장소) (1) 매수인이 특정장소에서 대금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대금지급. 매도인 영업소,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그 인도가 행하여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의 성립 후 영업소 변경으로 비용증가 시 이를 부담 제58조(대금지급시기) (1) 매수인이 특정시기에 대금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대금지급.

경우 제안 거절 가능	(2) 운송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대금지급과 상환하지 않으면 물품 또는 물품 처분 서류를 인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물품 발송 (3) 매수인은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지급 의무 없음 제59조(대금지급 의무와 지급요구의 불요성) 매수인은 대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매도인은 어떠한 요구나 절차를 준수할 필요 없음
제127조(제3자에 의한 지급) 1. 매수인은 타인에게 지급위탁 가능 2.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 제3자 지급거절 불가. 제3자가 매수인 동의로 행위한 경우, 제3자가 합법적 이익이 있고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3. 전항에 의한 제3자에 의한 지급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 4. 제3자에 의한 지급수락 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 부터의 의무로부터 해방. 매도인은 그러한 수락으로 초래되는 손실은 매수인 책임.	(해당 조문 없음)
제128조(지급의 충당)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여러 번 지급하여야 하고, 총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지급시점에 대금이 충당되는 의무를 매도인에게 통지 2. 매수인이 전항에 의하여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함으로써 그 이행을 여러 의무 중 하나를 충당 3. 전항의 충당은 그것이 만기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되는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	(해당 조문 없음)

4. 일방에 의한 유효한 충당이 없는 경우 지급은 순서대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의무에 충당되며 이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급분은 비례하여 충당됨. 만기가 도래되는 의무 또는 만기도래 첫 번째 의무 해당하는 의무, 매도인이 담보를 가지지 않거나 거의 담보가 없는 경우 매수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의무, 가장 첫 번째 발생하는 의무
5. 소멸시효결과로 집행할 수 없는 의무는 위 조항에 의하여 대금이 충당
6. 충당순서는 경비, 이자, 원금 순임.

제129조(수령)

매수인은 다음에 의해 인수 의무 이행.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위 수행,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인수 및 관련 서류 수령

제130조(조기 인도 및 잘못된 수량의 인도)

1. 매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물품 공급 시 매수인은 수령 의무 있음. 매수인이 수령거절시 합리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예외.
2. 매도인이 부족수량으로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수령하여야 함. 수령거절시 합리적인 이익 있는 경우 예외
3. 매도인이 초과수량 인도 시 초과분에 대하여 매수인은 보유 또는 거절가능
4. 매수인이 초과분 보유 시 당해 계약에 의거 공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계약에서 정한 율로 대금지급
6.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경우 동 공급계약에는 본조 미적용

제60조(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 물품의 수령

제52조(조기 인도 및 수량초과인도)

- (1) 매도인이 지정기일 전 인도 시 매수인은 인도수령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2) 매도인이 초과수량을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초과수량 인도 또는 거절가능. 초과 또는 일부수령 시 비율에 따라 대금지급.

2) 매도인의 구제수단

CESL상 매도인의 구제수단과 관련, 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은 특정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CISG, 제61조 내지 제62조).⁷⁵⁾ 또한 매도인은 자신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으며(CISG, 제71조),⁷⁶⁾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CISG, 제61조, 제64조).⁷⁷⁾ 한편 매도인은 손해배상금 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CISG, 제61조), 매도인은 자신이 불이행을 초래한 경우 여하한의 구제조치를 원용할 수 없으며, 양립할 수 없는 구제수단은 누적될 수 있다.

매수인의 의무이행 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인수하는 것을 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합리적이고 부

75) CISG, 제61조(매도인의 구제권) :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 (b)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2)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의 행사로부터 박탈되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허용할 수 없다.”, 제62조(매도인의 이행청구권)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당해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 CISG, 제71조(이행정지) : “(1) 당사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a)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b) 계약의 이행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2) 전항의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이미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본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만 적용한다. (3)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

77) CISG, 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본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b) 매수인이 제63조 (1)에 따라 매도인이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물품대금 지급 또는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a)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관련해서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b)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과 관련해서 다음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i)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ii) 매도인이 제63조 (1)에 따라 지정한 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추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담스럽지 않은 대체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이것은 매수인에게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물품이 매매되고 물품가격이 추후에 인하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당해 불이행, 곧 물품대금의 미지급 및 미수령에 대한 불이행 및 매수인이 향후에 당해 물품을 인수할 의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매수인은 미수령 기간 동안에 당해 물품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한편 당해 계약이 당사자 간 의무의 동시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만약 매도인이 우선 이행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뢰를 위한 기간 동안 또는 매수인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당해 이행유보는 그것이 정당화되는 한 실행가능할 수 있다. CISG에서는 보다 높은 기준을 두고 있는데, 곧 불이행이 당해 행위로부터 또는 심각한 결함으로부터 분명하여야 한다(제71조).

다른 한편 만약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CISG는 이에 더하여 지정된 기간 이후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해 물품을 인수하거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 계약종료는 허용된다고 추가하고 있다(제64조). 또한 매수인이 이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통지 후 지연에 대한 계약종료에 대하여, 만약 당해 지연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최종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추가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CISG, 제63조). 만약 매수인이 정당한 지체없이 당해 기간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합리적인 것으로 취급되며, 이 경우 계약의 해제는 추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유효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이행을 확신하고 또한 당해 불이행이 중대한 것이라고 매수인이 선언하거나 또는 달리 명백한 경우 당해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CISG, 제72조). 다만 계약해제가 상대방의 선언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매수인의 의무가 분리될 수

있다면 계약의 해제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만 적용되나, 계약이 전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각된다. 계약해제는 통지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이 경우 당해 통지는 상당한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물품대금 미지급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은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표 23> CESL과 CISG의 비교 : 매도인의 구제수단

CESL	CISG
제131조(매도인의 구제수단 일반) -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매도인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도 행사가능. 이행요구, 매도인 자신의 이행보류, 계약해제,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 - 매수인의 불이행 면책되는 경우 매도인은 이행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제외하고 전항의 구제수단 중 어느 것이라도 행사가능 - 매도인은 자신이 매수인의 불이행을 초래한 정도만큼 전항 구제수단 중 어느 것도 행사 불가능 - 양립되는 구제수단은 누적 가능 제132조(매수인의 이행요구) - 매도인은 대금지급 만기 시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매수인이 수행한 그 밖의 의무 이행 요구권리 있음	제61조(매도인의 구제권 총괄) -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시 매도인은 아래와 같이 권리행사가능. 제62조에서 제65조 권리행사, 제74조 내지 제77조 손해배상청구 - 매도인은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법정은 매수인에게 유예기간 허여 불허 제62조(매도인의 이행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인도 수령, 그 밖의 의무이행청구가능. 매도인은 이러한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해당 조문 없음)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이를 이행 받을 의향이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인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중대한 노력 또는 비용이 합리적인 대체거래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제133조(이행보류권)

1. 매수인의 이행과 동시 또는 그 이후 이행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할 때 까지 매도인은 이행보류
2. 매수인이 이행만기시점에 불이행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매도인은 그 이행을 보류할 수 있음. 그러나 매수인이 이행약소 또는 담보제공 시에는 이를 상실함
3. 보류될 수 있는 이행은 불이행의 정당화되는 정도만큼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 해당

제134조(중대한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계약해제 가능

제71조(이행정지)

- (1) 계약체결 후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행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이행 정지가능.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흠결, 계약이행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
- (2) 전항의 사유가 명백하기 전에 매도인은 물품을 발송한 경우 매수인이 물품취득에 관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못하도록 방지가능
- (3) 이행정지자는 물품발송여부와 상관없이 그 정지에 관한 통지를 보내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이행 계속

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 계약해제선언 가능.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이르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이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 수령의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 (2)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 해제 선언하지 않는 한 해제선언 권리 상실. 매수인의 지연된 이행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이행이 제공된 사실을 알기 전 또는,

	매수인의 지연된 이행 이외 모든 위반에 대하여는 다음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던 때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추가기간 내에 의무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제135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통지 이후의 지연에 대한 계약해제) 1. 매도인은 이행지연의 경우 해제가능. 그 지연이 중대하지 않지만 추가기간 지정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2. 기간은 매수인이 부당한 지체없이 반대하지 않는 한 상당기간으로 한다. 3. 매수인이 통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서에 자동해제를 정한 경우 통지없이 효력 발생	제63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1)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 지정 (2)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 중에 계약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구할 수 없다.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가능
제136조(예측되는 불이행에 대한 해제) 매도인은 만기되기 전에 매수인이 불이행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중대한 불이행의 경우 계약해제 가능	제72조(이행기전의 계약해제) (1) 계약이행기일 전에 어느 일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리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 계약해제 선언가능 (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계약 해제 선언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이행에 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통지 의무 (3) 전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의 의무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제137조(계약해제권의 범위) 1. 당해 계약에 의한 매수인 의무가 별도로 이행되거나 달리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해제가능 2. 불이행이 계약전반과 관련하여 중대	(해당 조문 없음)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매수인의 의무가 별도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불이행이 계약전반과 관련하여 중대한 경우 해제가능 제138조(통지) 해제는 매수인에게 통지로서 행사 제139조(계약해제권의 상실) 1. 이행이 늦게 제공되거나 계약과 불일치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권 상실. 다만 해제통지가 매도인이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임. 2. 매도인은 통지로 해제권리 상실 3. 매수인이 대금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중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해제권 보유	(해당 조문 없음) (해당 조문 없음)
---	-------------------------------------

제3절 위험의 이전

1. 일반규정

위험의 이전에 관한 일반규정에는 위험이전 효과와 계약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난 후 당해 계약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무는 해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손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40조). 매수이전의 효과에 대하여, 위험은 최초 합의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확실히 식별되기까지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1조).

2. 위험의 이전

위험의 이전에 대하여는 이전시기, 매수인 처분 하에 있는 경우, 물품이 운송중인 경우, 운송 중 매각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험의 이전시기는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이전한다(제143조). 매수인의 처분 하에 있는 물품의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는 때 위험은 인도되어야 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만약 매도인의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있는 경우 위험은 만기가 되고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는 시점에 이전한다(제144조). 운송계약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특정한 장소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인에게 그 장소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이전한다(제145조). 운송 중 매각된 물품에 대하여 위험은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계약체결시점에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그러한 분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취급된다(제146조; Blazquez, 2015).

3. CISG와의 비교

1) 일반규정

CESL에서는 위험이전의 효과에 대하여,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난 후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부터 해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손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된다(CISG, 제66조). 또한 작위 또는 부작위 심지어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계약상의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인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확인될 때까지 위험은 이전되지 않는다(CISG, 제67조).

<표 24> CESL과 CISG의 비교 : 위험의 이전(일반규정)

CESL	CISG
제140조(위험이전의 효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 후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해제 불가.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 제외 제141조(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 위험은 최초의 합의에 의하여 매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든 확인되고 난 후 위험 이전	제66조(위험이전의 효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 후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어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있음.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 제외 제67조(운송조항부 계약과 위험의 이전) (1) 운송계약이 있으나 특정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 만약 특정장소에서 이전하는 경우 그러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기까지는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음. (2) 위험은 물품이 화인이나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특정되기까지는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음.

2) 위험의 이전

CESL에서는 위험이전시점에 대하여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곧 위험은 매수인이 당해 물품을 인수 또는 그것을 상징하는 서류를 수령할 때 이전된다. 매수인 처분 하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당해 물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둔다는 것은 당해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만약 당해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그의 처분 하에 놓여있지 않다면, 매수인은 다른 장소를 알아야 하고, 이 경우 매수인이 인수를 유보할 자격이 있다면 위험은 이전되지 않는다(CISG, 제69조). 한편 만약 매매가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다면, 위험은 최초운송인에게 당해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CISG, 제67조). 만약 특정 장소가 합의된 경우 위험은 당해 물품이 그 장소에서 이전되는 때가 된다. 매도인이 당해 물품의 처분을 통제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컨대 위험은 특단의 상황을 제외하고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전한다(CISG, 제68조). 그러나 위험의 이전은 상황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운송계약을 구체화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당해 물품이 인도된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한다. 만약 매도인이 당해 물품이 손상되었거나 손실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경우 매도인은 그 위험을 부담한다.

<표 25> CESL과 CISG의 비교 : 위험의 이전

CESL	CISG
제143조(위험의 이전시기) 1. 위험은 물품을 인수하거나 그 물품 대신 서류를 인수하는 시점에 이전 2. 전항은 제144조 내지 제146조를 조건으로 함.	제69조(기타 경우의 위험) (1) 제67조 및 제6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은 물품수령 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처분 하에 있을 때 또한 매수인이 인도수령하지 않음으로서 계약위반 범하는 때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2) 매수인이 매도인 영업소 이외 장소

제144조(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있는 물품)

1.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아는 경우 위험은 인도되어져야 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
2. 매도인의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경우, 위험은 인도가 만기가 되고 매수인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점에 이전

제145조(물품의 운송)

1. 물품운송 포함한 매매계약에 적용
2.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인도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
3.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은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음
4. 매도인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보유하도록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은 위험이 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제146조(운송 중 매각된 물품)

1. 운송중인 물품관련 매매계약에 적용
2. 위험은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3. 계약체결시점에 매도인이 분실 손상되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

에서 물품수령 시,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또한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은 사실을 매수인이 아는 시점에 이전

- (3) 물품이 계약에 명확히 특정되기까지는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조문 없음)

제67조(운송조항부 계약과 위험의 이전)

- (1) 운송계약이 있으나 특정한 장소에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 만약 특정장소에서 이전하는 경우 그러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기까지는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함.
- (2) 위험은 물품이 화인이나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특정되기까지는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음.

제68조(운송중인 물품의 매매와 위험)

운송 중 매각되는 물품에 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 매수인에게 이전. 그러나 운송계약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매수인이 위험부담. 매도인이 이미 멸실 또는

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그 위험은 매도인에게 있음	손상된 것을 알고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위험에 속함. 제69조(기타 경우의 위험) (1) 제67조 및 제68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험은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고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위반을 범한 때는 매수인에게 이전 (2) 매수인이 매도인 영업소 이외에서 물품 수령하는 경우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그 장소에서 매수인 처분 하에 두었음을 매수인이 안 때 이전 (3) 계약이 특정되지 아니한 물품과 관련되는 경우 특정되기까지는 매수인의 처분 하에 있지 않음 제70조(매수인의 구제수단) 매도인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한 경우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이 그 위반을 이유로 매수인 이용 구제수단 침해하지 아니함.
---	--

제5장 계약의 종료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

제1절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1. 손해배상금 및 이자

손해배상 및 이자는 손해배상금, 지연이자에 대한 일반규정, 기업에 의한 지급지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제159조), ‘손해배상금의 일반적인 산정기준’(제160조),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제161조), ‘채권자에 의한 손실’(제162조), ‘손실의 경감’(제163조), ‘대체거래’(제164조), ‘시가’(제165조)로 구성되어 있다. 차례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금

CESL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으로 기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경우 손해배상이 회복될 수 있는 손실에는 미래의 손실도 포함하고 있다(제159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은 당해 의무가 정히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누릴 수 있는 위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상황에 가장 유사하게 누릴 수 있는 총금액으로 산정된다(제160조). 아울러 당해 손해배상금에는 채권자가 고통받은 손실 또는 박탈당한 이익도 포함된다. 또한 채무자는 계약체결시점에서 당해 불이행 결과로 예측가능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제161조), 채무자는 채권자가 불이행에 기여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정도만큼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62조). 나아가 제163조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합리적인 조치를 통하여 채권자가 손실경감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정도만큼 책임을 지지 않도록 손실경감에 대하여 명정하고 있다(제163조). 한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상당기간 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를 한 채권자는 계약해제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체거래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에 상당한 추가손실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164조). 아울러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이행을 위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당해 계약가격과 해제 시의 시가 차액에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165조; Magnus, 2014).

2) 이자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일반규정은 단일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66조). 지급이자란 만기시점에서 총액에 채권자 거주지가 유로화 회원국인 경우 또는 제3국에 있는 경우 해당 6월 초일에 적용되는 유럽중앙은행에서 정하는 한계 이자율에 2%를 추가한 율로 계산하며, 채권자 거주지 통화가 유로화가 아닌 경우 그 회원국의 국립중앙은행이 정하는 동등한 율에 2% 추가한 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추가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에 의한 지급지연에 대하여는 ‘이자율 및 증식’(제168조), ‘비용을 회복하기 위한 배상’(제169조),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관련 불공정 계약내용’(제170조), ‘강행성격’(제171조)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이 당해 계약에서 만기시의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자는 ‘이자’(제166조)규정에 따라 정한 율에 8%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기산점은 계약상의 지급일 또는 지급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며, 그러한 기산점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물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후로 하고 있다(제168조). 이자가 전조(제168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고정금액 40유로 또는 채권자의 총당비용보상금으로 계약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통화로 이에 상당한 금액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다(제169조). 한편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율 또는 비용충당을 위한 배상관련 계약내용은 그 내용이 불공정한 정도만큼 구속되지 않는다. 계약내용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신의 및 공정거래에 반하게 선량한 상관습에서 중대히 이탈되는 경우 불공정하며, 이러한 목적에서 제반규정(제167조 내지 제168조)에서 정한 시간, 지정된 기간을 보다 더 유리한 계약내용 또는 전조(제169조)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비용을 충당하는 배상금 규정 계약내용은 불공정한 것으로 취급된다(제170조). 아울러 거래당사자는 기업에 의한 지급지연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1조; Magnus, 2014).

2. 원상회복

CESL은 원상회복에 대하여,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제172조), ‘금전가치에 대한 지급’(제173조), ‘사용에 대한 지급 및 수령금액에 대한 이자’(제174조), ‘지출에 대한 배상’(제175조), ‘공평한 수정’(제176조) 등의 조문을 보유하고 있다. 차례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타방으로부터 수령한 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자연적·법적 과실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72조). 분할 또는 일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당사자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분할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청구되지 않는다. 또한 수령한 것에 대한 과실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수령자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173조). 반환이 가능하나 비용 또는 노력이 불합리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권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 경우 금전적 가치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지급기일의 가치이다. 대체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물의 금전적 가치 또는 대체물을 반환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한편 물품사용한 수령자가 사용에 대한 금전적 가치에 수령자가 취소 또는 해제사유를 유발하였거나, 수령자가 해제 또는 취소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물품의 성격·사용금액 그리고 해제 이외의 구제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을 수령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상대방에게 사용대가를 다름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제174조). 이에 부수하여 수령자가 지출을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혜택을 제공해 준 정도만큼 배상받을 권리를保有한다. 취소 또는 해제의 사유를 알 것으로 기대하는 수령자는 가치상실 또는 감소되는 물품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한 경우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제175조). 또한 반환 또는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취소 또는 해제사유를 유발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하여 중대하게 불공평한 정도만큼 수정될 수 있다(제176조; Rodriguez, 2015).

3. CISG와의 비교

1) 손해배상 및 이자

손해배상에 대한 CESL 규정(제159조)의 핵심은, 채권자는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를 예외로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손해배상금이 회복될 수 있는 손실에는 채무자가 발생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이익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CISG에서는 만약 위반한 자가 당해 상황 하에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통상적인 손실과 이익손실만이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4조).⁷⁸⁾ 이 경우 인적상해는 배제된다(제5조).⁷⁹⁾

CESL 본조(제159조)의 표현상 손해배상금 그 자체는 이익의 손실과 관련되지 않으나 불이행으로 초래된 여하한의 손해는 위반한 자에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밖에 없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제161조)을 참고할 때, 불이행 면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당해 규정을 그들의 계약내용에 취하기 전에 특단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업이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는 물품이 초래하는 여하한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에 대한 규정(제160조)에 비추어, 손해배상금의 목적은 만약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이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그 상황에 두는 것이다. 그러한 손해배상금은 채권자가 고통을 받은 손실과 채권자가 박탈당한 이익을 포함한다. 여기서 손실의 예측가능성은 여하히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윤의 상실이 발생되리라는 예측이 조건으로 결부된다(제159조). 한편 CISG와 달리 CESL은 채무자는 채권자 자신이 입힌 손해배

78) CISG, 제74조(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 :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손해액은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79) CISG, 제5조(사망 등에 대한 책임의 배제) : “본 협약은 물품에 의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금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제162조). 손실의 경감에 대한 CESL의 규정(제163조)은 CISG의 규정(제77조)과 유사하다.⁸⁰⁾ 곧 CESL은 채무자는 손실경감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CISG의 경우에는 이것은 판례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채권자가 대체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외의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종료된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164조). 당해 규정 또한 CISG와 다름이 없다(제75조).⁸¹⁾

시가에 관한 규정(제165조)으로서, 대체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거래에 대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가격과 계약종료 시 시가와 차액뿐만 아니라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CISG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정(제76조)을 보유하고 있으나,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한 후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의 인수시점의 시가가 해제시점의 시가대신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추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세한 가격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내용을 이에 부가하고 있다.⁸²⁾

지연이자에 대하여(제166조), 일방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타방은 통지 없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상당하는 이자율은 앞서 본 바와 같

80) CISG, 제77조(손해경감의 의무) :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81) CISG, 제75조(대체거래와 손해액) :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품을 매수하였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외에 제74조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82) CISG, 제76조(시가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 “(1) 계약이 해제되고, 물품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제75조에 따라 구매 또는 재매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계약해제 시의 시가와 차액 및 그 밖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시의 시가에 갈음하여 물품수령 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2) 전항의 적용에 있어, 시가는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 그 장소에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운송비용의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가격을 말한다.”

이 기금연맹 회원국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에 따라,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별 국립은행의 이자율에 2%를 가산한 율로써 산정된다. 제168조에서는 대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율 규정(제168조)은 이에 부수한다. 또한 채권자는 장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에 관해서 CISG에서고 명문의 규정(제78조)을 보유하고 있는데,⁸³⁾ 다만 본조에서는 상대방이 지급에 대하여 지연한다면 일방은 이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단순히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한편 CISG는 구입가격의 상황에 대하여, 이자는 대금이 지급된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4조).⁸⁴⁾

기업에 의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발생에 대하여 CESL은 기업 간 구입가격에 대한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를 다루고 있고 이자지급의 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제168조). 또한 지연지급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정하고 있고, 그것은 40유로 또는 계약가격의 화폐로 이와 동등한 가치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를 초과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자격이 있다(제169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관련 불공정 계약내용에 관한 규정(제170조)은 이에 부수한다. 이상의 규정은 강행적이며, 이들 규정은 변경할 수 없다(제171조).

83) CISG, 제78조(연체금액의 이자) : “어느 일방이 대금이나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84) CISG, 제84조(이익의 반환) : “(1)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a)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b)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표 26> CESL과 CISG의 비교 : 손해배상금 및 이자

CESL	CISG
제159조(손해배상청구권) - 채권자는 채무자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는 제외 - 손해배상이 회복될 수 있는 손실에는 채무자가 발생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의 손실도 포함.	제74조(손해액산정의 일반원칙)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익 상실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함. 손해액은 계약체결 시 계약위반의 결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
제160조(손해배상금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일반적인 측정은 당해 의무가 정히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누릴 수 있는 위치 또는 불가능한 경우 가장 유사한 경우 누릴 수 있는 총금액임. 손해배상금에는 채권자가 고통받은 손실 및 박탈이익 포함.	(해당조문 없음)
제161조(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 채무자는 계약체결시점에 불이행결과로 예측가능한 손실에 책임	(해당조문 없음)
제162조(채권자에 의한 손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불이행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정도만큼 채권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해당조문 없음)
제163조(손실의 경감) - 채무자는 채권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실 경감한 만큼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채권자는 손실경감 시도 중 합리적인 발생비용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	제77조(손해경감의무) 계약위반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이익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당사자가 그렇게 조치하지 않아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만큼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가능

제164조(대체거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고 상당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한 채권자는 손해배상권리를 가지며, 해제계약에 의한 지급금액과 대체거래 시 지급받을 금액차이에 추가손실 손해배상권리 보유

제165조(시가)

채권자가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이행을 위한 시가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시 계약가격과 해제 시 시가차액에 대한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가능

제166조(지연이자)

1. 총대금에 대한 지급지연 시 채권자는 만기시점에서의 이자율로 받을 권리가 있음
2. 지급지연 이자율은 유럽중앙은행금리 한계이자율에 2% 추가 또는 유로통화가 아니거나 제3국통화인 경우 그 국가의 국립중앙은행이 정하는 동등율에 2% 추가
3. 채권자는 추가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수령 가능

제168조(이자율 및 증식)

1. 기업이 제88조에 의한 면책없이 대금지급 지연 시 이자는 제5항에 준함
2. 제5항에서 정한 율에 대한 이자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 또는 지급기간의 종료일 다음부터 기산하기 시작. 채무자가 송장을 받거나 지급을 위한 이와 동등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 이상에서 정한 일자가 빠르거나 불확실한 경우 수령일로 30일 후

제75조(대체거래와 손해액)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당기간 내에 대체품을 구매하였거나 또는 매도인이 재매각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당사자는 계약금액과 대체거래대금과 차액에 제74조에 따른 회복 가능한 그 밖의 모든 손해액을 회복할 수 있음

제76조(시가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 (1)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물품에 시가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당사자는 제75조에 따라 구매 또는 재매각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대금과 계약해제 시의 시가와 차액, 제74조에 따라 회복 가능한 그 밖의 모든 손해액 회복 가능. 손해배상청구 당사자가 물품수령 후 계약해제 한 경우 물품수령 시의 시가 적용
- (2) 전항의 적용에서, 시가라 함은 물품 인도장소에서 지배적인 가격 또는 그 장소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운송비용의 차이를 적절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응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해당조문 없음)

3. 계약일치여부가 수락 또는 검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전항에서 정한 30일기간은 승낙일 또는 검사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개시. 전항에 결정된 지급기한은 60일 초과 불가 4.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율은 채권자 거주지의 유로통화 사용국이거나 제3국에 있는 경우 유럽중앙은행 또는 해당 회원국이 국립중앙은행에서 정하는 동등한 율에 8% 추가한 율 5. 채권자가 추가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수령가능	
제169조(비용복구하기 위한 배상) 1. 이자가 제168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채권자는 고정금액 40유로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2. 채권자가 전항에서 정한 고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과 채무자의 지급지연에 따른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음	(해당조문 없음)
제170조(지연이자 관련 불공정 계약내용) 1. 지급일, 지급기간 또는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율 또는 비용충당을 위한 배상 관련 계약내용이 불공정한 만큼 구속받지 않는다. 2. 전항의 목적상 제168조 및 제169조상의 금액보다 낮은 비용을 충당하는 계약내용은 불공정한 것으로 취급 3.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배제한 계약 내용 또는 비용충당 보상은 불공정.	(해당조문 없음)
제171조(강행성격) 거래당사자는 본절의 적용배제, 효과 등을 변경을 할 수 없음.	(해당조문 없음)

2) 원상회복

계약해제 또는 종료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하여 CESL에서는 계약이 일방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타방으로부터 받은 것과 그것으로 비롯된 자연적 또는 법적 과실을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72조). 다만 이행이 분할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방의 이행 일부가 대응하는 이행으로 전보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의 반환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계약의 성격이 부분이행이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각한다. 본조의 규정에 비추어 당해 계약은 ‘해제된’(terminated) 계약이 아니라 ‘취소된’(avoided) 계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CISG상(제81조)의 해제는, CESL상 해제를 의미하며, 동시에 필요하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원상회복은 일반적으로 현물로 이루어진다. 계약해제를 하려는 자는 당해 물품을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변화지 않은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82조).⁸⁵⁾

금전적 가치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반환될 수 없다면, 그것의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불합리한 노력이나 경비가 수령자에게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이 상대방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이다(제173조). CISG는 변경되지 않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종료를 허용하고 있다. 물품의 금전적 가치는 그 지급이 이루어질 때, 만약 당해 물품이 그 날짜까지

85) CISG, 제81조(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등) : “(1) 계약의 해제는 정당한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모두를 계약상 의무로부터 해방시킨다. 해제는 계약상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이나 또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계약 하에서 자신이 이미 제공 또는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2조(물품 반환의 불가능) :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이유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b) 제38조에 규정된 검사로 인하여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c)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이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 의하여 이미 통상적인 상거래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소비 또는 변형된 경우”

파손 또는 손상없이 수령자가 보관하였다면, 그 날짜에 물품이 가지게 되는 가치가 된다. 손상이 당해 물품을 보관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고려요소는 당해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사용에 대한 지급 및 수령한 대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 물품의 수령자는, 만약 자신이 계약의 종료를 선언하게끔 하였고 또는 그 사유를 알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제174조). 물품대금의 수령자는 그가 계약종료를 하게 만들었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반환 시 그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제166조). 한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정직한 수령자는 당해 비용을 다름없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악의의 수령자는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령자가 상대방에게 조언을 요청할 기회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제175조). 나아가 원상회복 관련 모든 규정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될 수 있다(제176조).

<표 27> CESL과 CISG의 비교 : 원상회복

CESL	CISG
제172조(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1. 각 당사자는 일방의 취소 또는 해제 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 반환의무 2. 반환 시 받은 것으로부터 나온 자연적·법적 과실 포함 3. 분할 또는 일부 이행을 위한 계약해제 시, 받은 것에 대한 반환은 양측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 또는 이행된 것에 대한 대금이 지불될 수 있는 경우 분할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요구하지 않는다.	제81조(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등) (1) 계약해제는 정당한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모두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해방. 해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계약조항이나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규율하는 기타 조항에 영향 미치지 않음.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관하여 그 계약 하에서 자신이 이미 제공 또는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청구가능. 쌍방이 모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동시 반환

제173조(금전가치에 대한 지급)

1. 수령한 것과 관련된 경우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금전적 가치로 지급. 반환이 가능하나 불합리한 노력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자는 금전적 가치지급 선택가능.
2. 물품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의 가치이다.
5. 수령자가 취소 또는 해제사유를 알고 있는 경우 교환으로 금전 또는 물건 형태로 대체물 취득 시 상대방은 대체물 청구 또는 대체물의 금전적 가치 중 하나 선택가능
6. 대금지급에 대한 교환은 공급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는 반환대상 아님

(해당조문 없음)

제174조(사용에 대한 지급 또는 수령한 금액에 대한 이자)

(해당조문 없음)

1. 물품수령자는 다음의 경우 사용에 대한 금전가치를 상대방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수령자가 취소 또는 해제사유 유발 시, 취소 또는 해제기간 개시 전 수령자가 그에 대한 사유를 알고 있는 경우, 물품의 성격, 사용성격 및 금액 그리고 해제 이외의 구제수단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에 자유로운 이용수령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2. 금전반환의무가 있는 수령자는 다음의 경우 제166조의 이자율로 지급. 상대방이 사용을 위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수령자가 사기·강박·부당한 착취로 계약취소 이유를 제공한 경우
3. 수령한 물품사용에 대하여 또는 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

제175조(지출에 대한 배상)

(해당조문 없음)

1. 수령자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지출부담한 경우 수령자는 지출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준 정도 만큼 배상받을 권리가 있음. 2. 취소 또는 해제사유를 알고 있는 수령자는 가치상실 또는 감소되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출에 대한 보상권리	
제176조(공평한 수정) 본장에 의하여 반환 또는 지급할 의무는 그 당사자가 취소 또는 해제사유를 유발하지 않았거나 인식이 결여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중대하게 불공평한 만큼 수정가능	(해당조문 없음)

제2절 소멸시효

1. 일반규정

CESL에서는 시효대상 권리에 대한 일반규정에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집행할 권리, 그러한 권리에 부수적인 여하한의 권리를 시효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제178조).

2. 법적기준과 효과

CESL상 시효기간은 단기는 2년, 장기는 10년이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권리는 30년으로 정하고 있다(제179조). 또한 개시시점으로 단기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결과로부터 사실을 아는 시간으로 하며, 장기는 채권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부터 개시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권리 발생시킨 행위시점으로 명정하고 있다(제180조). 제181조에서는 시효기간 개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법적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중지되며, 중지는 그 사건이 처분 또는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며, 이는 중재절차, 조정절차, 당사자 간 구속력 결정, 제3자에게 의뢰하는 절차 등에 적용된다(제181조). 또한 거래 당사자가 권리에 대하여 또는 권리에 관한 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협상하는 경우 마지막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또는 상대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이후부터 시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82조).

한편 무능력자가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자가 갖고 있는 시효기간은 무능력이 종료되거나 또는 대리인이 임명된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료되지 않는다(제183조). 나아가 제184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부 지급·이자지급·담보제공·상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를 승인한 경우 새로운 단기 시효가 개시된다(제184조). 제185조에서는 시효기간 종료 후 채무자가 문제의 의무이행거절 권리가 있고 채권자는 당해 이행을 보류한 것을 제

외하고 불이행에 대한 모든 구제수단 행사를 상실한다(제185조). 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단기의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 이내, 장기는 최소 1년 이상 최고 30년이 된다. 이 경우 당해 기한은 당사자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제186조; Velencoso, 2015).

3. CISG와의 비교

1) 일반규정

CISG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멸시효는 ‘국제물품매매에서의 기간의 제한에 관한 UN 협약’(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74)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하여 CESL에서는 소멸시효대상 권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제178조). 곧 이행을 집행할 권리와 그에 대한 부수적인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취급된다(Magnus, 2012).

<표 28> CESL과 CISG의 비교 : 소멸시효(일반규정)

CESL	CISG
제178조(시효대상의 권리) 의무이행을 집행할 권리 그러한 권리에 부수적 여하한의 권리는 시효대상이 됨	(해당조문 없음) [‘국제물품매매에서 기간제한에 관한 UN협약’(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74)의 적용]

2) 법적 기준의 효과

CESL상 소멸시효 기간은 단기는 2년, 장기는 10년 또는 인적 상해의 경우 손해배상권리는 30년이다(제179조). 당해 조문에 비추어 인적 상해를 유발하는 결함이 있는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 없이 30년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은 엄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CESL 소멸시효 개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제180조), 단기는 당사자의 인지 또는 인지할 수 있었을 때의 시점에서 기산되며, 이것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다. 장기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 또는 손해배상권의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는 행위의 시점부터 계산하므로 절대적인 기간을 생성한다. 지속적인 의무를 반복하여 침해하는 것은 별도의 권리를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기업들은 당해 물품이 인도되고 난 후 2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할 의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한 후 계약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를 실제 인수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제122조).

또한 사법적 및 그 밖의 절차의 경우 중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2가지 기간계산은 당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그 사건이 달리 처분될 때까지 중지된다(제181조). 그리고 그 절차가 쟁점에 대한 결정없이 소멸시효기간 마지막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당해 소멸시효기간은 절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종료되지 않는다. 아울러 당해 절차에는 관할 법원의 절차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소의 절차가 있으며, 권리에 관련된 결정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지급 불능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시되는 그 밖의 모든 절차 또한 이에 부수한다.

한편 거래당사자가 협상을 개시한다면, 소멸시효는 마지막 의사표시 또는 명백한 계약종료 후 1년 전까지 종료되지 않는다(제182조).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종료 시에 진행 중인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기업은 협상을 삼가야 하고 또한 이를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의사표시를 삼가야 한다. 결국 거래당사자는 이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것을 협상과정 중에 중지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일 수 있다. 무능력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제183조).

다른 한편 ‘인지’(acknowledgement)에 의한 갱신에 대하여, 만약 채무자가 일부지급·이자지급·담보제공·상계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권리를 인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개시된다(제185조). 이 경우 본조 상 채무를 인정하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지를 요구하는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당해 조문으로부터 유추할 때, 그러한 조치가 채무자에 의하여 비롯되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이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의 및 공정 거래는 여하히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 만약 상대방이 그 조치를 신뢰할 수 없다면, 당해 인지는 의심스러울 수 있다.

CESL상 소멸시효기간이 종료된 후에 채무자는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자신의 이행을 보류한 것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제185조). 소멸시효기간 종료 후에 수행된 이행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은 자연채무로 취급되며, 따라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단기는 1년과 10년 사이에 정할 수 있으며, 장기는 1년과 30년 사이에 정할 수 있다(제186조).

<표 29> CESL과 CISG의 비교 : 소멸시효(법적 기준과 효과)

CESL	CISG
제179조(시효기간) 단기는 2년, 장기는 10년,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권리의 경우 30년.	(이하 해당조문 없음) [‘국제물품매매에서 기간제한에 관한 UN협약’(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74)의 적용]
제180조(개시) 1. 시효의 단기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결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으로부터 개시됨 2. 시효의 장기는 채무자가 권리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부터 개시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그 권리를 발생시킨 행위시점부터 개시 3. 채무자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계속적인 의무 하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 가진 것으로 취급	
제181조(사법적 및 그 밖의 절차 중지)	

1. 시효기간 개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법적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 중지
2. 중지는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그 사건이 달리 처분될 때까지 계속. 쟁점 결정없이 6개월 이내 종결되는 경우 시효기간은 그 절차가 종결된 시점 이후 6월경과 후 만료됨
3. 상기 조항을 조정하여 중재절차, 조정절차, 당사자가 이슈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뢰하는 절차에 그리고 당해 권리 결정할 목적으로 또는 지급불능을 피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절차에 적용
4. 조정은 자발적으로 조정자의 지원을 받아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당사자, 법원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다. 조정은 양당사자의 합의로 종결되거나 조정가나 당사자중 한쪽의 선언으로 종결

제182조(협상의 경우 시효의 연기)

거래당사자가 권리 또는 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협상하는 경우 마지막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또는 일방이 타방에게 그 협상을 중지한다고 통보한 이후부터 어느 시효기간도 종료되지 아니함.

제183조(무능력의 경우 시효의 연장)

무능력자가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자가 갖고 있는 시효기간은 무능력이 종료되거나 대리인이 임명된 이후부터 1년 경과 후 종료

제184조(승인에 의한 갱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권리를 일부 지급·이자지급·담보제공·상계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승인하는 경우 새로운 단기의 시효 개시

제185조(시효의 효과)

1. 시효관련 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채무자는 문제의 의무이행 거절 권리가 있고 채권자는 이행을 보류하는 것을 제외하고 불이행에 대한 모든 구제수단 행사 상실
2. 문제의 의무 이행에서 채무자가 무엇을 지급하던 간에 그 시효기간은 이행이 수행된 순간에 종료되므로 채 청구 불가
3. 이자지급권 및 부수적인 성격의 다른 권리에 대한 시효기간은 원 권리에 대한 기간보다 늦게 종료되지 않음.

제186조(시효에 대한 합의)

1.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가능. 시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가능
2. 단기는 1년 이내 단축할 수 없고 10년 초과 연장불가
2. 장기는 1년 이내 단축할 수 없고, 30년 초과 연장불가
4. 거래당사자는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없음

제6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범위 내에서 CESL의 구성체계에 따라 주요 골자를 요약·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CESL의 의의에 관하여, CESL은 EU 역내 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각 회원국이 채택하는 경우 특별법의 법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그 결과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요컨대 CESL은 무역계약에 있어 법적용상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용된다. CESL은 당사자의 의무 및 불이행의 법적 기준은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다. 요컨대 이들 기준은 그 구성면에서 대칭적으로 편제하고 있다.

첫째, 계약의 내용에 대한 CESL의 법적 기준에 대하여, CESL은 의사표시하자, 계약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 표준약관의 삽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소유권 또는 담보권의 이전에 대한 법률효과 및 계약의 유효성 등이다. 또한 서비스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계약에 대한 것 또한 이에 후보하고 있다. 나아가 CESL은 서식의 교전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응집된 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계약의 성립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에 관하여, CESL은 상기 법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다. 요컨대 CESL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당해 목적과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나아가 CESL의 범위 내에 있지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CESL의 적용에 대하여는 해석, 합리성, 불요식,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 계약의 해제, 혼합목적의 계약, 통지, 기간의 계산, 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동 등이다.

셋째, 계약의 성립 전 단계에서의 법적 기준에 관하여, CESL은 B2B 간 제공해야 할 정보와 관련, 계약체결 전 공급자가 당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의 및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원거리 계약에 대하여 CESL은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자적 방법의 계약체결을 용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은 계약내용의 구속력 확보를 위해 또는 그 밖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 B2B거래에 대하여 CESL은 계약체결 전에 또는 체결 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은 CESL상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약 부정확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당해 정보제공 의무위반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고 당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신뢰한 상대방에게 구제권을 용인하고 있다.

넷째, 계약의 성립단계에서의 법적 기준에 관하여, CESL은 계약체결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합의, 당해 합의에 기한 법적 구속력, 충분한 계약의 내용과 확실성을 요건에 두고 있다. CESL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기하여, 착오·사기·강박·부당한 착취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루고 있으며, 취소통지, 취소효과, 추인, 손해배상금, 구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한과 구제수단의 선택 등을 추보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으로서 계약내용 해석의 원칙, 계약내용 및 그 효력, 불공정한 계약내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섯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법적 기준에 관하여, CESL상 매도인의 의무는 일반규정, 인도,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우선 일반규정은 매도인의 의무 총괄, 제3자에게 이행을 위임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이행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일반규정, 매도인에 의한 치유, 이행요구, 매수인 의무이행의 보류, 해제, 대금경감, B2B 계약시 검사 및 통지요건 등이다. 우선 일반규정으로는, 매수인의 구제수단 일반, 금전의 대가로 공급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구제수단 제한 등이다. 한편 매수인의 의무는 일반규정, 대금의 지급의무, 수령 등이다. 일반규정에서 매수인 의무의 총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는 물품대금지급과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수령과 관련 서류를 인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도인의 구제수단은 일반규정, 이행요구, 매도인의 의무이행 보류, 해제 등이다.

여섯째, 위험의 이전에 관한 법적 기준에 관하여, 위험의 이전에 관한 일반규정에는 위험이전 효과와 계약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인 등이다. 또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난 후 당해 계약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해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손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위험은 최초 합의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확실히 식별되기까지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기준에 관하여, 손해배상 및 이자는 손해배상금, 지연이자에 대한 일반규정, 기업에 의한 지급지연 등이다.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금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 채권자에 의한 손실, 손실의 경감, 대체거래, 시가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금전가치에 대한 지급, 사용에 대한 지급 및 수령금액에 대한 이자, 지출에 대한 배상, 공평한 수정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시효대상 권리에 대한 일반규정에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집행할 권리, 그러한 권리에 부수적인 여하한의 권리를 시효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CESL상 시효기간은 단기는 2년, 장기는 10년이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권리는 30년이다. 또한 개시시점으로 단기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결과로부터 사실을 아는 시간으로 하며, 장기는 채권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부터 개시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권리 발생시킨 행위시점으로 명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심종석 (20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 적용」, 삼영사. 45-674.
- 김진우 (2012). “공동참조기준초안(DCFR)에 따른 계약내용의 통제”, 「법학논고」 제3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9-250.
- 박희호 (2014). “유럽공동매매법(CESL)상의 소비자 철회권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66호, 한국민사법학회. 365-403.
- 백경일 (2013). “유럽공동매매법안(CESL)에서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433-476.
- 성준호 (2014). “유럽공동매매법의 불공정한 계약조항”, 「민사법학」 제66호, 한국민사법학회. 405-446.
- 신동현 (2014). “유럽공동매매법(CESL)안에서의 약관의 충돌 문제”, 「민사법학」 제66호, 한국민사법학회. 447-473.
- 장병일 (2014). “유럽공동매매법 제안(CESL(p))과 우리 민법”, 「법학연구」 제54집, 한국법학회. 215-239.
- Ackermann, T. & Franck, J. U. (2012). Defects in consent: an assessment of chapter five of the proposal for a common European sales law. *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8(2), 113-138.
- Aksoy, H. C. (2013). Status Quo Bias, CISG and the Futur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European Business Law Review*, 24(4). 459-465.
- Blázquez, F. O. (2015). Passing of Risk. In *European Perspectives o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183-205.
- Borchardt, K. D. (2010). The ABC of European Union Law, European Union. 87-97.
- Clive, E. (2015). Proposal for a Common European Sales Law withdrawn. *European Private Law News*, 1-12.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1). Communication from the

-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European Contract Law, *COM 398 final*. 1-11. 19.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 More coherent European Contract Law, an Action Plan. *COM 68 final*. 2.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revision of the acquis: the way forward, *COM 651 final*. 2.
- DiMatteo, L. A. (2013). CISG as Basis of Comprehensive International Sales Law. *Vill. L. Rev.*, 58. 691.
- DiMatteo, L. A. (2012). Common European Sales Law: A critique of its rationales, functions, and unanswered ques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11(3). 222-240.
- European Commission. (2010). *A European contract law for consumers and business: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study carried out by the Expert Group on European contract law for stake holders' and legal practitioners' feedback*. 1-8.
- European Commission. (2015). Annex to th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mission Work Programme*, 12.
- European Commission. (2010). Commission expert Group on a Common Frame of Reference in European Contract law, *Synthesis of the third meeting*. 4.
- European Commission. (2010). Expert Group on a Common Frame of Preference in European Contract Law, *Synthesis of the Second Meeting*. 3.
- European Commission. (201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8-17.
- European Commission. (2011). *The 'Sounding Board' of key stakeholder experts*,

- Annex III to A European contract law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study carried out by the Expert Group on European contract law for stake holders' and legal practitioners' feedback.* 13.
- European Council. (1999). *Tampere European Council 15 and 16 October 1999; Presidency Conclusions.* 6.
- European Parliament. (2014).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26 February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first reading.*
- Gifis, S. H. (1996). *Law Dictionary*,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519.
- Hesselink, M. W. (2012). How to opt into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Brief comments on the Commission's proposal for a regulation.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1. 195-212.
- Hondius, E. (2013). Common European Sales Law: If It Does Not Help, It Won't Harm Either.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21(1). 1-12.
- Illescas, O. R. & Viscasillas, P. (2012). The scope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B2B, goods,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11(3), 241-258.
- Koitz, Mag. Rainald. (2012) The Proposed Regulation on a Common Sales Law(CESL) as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n Transnational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Lund University*, 1-90.
- Kornet, N. (2012).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and the CISG-Complicating or Simplifying the Legal Environment?. *Maastricht European Private Law Institute Working Paper*, 4.
- Kruisinga, S. A. (2013). Incorporation of standard terms according to the CISG and the CESL: Will these Competing Instruments Enhance Legal Certainty in Cross-Border Sales Transactions?. *European Business Law Review*,

24(3), 341-362.

- Kuipers, J. J. (2008). New Provision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Treaty of Lisbon, *Maastricht J. Eur. & Comp. L.*, 15, 109.
- Lando, O. (2011). Comments and questions relating to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19(6), 717-728.
- Loos, M. (2012).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in the proposal for a common European sales law. *Amsterdam Law School Research Paper*, (2012-65), 776-796.
- Magnus, U. (2012).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in the CISG and in the CESL.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11(3), 266-280.
- Magnus, U. (2012). CISG and CESL. *Liber Amicorum Ole Lando*, 225-255.
- Magnus, U. (2014). Damages Rules i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and in the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Int'l Trade & Bus. L. Rev.*, 17, 224.
- Micklitz, H. W. (2012). The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Too broad or not Broad enough?. *Florence Deapartment of Law*, 3.
- Nicole K. (2012). The CESL and the CISG, complicating or simplifying the legal environment?, *Maasstricht University Maastricht European private Law*. 10, 16-18, 20.
- Piers, M. (2012). Pre-contractual information duties and remedies in the CESL. *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4, 867-897.
- Piltz, B. (2012).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and more particular its Provisions on Remedies. *Internationales Handelsrecht*, 12(4), 133-136.
- Rainald, M. K. (2012). *The Proposed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as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n Transnational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Lund

University, 2012.

- Rodríguez, A. S. (2015). Restitution. In European Perspectives o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63-286
- Sánchez, S. A. (2013). Common European Sales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Some Critical Remarks. *Journa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9(2). 191-217.
- Samoy, I., VU, T. D., & JANSEN, S. (2011). 'Don't Find Fault, Find a Remedy'.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855, 872.
- Shkira, E. (2012). *Comparative Study on CISG and CESL Obligations and Remedies of Seller and Buyer in Business to Business Transactions*. Available at SSRN 2257241.
- Twigg-Flesner, C. (2012). Dealing with informational asymmetries under the proposed CESL and CISG.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11(3), 281-299.
- Velencoso, L. M. M., & O'Flynn, A. (2015). The Rules on Prescription. In European Perspectives o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87-303.
- Wagner, G. (2012). Termination and Cure Under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Avoiding Pitfalls in Contract Remedies. *Available at SSRN 2083049*.
- Whittaker, S. (2012). The proposed 'Common European Sales Law': Legal framework and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Modern Law Review*, 75(4), 578-605.
- Wymenga, P. *et al.* (2012). EU SMEs in 2012: At the crossroads. Annual report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EU, 2011/12.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 Zoll, F. (2012). The binding power of the contract: Protection of performance in the system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11(3), 259-265.

「en.euabc.com/word/2077」

「ec.europa.eu/justice/contract」

「ec.europa.eu/justice/contract/cesl/background/index_en.htm」

「ec.europa.eu/justice/newsroom/contract/opinion/150609_en.htm」

「ec.europa.eu/legislation/index_en.htm」

「eur-lex.europa.eu/homepage.html」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6L0123&from=EN」

「www.allenoverly.com/SiteCollectionDocuments/CESL.pdf」 .

「www.cisg.law.pace.edu/cisg/countries」

「www.epln.law.ed.ac.uk/2015/01/07/proposal-for-a-commerce-european-sales-law-withdrawn」

「www.ois.go.kr」

「www.unilex.info」

A Comparative Study on Contractual Liabilities Under Common European Sales Law

Shim, Gab-Young

Department of Foreign Trade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 Chong-Seok, Shim (Ph.D., J.S.D.)

(Abstract)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between EU Member States in international trade within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have caused the parties of a contract to bear considerable transaction costs as well as to encounter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For example, due to complicated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cess and procedure, traders have to pay unnecessary costs which are not expected or anticipated. As a result, traders are dissuaded from entering international trade and limit their operation to domestic trade, while consumers have the loss of the utility of material and anticipated profit coming from the benefit of diversified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by international trade. It is clear that absence of a single uniform se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rules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s or conflicts between international private law has greatly contributed to creating relative skepticism or obstacles against the EU internal economic and social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European Commission drafted and proposed Common European Sales Law(p) to the European Parliament for the realization of a uniform se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rules within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Since its purpose is for free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for the sale of good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s and for related services, it was proposed to enable EU Member States to adopt or supplement as their substantive law according to their choice. This study is for providing the starting clue in improving the clear and legal understanding of the CESL for traders and practitioners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CISG which has its solid status as the most successful leading legisla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abling Korean companies, which have established or want to establish their business place in EU Member States, to cope with complex and diversified legal issues which are foreseeabl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their EU Member States business partners, and furthermore to respond to comprehensive legal actions in discerning or improving the significance related to international private law rules. Bearing the above mentioned matters, this study is focused on business-to-business(B2B) international trade by excluding business to customer(B2C) international trade from the scope of the CESL, and infers the legal base on an individual issue in question by dividing into three main parts: formation of contract, performance of contract, and revocation of contract. As a consequence, this study is for getting the clear understanding on contractual liabilities in terms of practical application and also juridical benefits between the parties to a contrac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ISG which has been standing firmly as the international uniform commercial contract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in its scope are established separately and summarized according to the sequence of the composition of the CESL as follows:

For the meaning of the CESL, it does not require amendments to the

pre-existing international private law of the EU but is created in order to reserve the legal status as the special law when the EU Member States adopt it. As a result, it greatly contributes to promoting the harmo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of the Member States. The CESL is applied voluntarily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for the application of CESL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e legal bases of obligation and non-performance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within the scope of this study are very concrete and wide-ranged. In other words, these bases are organized symmetrically according to the sequence of the composition of the CESL.

First, regarding the legal bases of the contents of a contract, they are composed of defects in consent, gross disparity or unfairness of contract, legal uncertainty on insertion of an element of the trader'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legal effect on transfer of ownership or security right, and validity of contract.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a related service contract is also added to the CESL together with a sales contract. Furthermore, it covers the provisions on battle of forms and therefore, has comprehensive and condensed contract rules.

Second, the legal bases on formation of contract are very concrete and comprehensive as mentioned above. In other words, the rules of the CESL are interpreted autonomously in accordance with the well-established principles on the interpretation of Union legislation and its purpose. Furthermore,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CESL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but it should be resolved only by interpretation of its rules without recourse to any other law. For the application of the CESL, it sets out interpretation, reasonableness, no form required, not individually negotiated contract terms, revocation of a contract, mixed-purpose contracts, notice, and computation of time, and unilateral statements or conduct.

Third, regarding the legal bases on the pre-contractual formation stage, if a supplier does not provide the information in question before the formation of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provision of related

services in relation to pre-contractual information to be given by a trader dealing with another trade, the CESL treats such case as violation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Furthermore, regarding distance contracts, the CESL accepts the formation of contract by electronic means in cases where electronic mail or other individual communication is not designated. A party who should provide information to the other party before or at the time a contract is formed, has a duty to take reasonable care to ensure that information supplied is delivered correctly in order to secure making a binding contract and also to observe the obligations mentioned otherwise in the CESL. Under B2B international trade, the CESL sets out that a party who supplies information before or at the time of the contract is formed, has a duty to take a reasonable care. If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has been supplied to the other party in breach of the duty, the CESL allows that party to refer to the remedies, who reasonably relies on that information in making a contract with the party who supplied it.

Fourth, as the legal bases on formation of contract stage, the CESL stat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an contract, legal binding by the agreement, sufficient content and certainty to be given legal effect as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lso, in the case of defects in consent, it deals with a party's right to revoke a contract if the other party had induced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in mistake, by fraud or threats or unfair exploitation. In addition, it covers notice of revocation, effects of revocation, confirmation, damages for loss, exclusion or restriction of remedies, and choice of remedies, Furthermore, as the interpretation base, it covers general rules on interpretation of contracts, contents and effects, and unfair contract terms.

Fifth, as the legal bases for the performance of contract under the CESL, the seller's obligations are divided into general provisions, delivery, and conformity of the goods and digital content. In the case of general provisions, they are subdivided into main obligation of the seller, and performance of a third party, which may be entrusted by the seller.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y the seller, the buyer has the right to resort to the remedies. The buyer's remedies contain general provisions, cure by the seller, requiring performance, withholding performance of buyer's obligations, revocation, price reduction, and requirements of examination and notification in a contract between traders. In the case of general provisions, they are subdivided into overview of buyer's remedies and limitation of remedies for digital content not supplied in exchange for a price. On the other hand, the buyer's obligations under the CESL are divided into general provisions, payment of the price, and taking delivery. General provisions describe main obligations of the buyer and clarify that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take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igital content and take over the relevant documents thereon.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y the buyer, the seller has the right to resort to the remedies. For the seller's remedies, they are divided into general provisions, requiring performance, withholding performance of seller's obligations, and revocation.

Sixth, regarding the legal bases on passing of risk, they consist of general provisions and passing of risk in a contract between traders. General provisions cover effect of passing of risk and identification of goods or digital content to contract. In relation to effect of passing of risk,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the digital content after the risk has passed to the buyer does not discharge the buyer from the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f loss or damage is not resulted from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In relation to identification of goods or digital content to contract, 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or the digital content are clearly identified as the goods or digital content to be supplied under the contract, whether by the initial agreement, by notice given to the buyer or otherwise.

Lastly, regarding the legal bases on revocation of a contract, they are composed of three parts: damages and interest, restitution and prescription. Damages and interest are divided into damages, general provisions on interest on late payments, and late payment by traders. Damages are explained by dividing into right to

damages, general measure of damages, foreseeability of loss, loss attributable to creditor, reduction of loss, substitute transaction, and current price. Restitution is described by dividing into restitution on revocation, payment for monetary value, payment for use and interest on money received, compensation for expenditure and equitable modification. Prescription is explained by dividing into general provisions, periods of prescription and their commencement and extension of periods of prescription. General provisions explain right subject to prescription into a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any right ancillary to such a right. Regarding period of prescription, the short one is two years and the long one is ten years.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for personal injuries, period of prescription for such right is thirty years. Regarding commencement, the short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creditor has become, or could be expected to have become, aware of the facts as a result of which the right can be exercised, while the long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debtor has to perform.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the CESL clarifies that it begins to run from the time of the act which gives rise the right.

[부 록]

유럽공동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

제1부 일반규정

제1장 일반원칙 및 적용

제1절 일반원칙

제1조(계약의 자유)

1. 당사자는 강행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계약체결과 그 내용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
2. 당사자는 CESL상의 여하한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당해 규정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달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신의 및 공정거래)

1. 당사자는 신의 및 공정거래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가진다.
2. 당해 의무위반은 위반한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곧 구제수단 또는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원용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3조(협력)

당사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상호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절 적용

제4조(해석)

1. CESL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과 이에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CESL의 범위 내에 있지만 CESL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은 CESL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용법을 사용하기 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 CESL의 목적 및 CESL의 규정에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3. 일반규칙과 그 범주 내에 특정상황에 적용되는 특별규칙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특별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제5조(합리성)

1. 합리성은 계약의 성격, 목적, 당해 사건의 상황, 관련 업종의 관습 및 관행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대될 수 있는 언급은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6조(불요식)

CESL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CESL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계약,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특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될 필요가 없고 또한 입증될 필요가 없다.

제7조(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

1. 계약내용이 일방에 의하여 제공되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일방이 타방에게 계약내용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협상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내용을 그러한 선별로부터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표준약관이 계약내용의 일부로 제공된 경우 당해 계약내용이 이후 개별적으로 협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B2C 계약에서 기업은 자신이 제공한 계약내용이 개별적으로 협상되었다는 입증책임을 진다.
5. B2B 계약에서 제3자가 작성한 계약내용은 기업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비자가 그 내용을 계약서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당해 계약 하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해제 이후에도 작용하는 그 밖의 계약내용은 제외된다.
2.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만기지급금과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공히 지급대상이 된다. 계약해제가 불이행 또는 예측되는 불이행인 경우 계약해제의 당사자 일방은 타방의 장래 이행 대신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3. 물품대금환급,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반환에 관한 계약해제의 효과와 그 밖의 원상회복에 관한 효과는 제17장에 의한다.

제9조(혼합목적의 계약)

1. 계약내용에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제4부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의 적용에, 제5부는 서비스 제공자 및 고객인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에 적용된다.

2. 전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당해 계약 하에서 매도인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별도로 이행되어야 하거나 또는 달리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의 근거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대금의 일부가 비례 계산되어 질 수 있다면 매수인 및 고객은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전항은 매수인 및 고객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행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거나 또는 불이행이 계약해제를 전체로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당해 계약 하에서 매도인과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구분되지 못하거나 대금의 일부가 비례 계산될 수 없는 경우 매수인 및 고객은 당해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를 해제하기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통지)

1. 본조는 계약 및 CESL의 규정 하에서 당해 목적을 위한 통지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통지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여하한의 진술 및 전달을 포함한다.
2. 통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통지는 수신인에게 도달하였을 때 유효하다. 다만 당해 통지가 지연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한다.
4. 통지의 도달은 다음과 같다.
 - (a) 수신인에게 전달될 때,
 - (b) 수신인의 영업소에 인도되거나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또는 통지가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인의 상거소에 인도될 때
 - (c) 전자적인 우편이나 그 밖의 개별적 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통지의 경우 수신인이 그 통지를 접근할 수 있을 때, 또는
 - (d) 달리 수신인에게 부당한 지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러한 방법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때통지는 상기 조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중 가장 빠른 것을 도달로 본다.
5. 통지의 취소가 당초 통지가 도착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 당초 통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B2C 관계에서 기업은 상기 3 및 4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의 계산)

1. 본조는 CESL하에서 기간계산과 관련된 규정에 적용한다.
2. 3 또는 7을 조건으로
 - (a) 일로 표기하는 기간은 첫날의 첫 시간부터 시작하여 그 기간의 마지막 날짜 마지막 시간이 종기가 된다.
 - (b) 주, 월, 연으로 표시된 기간은 그 기간의 첫날 첫 시간부터 시작하여 해당기간의 마지막 시간이 종기가 된다.
 - (c) 월, 연으로 표시되는 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만기가 되는 날이 마지막 달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시간이 종기가 된다.
3.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표기되는 기간이 특정한 사건, 행동 또는 시간으로부터 기산되는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나고, 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특정한 시간이 도달하는 기간 중 있는 날은 당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해당 기간은 그 기간이 근무일로 표현되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다.
5. 기간의 마지막 날이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 근무일의 마지막 시간에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본조항은 특정한 날짜 또는 사건으로부터 기간을 소급하여 기산하는 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일방이 타방으로서 수신인에게 답변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 언급하지 않는 기한을 정한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그 때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은 수신인에게 당해 서류가 도착한 순간부터 기산한다.
7. 본조의 목적상
 - (a)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일부와 관련하여 공휴일이라 함은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맹관보에서 발간된 목록에 의하여 정한 날로 본다.
 - (b) 근무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이외의 모든 날을 의미한다.

제12조(일방적인 진술 또는 행동)

1. 의사를 표시하는 일방적인 진술은 그것을 수령한 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진술자가 특정한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당해 진술을 사용하여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은 그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러한 표시는 진술한 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제59조 내지 제65조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방적 진술에 적의 조정하여 적용한다.
4. 제5장에서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한 규정은 의사를 표시한 일방적인 진술을 적의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본조에서 다루고 있는 진술에 대한 언급은 진술과 상응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언급도 포함한다.

제2부 계약의 구속력

제2장 계약 전 정보

제1절 B2C 거래 시 제공되는 계약 전 정보

제13조(원거리 및 장외계약체결 시 정보제공 의무)

1. 원거리 또는 장외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당해 계약체결 전에 또는 소비자가 청약에 구속을 받기 전에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a) 제공대상으로서 당해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주요 특성, 전달수단 및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적절성,
 - (b) 제14조에 따른 총대금, 추가수수료 및 비용,
 - (c) 제15조에 따른 기업의 신분 및 주소,
 - (d)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
 - (e) 제17조에 따른 철회권,
 - (f)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의 목적물 판매 후 고객지원의 존재 및 조건, 서비스, 상업적 보장 및 소비자불만 취급정책,
 - (g)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분쟁해결방법 및 그러한 방법에 대한 적용가능성
 - (h)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적용가능 한 기술적 보호 등을 포함한 기능성
 - (i)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알고 있거나 알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가진 디지털 콘텐츠의 상호 운영가능성
2. 전항의 (c)에서 요구하는 주소를 제외하고 제공된 정보는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당사자가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3. 장외계약의 경우 본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정보는 원거리 통신수단에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그 내용은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c) 내구성 있는 매체로 제공되는 경우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

4. 장외계약에 대하여 본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종이로 제공하여야 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른 내구성 있는 매체로 제공하여야 하며,

(b) 가독성이 있고, 평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어야 한다.

5. 본조에서는 계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가정에 소비용으로 식료품, 음료수 또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한 공급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집, 거주지 또는 작업장에 빈번하게 또한 규칙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경우

(b)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

(c) 장외계약의 물품대금 또는 별단의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서의 총대금이 50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금액인 경우

제14조(대금, 추가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정보)

1. 전조 1의 (b)에 의거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당해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총대금으로 세금을 포함하거나 또는 당해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성격이 사전에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경우 그 대금이 계산되어지는 방법, 그리고

(b) 해당되는 경우 추가운임, 인도 및 우편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또는 이러한 것들이 미리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추가수수료 및 비용이 지불될 수 있다는 사실

2. 기간이 없거나 정기적인 주문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총대금은 청구기간별 총대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계약이 고정률로 청구되는 경우 총대금은 월별 총대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총대금은 미리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경우 그 대금이 계산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3. 해당되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기본률 이외로 계산되는 경우 당해 계약체결을 위하여 원거리 통신에 사용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업의 신원 및 주소에 대한 정보)

제13조 1의 항 (c)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기업의 신원, 예를 들면 상호명

(b) 기업이 설립되어 있는 지리적 주소

- (c)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가 기업에게 직접 접촉하여 기업과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업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d) 해당되는 경우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제3자의 신원 및 지리적 주소
- (e) 본조 (b)와 (d)에 따라 제공된 주소와 다른 경우 기업의 지리적 주소,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제3자의 주소

제16조(계약내용에 대한 정보)

제13조 1의, (d)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당해 물품의 인도,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이행을 위한 준비 및 기업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디지털 내용물을 공급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이행하는 시간
- (b) 해당되는 경우 계약기간, 소비자 의무의 최소기간, 또는 만약 당해 계약서에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조건,
- (c) 해당되는 경우 기업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지급하거나 제공하여야 할 예약금 또는 그 밖의 금융담보에 대한 존재 및 조건,
- (d) 해당되는 경우 관련 양식의 존재 및 입수방법

제17조(원거리 또는 장외계약체결 시 취소권에 대한 정보)

1. 소비자가 제4장에 의한 취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3조 1의 (e)에 의거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부록 2에 있는 취소양식뿐만 아니라 부록 1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조건, 기한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되는 경우 제13조 1의 (e)에 의거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취소의 경우 당해 물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원거리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당해 물품이 그 성격상 우편으로 통상적으로 반환할 수 없다면 취소의 경우 당해 물품의 반환에 따른 소요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소비자가 취소기간 동안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요청을 한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1의 (e)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소비자가 제45조 5에 명시된 금액을 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4. 전항들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는 소비자에게 부록 1에 있는 취소지침의 모범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기재된 지침서를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정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취소권이 제40조 2의 (c)에서 (i)호 및 3에 따라 취소권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제13조 1의 (e)에 의거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소비자가 철회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진술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소비자가 취소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장외계약 : 추가정보 요건 및 확인)

1. 기업은 소비자에게 서명된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확인서, 가능한 경우 제40조 3의 (d)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동의 및 승낙확인서 등을 종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관련서비스의 공급을 제42조 2에 규정된 취소기간 동안에 개시되기를 원하는 경우 기업은 당해 소비자가 내구성이 있는 매체로 명시적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원거리 계약 : 추가정보 및 그 밖의 요건)

1. 기업이 소비자에게 원거리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와의 대화 초기에 자신의 신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대신하여 전화하거나 전화의 상업적 목적으로 대신하는 자의 신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원거리 계약이 공간의 제한 또는 정보제공시간을 허용하는 원거리 통신수단으로 체결되는 경우 기업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특정한 방법으로 적어도 본조 3에서 언급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언급된 그 밖의 정보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동조 3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전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a) 제13조 1의 (a)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주요 특징
 - (b) 제15조 (a)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신원
 - (c) 제13조 1의 (b) 및 제14조 1의 2에 언급된 모든 항목을 포함한 총대금
 - (d) 취소의 권리
 - (e) 해당되는 경우 계약기간 그리고 당해 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제16조 (b)상의 당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4. 전화로 체결되는 원거리 계약은 소비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계약체결합의를 나타내는 서면동의를 보낸 경우에만 유효하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내구성 있는 매체로 당해 합의에 따른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기업은 해당되는 경우 제40조 3의 (d)에 언급된 소비자의 동의 및 승낙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계약체결확인서 및 내구성 있는 매체로 제13조에 언급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은 원거리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 내 그리고 늦어도 물품인도 시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이 개시되기 전에 당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보가 원거리 계약체결 전에 내구성 있는 매체로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소비자가 제42조 2에 규정된 취소기간 동안에 관련된 서비스를 개시하는 규정을 원하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로 하여금 내구성 있는 매체로 그 효과를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원거리 및 장외계약 이외의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의무)

1. 원거리 및 장외계약 이외의 계약에서 만약 정보가 본문에서 명확하지 않다면 기업은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또는 소비자가 청약에 의해 구속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제공대상으로서 당해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주요 특징, 통신수단의 적절성,
 - (b) 제14조 1의 총대금, 추가수수료 및 비용,
 - (c) 기업의 상호, 설립주소 및 전화번호 등과 같은 기업의 신원,
 - (d) 제16조 (a) 및 (b)에 따른 계약내용,
 - (e) 해당되는 경우 기업의 사후관리 내용 및 조건, 상업적 보증 및 불만취급정책,
 - (f) 해당되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능성,
 - (g) 해당되는 경우 기업이 알고 있거나 알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디지털 콘텐츠의 상호 운용가능성
2. 본조에서는 당해 계약이 일상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체결시점에 즉시 이행된다.

제21조(입증책임)

기업은 본절에서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책임을 가진다.

제22조(강행성격)

거대당사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본절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2절 B2B 거래 시 제공하여야 할 계약 전 정보

제23조(물품 및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 기업이 기업에게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의 체결 전에 공급자에게 기대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공되어야 할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주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상대

방에게 적절한 수단으로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2. 전항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a) 공급자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 (b) 관련 정보를 취득시의 공급자의 비용
 - (c) 상대방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용이성
 - (d) 정보의 성격
 - (e) 상대방에게 정보제공의 중요성
 - (f) 관련 상황에서 선량한 상관습

제3절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

제24조(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원거리 계약에서 정보제공의 추가의무)

1. 본조는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이러한 수단이 전자적이어서 배타적인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개별적 통신수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
2. 기업은 청약을 작성하거나 승낙하기 전에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이용가능 한 기술적 수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상대방이 청약을 작성하거나 승낙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단계
 - (b) 계약서류가 기업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지
 - (c) 상대방이 청약을 작성하거나 승낙하기 전에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
 - (d) 계약체결을 위하여 제공된 언어
 - (e) 계약내용
4. 기업은 전항의 (e)에 언급된 계약내용이 알파벳순으로 또는 그밖에 알기 쉬운 글자로 그리고 읽기, 기록 또는 재생산을 유형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내구성 있는 매체로 이용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기업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상대방에 의한 청약 또는 승낙의 수령을 부당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원거리 계약의 추가 요건)

1.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되는 원거리 계약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은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소

비자가 주문을 하기 전에 즉시 제13조 1의 (a), 제14조 1 및 2, 제16조 (b)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소비자가 주문 시, 당해 주문이 지급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음을 수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문을 하는 것은 버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 경우 동 버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은 주문과 함께 지급의무라는 문구 또는 주문하는 것은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임을 표시하는 애매모호하지 않는 단어, 곧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기업이 본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당해 계약 또는 주문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
3. 기업은 인도제한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불방법이 인정되는지 늦어도 주문 초기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명백하고도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입증책임)

B2C 관계에서 기업은 본절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책임을 진다.

제27조(강행성격)

B2C 관계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가 해가 될 수 있도록 본절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절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확보 의무

제28조(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보할 의무)

1. 계약체결 전에 또는 체결 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은 본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장에서 부가하는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고 하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2. 부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항의 의무위반으로 일방에게 제공되고 이로부터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신뢰한 자는 제29조에 있는 구제권을 보유한다.
3. B2C 관계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5절 정보제공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29조(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 본장에서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러한 결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유발한데 따른 책임을 진다.
2. 기업이 제14조에 있는 추가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에 관련되거나 또는 제17조 2에 언급된 당해 물품을 반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보요건을 준수하지 않

는 경우 소비자는 추가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본조에 의하여 제공된 구제수단은 제42조 2, 제48조 내지 제49조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B2C 관계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3장 계약체결

제30조(계약체결요건)

1.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체결된다.
 - (a)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
 - (b) 거래당사자가 당해 합의에 법적 효과를 부여한 경우
 - (c) CESL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된 합의로 법적 효과를 주기에 충분한 내용과 확실성을 가진 경우
2. 합의는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승낙은 진술 또는 행위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거래당사자가 법적 효과를 부여했는지의 여부는 그들의 진술 또는 행위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4. 거래당사자 일방이 계약체결을 위하여 특정사항에 대한 요건에 합의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청약)

1. 제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약이 된다.
 - (a) 청약이 승낙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사가 있고, 또한
 - (b) 당해 의사에 충분한 내용과 확실성이 있는 경우
2. 청약은 1인 이상의 특정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3. 대중에게 하는 제안은 청약이 아니며, 다만 상황이 달리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제32조(청약의 취소)

1. 청약은 취소가 피청약자가 승낙 전에 또는 행위에 의한 승낙의 경우 당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2. 대중에게 이루어지는 제안이 청약인 경우 청약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 동일한 수단으로서 취소될 수 있다.
3. 청약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로 취급된다.
 - (a) 청약에서 취소불능이라고 표시한 경우

- (b) 청약이 승낙을 위한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또는
- (c)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으로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피청약자가 당해 청약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제33조(청약의 거절)

청약의 거절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청약은 소멸한다.

제34조(승낙)

1. 피청약자에 의한 여하한의 진술 또는 행위는 그것이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승낙이 된다.
2.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승낙이 되지 못한다.

제35조(계약체결시기)

1. 승낙이 피청약자에 의하여 송부되는 경우 계약은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체결된다.
2. 청약이 행위에 의하여 수락되는 경우 계약은 당해 행위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체결된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그들 간에 확립된 관행 또는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행위에 의하여 승낙하는 경우 계약은 피청약자가 당해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체결된다.

제36조(승낙의 시기)

1. 청약에 대한 승낙은 그것이 청약자가 청약에 명기한 기한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2. 청약자가 지정한 기한이 없는 경우 승낙은 그것이 청약이 이루어진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3. 청약이 청약자에게 지체없이 행위를 함으로써 승낙될 수 있는 경우 승낙은 그 행위가 청약자가 정한 승낙시기 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효하다. 다만 그러한 기간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이어야 한다.

제37조(지연된 승낙)

1.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그것을 유효한 승낙임을 피청약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는 경우 유효하다.
2. 지연된 승낙의 서신이 그 밖의 통신수단에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송부되었다면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당해 지연된 승낙은 승낙으로 유효하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없이 청약이 소멸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제38조(수정된 승낙)

1.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계약내용을 추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항을 언급하거나 암시한 답변은 청약의 거절이며 또한 새로운 청약이다.

2. 가격, 대금지급, 당해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인도의 장소 및 시간, 일방의 타방에 대한 책임의 정도, 분쟁해결에 관련된 계약내용을 추가하거나 달리하는 것은 당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3. 청약에 대한 확정적 동의는 만약 그것이 계약내용을 추가하거나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이는 승낙이 된다. 이 경우 추가 또는 달리하는 계약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4. 추가 또는 다른 계약내용을 언급하거나 표시한 답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항상 청약의 거절로 본다.
 - (a) 청약의 내용에 대한 승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 (b)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없이 추가 또는 다른 계약내용에 반대하는 경우
 - (c)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계약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청약자의 동의를 전제로 승낙이 되고 그 동의가 상당한 기간 내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제39조(표준약관의 충돌)

1. 계약당사자는 청약과 승낙이 충돌되는 표준약관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합의에 이른 경우 계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결된다. 표준약관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통인 정도만큼만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a) 일방이 미리 명백하게 그리고 표준약관방식이 아닌 것으로 전항에 기초하여 계약에 구속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 (b) 부당한 지체없이 그러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

제4장 B2C 간 원거리 및 장외계약 취소권

제40조(취소권)

1. 제42조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해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하고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제45조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a) 원거리 계약
 - (b) 장외계약, 다만 가격 또는 여러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총금액이 50유로 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전항은 다음사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 (a)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화된 상업장소에서 그 특수성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

- (b) 식료품, 음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가정에서 소비되고 직접 기업이 규칙적으로 소비자의 집, 거주소 또는 작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 (c) 물품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계약으로 가격이 기업에 의하여 통제할 수 없는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에 달려 있고 취소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
 - (d) 소비자의 사양에 따라 만들어진 또는 명확히 개별적인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
 - (e) 신속하게 악화되거나 종료가 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대한 계약
 - (f) 알콜성 음료수의 공급에 대한 계약, 대금이 매매계약체결시점에 합의된 가격, 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 발행할 수 있는 인도 그리고 기업에 의하여 통제될 수 없는 시장에서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실제가격과 관련된 경우
 - (g)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잡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다만 그러한 발간물의 공급을 위한 정기적인 계약은 예외로 한다.
 - (h) 공매로 체결된 계약, 그리고
 - (i) 특정한 날짜 또는 이행기간을 제공하는 여가활동 관련 음식조달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계약
3. 1은 다음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제공된 물품이 봉인되었으나, 소비자에 의하여 그 봉인이 해제되고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이유로 반품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
 - (b) 제공된 물품이 그 성격에 따라 인도 후 다른 품목과 별도 구분없이 혼재된 경우
 - (c) 제공된 물품이 오디오 또는 비디오 레코딩이나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봉인되고 인도 후에 개봉된 경우
 - (d) 유형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이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와 소비자의 취소권 상실로 승낙이 개시된 경우
 - (e) 소비자가 긴급하게 수리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방문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 기업이 수리를 하거나 유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된 대체품 이외의 물품 또는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물품 이외에 기업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소권은 추가로 관련된 서비스 또는 부품에만 적용된다.
4. 소비자가 청약하여 승낙된 경우 당해 계약으로부터 본장에 의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달리 취소불능이라 하더라도 당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41조(철회권의 행사)

1. 소비자는 제42조에서 정한 철회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철회를 할 권리를 보유한다.
2. 소비자는 기업에게 통지로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소비자는 부록 2에 있는 철회모델양식을 사용하거나 철회결정을 설명한 그 밖의 진술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업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철회할 선택권을 제공하고 소비자도 그렇게 하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내구성 있는 매체로 그러한 철회에 대한 영수확인을 고객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기업은 이러한 의무의 위반에 의해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철회에 대한 전달은 최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송부한 경우에는 적절하다.
5. 소비자는 철회권이 본조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진다.

제42조(철회기간)

1. 철회기간은 다음으로부터 14일 이후에 만료된다.
 - (a) 매도인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물품이 인도된 날
 - (b) 매도인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한 번의 주문으로 여러 개의 물품을 주문하고 인도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마지막 물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
 - (c) 물품이 여러 개의 물품으로 구성되는 계약에서 최종 물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 매도인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계약도 이에 포함된다.
 - (d) 정기적인 기간 동안에 물품의 규칙적 인도를 위한 경우 첫 번째 물품을 인수한 날. 매도인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계약도 이에 포함된다.
 - (e) 물품이 인도된 후 체결된 관련된 서비스 계약의 경우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
 - (f)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가 유형으로 공급되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의 경우 (a)에 따라 유형의 매체로 인도받은 날
 - (g) 디지털 콘텐츠가 유형의 매체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이 체결된 때
2.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17조 1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철회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만료된다.
 - (a) 1에 따라 결정된 바대로 최초의 철회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
 - (b) 기업이 1에 따라 결정된 바대로 철회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요구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

제43조(철회의 효과)

철회는 다음의 계약 하에서 양측의 의무를 종료한다.

(a)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b) 소비자에 의하여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44조(철회의 경우 기업의 의무)

1.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모든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부담한 지체없이 제41조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부터 소비자의 철회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보다 늦지 않은 경우 그 인도비용을 포함한다. 기업은 소비자가 최초거래를 위하여 사용한 지급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달리 합의하고 소비자가 그러한 환불의 결과로 여하한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만약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가장 비용이 적은 표준인도 유형 이외의 인도유형을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 부수적인 비용을 환불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3. 물품매매를 위한 계약의 경우 기업은 물품을 반품받을 때까지 또는 소비자가 당해 물품을 반품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때까지 이 중 빠른 날짜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당해 물품을 수거하기로 제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의 체결 시에 소비자의 집으로 물품이 배달되는 장외계약의 경우 기업은 물품 성격상 우편으로 통상적으로 반환될 수 없다면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물품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45조(철회의 경우 소비자의 의무)

1. 소비자는 당해 물품을 반품하거나 그것을 기업에게 주거나 기업이 지정한 자에게 지체없이 당해 계약철회결정을 제41조에 따라 기업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당해 물품을 수거를 제안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러한 의무는 고객이 당해 물품을 14일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 충족된다.
2. 소비자는 물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거나 기업이 소비자가 당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비자는 당해 물품의 성격, 특징 및 기능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물품의 취급으로 인한 경우 당해 물품의 감소된 가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비자는 기업이 제17조 1에 따라 철회권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소된 가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3에 대한 편견없이, 소비자는 철회기간 동안에 당해 물품의 사용에 대한 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소비자가 철회기간 동안에 개시할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명시적 요청을 한 이후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소비자는 당해 계약의 완전 이행과 비교하여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무엇이 제공되었는지에 비례하는 금액을 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기업에 지급하는 비례금액은 계약서에 합의된 총금액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총금액이 과도한 경우 비례금액은 제공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6. 소비자는 다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a) 다음과 같은 경우 철회기간 동안에 전부 또는 일부 관련서비스에 대한 공급
 - (1) 기업이 제17조 1 및 3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 (2) 소비자가 제18조 2 및 제19조 6에 따라 철회기간 동안에 개시할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 (b) 유형의 매체로 공급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공급에 대하여
 - (1) 소비자는 제42조 1에 언급된 철회기간 종료 전에 개시할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에 대하여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 (2) 소비자가 동의할 때 철회권을 상실하였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 (3) 기업이 제18조 1 및 제19조 5에 따라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7. 본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를 통하여 여하한의 책임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46조(부수적인 계약)

1. 소비자가 제41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원거리 또는 장외계약으로부터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여하한의 부수적인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떠한 비용없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2 및 3에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본조의 목적상 부수적인 계약이라 함은 소비자가 원거리 계약 또는 장외계약과 관련하여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는 기업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그들 간의 약정에 기초하여 제공되어 진다.
2.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당해 계약이 CESL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정도까지만 부수적인 계약에 적용된다.
3. CESL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는 부수적인 계약에 대하여 적용법은 철회의 경우에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다룬다.

제47조(강행성격)

거래당사자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본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장의 효과

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5장 의사표시의 하자

제48조(착오)

1.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될 때 존재하고 있는 사실 또는 법의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a) 일방은 착오가 없었다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는 다른 계약내용으로 체결하였을 것임에도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면
 - (b) 상대방은
 - (1) 실수를 유발하였거나
 - (2) 제2장 제1절에서 제4절까지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거나
 - (3) 착오를 알았거나 착오를 아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서 관련 정보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다만 신의 및 공정거래가 일방에게 착오 지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 한다. 또는
 - (4) 동일한 착오를 한 경우
2. 일방이 착오의 위험을 떠안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부담되어야 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진술의 표현이나 전달 시 부정확한 것은 그러한 진술을 하거나 보낸 자의 착오로 본다.

제49조(사기)

1. 일방은 상대방의 신의 및 공정거래의무 또는 계약 전 정보 제공의무를 구두, 행위나 사기적인 정보 비제공에 의하든 허위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허위표시는 그 대리가 허위라는 인지 또는 신뢰로 또는 그것이 진정인지 허위인지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그 수령자로 하여금 착오를 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라면, 사기에 해당된다. 정보의 미제공이 만약 그 정도가 착오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된다.
3. 신의 및 공정거래가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당사자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b)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자의 비용

- (c) 상대방이 그 밖의 수단에 의하여 정보를 획득할수 있는 용이성
- (d) 정보의 성격
- (e)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명백한 중요성 그리고
- (f) 기업 간의 계약서에 해당 상황에서 선량한 상관습

제50조(강박)

일방은 상대방이 심각한 손해 또는 잘못된 행위의 강박으로 당해 계약체결을 유도하였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1조(부당한 착취)

일방은 계약체결 시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a)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달려있거나 또는 상대방과 신뢰의 관계를 가졌거나 또는 경제적 고통 또는 긴급한 수요를 가졌거나 경솔하였거나 무지하거나 또는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 (b) 상대방이 이것을 알았거나 아는 것이 추정되고 당해 계약의 상황 및 목적에서 과도한 혜택 또는 불공정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원당사자의 상황을 이용한 경우

제52조(취소의 통지)

1. 취소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유효하다.
2. 취소통지는 당사자가 관련 상황을 알고 있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난 후 다음의 기간 동안에 통지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 (a) 착오의 경우 6개월 그리고
 - (b) 사기, 강박 및 부당한 착취의 경우에 1년

제53조(추인)

본장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관련 상황을 알거나 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난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계약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제54조(취소효과)

1. 취소될 수 있는 계약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일단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무효로 취급한다.
2. 취소근거가 일부 계약내용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소효과는 그 계약의 나머지를 지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계약내용에 한정한다.
3. 일방이 취소된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거나 공급된 것을 반환하는 권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전의 반환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17장의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55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본장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거나 기한의 발효 또는 추인에 의하여 상실되기 전에 그러한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그 계약이 취소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착오, 사기, 강박 또는 부당한 착취의 결과로 고통을 받은 손실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을 보유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6조(구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한)

1. 사기, 위협 및 부당한 착취에 대한 구제수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2. B2C 관계에서 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착오에 대한 구제수단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없다.

제57조(구제수단의 선택)

본장에 의하여 구제수단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을 받을 상황인 경우 이러한 구제수단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3부 계약내용의 해석

제6장 해석

제58조(계약내용 해석의 일반규칙)

1. 계약내용에 사용된 표현이 통상적인 의미와 다른 경우 거래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일방이 계약에 사용된 표현을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의도하고 계약의 체결 시점에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당해 표현은 일방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3. 1 및 2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계약은 합리적인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제59조(관련 사항)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예비적 교섭 등을 포함한 계약이 체결된 상황
- (b)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 거래당사자의 행위
- (c) 계약에 사용된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당사자가 이미 수용한 해석
- (d) 동일한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관습
- (e)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습
- (f) 관련된 활동분야에서의 표현에 통상적으로 부여된 의미

(g) 계약의 성격 및 목적

(h) 신의 및 공정거래

제60조(전반적인 계약 참고)

계약내용에 사용된 표현은 전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61조(언어의 불일치)

계약내용이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되고 그것 중 어느 것도 정본이라고 언급되지 않고 언어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원래 작성된 것이 정본으로 취급된다.

제62조(개별적으로 협상된 계약내용에 대한 우선 적용)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정도만큼 계약내용은 제7조의 의미상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내용보다 개별적으로 협상된 계약내용이 우선한다.

제63조(계약내용에 효력을 부여하는 해석의 우선 적용)

계약내용에 효력을 부여하는 해석이 그러하지 않는 해석보다 우선한다.

제64조(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

1. B2C 간의 계약내용에 의구심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동 내용이 소비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력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65조(계약내용의 공급자에게 불리한 해석)

전조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제7조의 의미상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은 계약내용의 의미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그것을 제공한 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7장 내용 및 효력

제66조(계약내용)

계약내용은 다음에 기초한다.

- (a) CESL의 강행규칙 준수를 조건으로 거래당사자의 합의
- (b) 거래당사자가 제67조에 의하여 구속되는 관습 및 관행
- (c) 거래당사자의 합의 부재 시 그와 반대로 적용되는 CESL의 규정
- (d) 제68조에 의한 묵시적 계약내용

제67조(B2B 계약 시 관습 및 관행)

1. B2B 계약 시, 거래당사자는 적용하도록 합의한 관습에 의하여 그리고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행에 의하여 구속된다.
2.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와 동일한 상황에서 기업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고 취급되는 관습에 구속된다.

3. 관습과 관행은 개별적으로 합의되었거나 CESL의 강행규칙인 계약내용과 충돌되지 않는 경우 거래당사자를 구속한다.

제68조(묵시적일 수 있는 계약내용)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CESL의 관습 또는 관행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계약의 성격 및 목적
 - (b) 계약이 체결된 상황
 - (c) 신의 및 공정거래
2. 1에 의하여 묵시적인 여하의 계약내용은 가능한 한 거래당사자가 그 사항을 정하였다면 아마도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것에 효과를 부여하는 정도로 취급한다.
3. 1은 일방 또는 타방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수락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가 고의적으로 특정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69조(특정계약 전 진술로부터의 계약내용)

1.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 또는 대중에게 기업이 당해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
 - (a)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을 달리 신뢰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기대될 때
 - (b) 계약체결을 위한 상대방의 결정이 그 진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었을 때
2. 1의 목적상, 기업을 위하여 광고 또는 마케팅에 종사한 자에 의한 진술은 그 기업이 한 것으로 취급한다.
3. 1의 목적상, 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 생산자 또는 타인에 의하여 또는 그 대신에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진술은 그 기업이 한 진술로 본다. 다만 계약체결시점에 기업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B2C 관계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70조(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의 주의 환기의무)

1. 일방이 제공하고 제7조의 의미상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다면 또는 그것을 제공한 자가 당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또는 체결될 당시 그들에게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킬 합리적인 단계를 취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원용할 수 있다.
2. 본조의 목적상, B2C 거래에 있어서 계약내용은 소비자가 그 서류에 서명하였다

고 하더라도 계약서류에 단순히 당해 내용을 언급한 것은 소비자의 주의를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거래당사자는 본조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71조(B2C 계약에서의 추가지급)

1. B2C 계약에서 소비자가 기업의 주된 계약의무에 언급된 보상 외에 추가지급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내용은 이것이 특히 추가지급을 취소하기 위하여 거절하도록 요구되는 기본선택의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다만 소비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기 전에 소비자가 추가지급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비자가 추가지급을 한 경우 소비자는 그것을 반환받을 수 있다.
2. 거래당사자는 소비자가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72조(통합조항)

1. 서면상 계약이 당해 문서가 모든 계약내용(통합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언급한 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문서에 있지 않은 여하한의 사전 진술, 약속 또는 합의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2. 계약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조항은 당사자의 사전 진술을 계약을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3. B2C 계약에서, 소비자는 통합조항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는다.
4.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73조(가격의 결정)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가격이 달리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반대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의 체결시점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으로 보며,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급한다.

제74조(일방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

1. 가격이나 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이 일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 당사자의 결정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가격 또는 계약의 체결시점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으로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가격 또는 내용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 또는 내용으로 대체된다.
2. 거래당사자는 본조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제3자에 의한 결정)

1. 제3자가 가격 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것이 계약내용과 불일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3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이 중대하게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가격 또는 계약체결시점에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 사용되는 내용 또는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 또는 내용으로 대체된다.
3. 1의 목적상 법원은 중재판정부를 포함한다.
4. B2C 관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2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76조(언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가 달리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사용되어야 할 언어는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사용된 언어로 본다.

제77조(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계약)

1.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계약의무의 이행에 관한 경우 계약내용에 계약관계가 언제 종료될지 정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효과로 통지 시 해제되는 것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방이 2달을 경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B2C 관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제78조(제3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

1.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게 권리를 허여할 수 있다. 제3자는 계약체결 시 존재할 필요가 없거나 확인될 필요는 없지만 확인되어질 필요는 있다.
2. 제3자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해 권리는 제3자의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형태를 띌 수 있다.
3.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행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경우
 - (a) 제3자는 만약 계약당사자가 제3자와의 계약 하에서 이행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구제권을 동일하게 보유한다.
 - (b) 의무가 있는 계약당사자는 당해 계약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권을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4. 제3자는 계약당사자 중 한 쪽에게 통지로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야 한다.
5. 계약당사자는 권리를 허여한 계약내용을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그들 중 한쪽이 제3자에게 그 권리는 이미 수여받았음을 통지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제8장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1절 일반규정

제79조(불공정한 계약내용의 효과)

1. 일방이 제공하고 본장 제2절 및 제3절에 의하여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2.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내용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그 나머지 계약내용은 구속력을 가진다.

제80조(불공정한 계약내용의 예외)

1. 제2절 및 제3절은 그 내용이 당해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적용될 CESL의 규칙을 반영한 계약내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절은 계약의 주요 대상물의 정의 또는 기업이 제82조상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는 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적절성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절은 당해 계약의 주요 대상물의 정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적절성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강행성격)

당사자는 본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제2절 B2C 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82조(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

기업이 제7조의 의미상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은 계약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기업은 계약내용이 평범하게 가독성 있는 언어로 작성되고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83조(B2C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의 의미)

1. B2C 계약에서, 기업이 제공한 계약내용으로서 제7조의 의미상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계약내용은 그것이 소비자에게 손해가 갈 정도로 신의 및 공정거래에 반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 경우라면 본절의 목적상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
2. 본절의 목적상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기업이 제82조에 정한 투명성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 (b) 계약에서 제공되어야 할 목적물의 성격
- (c) 계약체결 동안에 우세한 상황
- (d) 그 밖의 계약내용
- (e) 계약에 의존하는 그 밖의 다른 계약의 내용

제84조(항상 불공정한 계약내용)

계약내용은 그 목적 및 효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본질의 목적상 항상 불공정하다.

- (a) 기업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발시킨 사망 또는 개인적인 상해에 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 (b) 고의적으로 유발되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여하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 (c) 기업의 수권대리인이 수행한 약속에 의하여 구속을 받거나 또는 기업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이행의 특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약속을 위해 기업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
- (d)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위하거나 그 밖의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권리를 제외하거나 방해하는 것. 특히 B2C 간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 규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중재제도에 대해 배타적으로 분쟁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
- (e) 기업이 거주하는 장소의 법원에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을 부여하는 것. 다만 선택된 법원이 소비자가 거주하는 장소의 법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f) 제공된 당해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가 당해 계약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독점적 권리를 기업에게 주거나 또는 기업에게 그 밖의 계약내용을 해석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
- (g) 소비자가 기업이 아닌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
- (h) 소비자에게 당해 계약의 체결 시 사용되는 것 보다 제8조의 의미상 계약을 해제할 보다 더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
- (i)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간보다 당해 계약을 해제하는데 더 짧은 기간을 기업에게 허여하는 것
- (j) 실제로 인도되지 않은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도록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
- (k) 제7조의 의미상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계약내용이 개별적으로 협상된 계약 내용보다 우선하도록 결정하는 것

제85조(불공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계약내용)

계약내용은 그것의 목적 및 효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질의 목적상 불공정하다.

- (a) 소비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한하거나 또는 기업에게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하는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
- (b) 계약에 의하여 의무가 있는 기업의 불이행에 대하여 당해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부적절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 (c)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채무와 소비자가 기업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상계청구권을 부적절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 (d)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업이 보관하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반대의 상황으로 기업으로부터 동등한 금액의 보상을 받도록 하는 소비자에게는 규정하지 않은 것
- (e) 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불평등하게 고액의 금액을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특정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
- (f) 소비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지 않고 임의로 제8조의 의미상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해제할 권리를 기업에게 주거나 또는 기업이 당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아직 제공하지 않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 (g)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통지없이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계약을 기업에게 해제할 권리를 주는 것
- (h) 계약내용에 통지를 위한 마감기간이 불합리하게 이르게 된 경우 소비자가 달리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것
- (i) 기업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기업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기업이 기한이 없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는 계약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되고 소비자는 자신의 비용부담 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자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j) 기업이 제공할 당해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특징 또는 그 밖의 이행 특징을 타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k)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대금이 인도 또는 공급시점에서 결정되어지거나 또는 인상된 가격이 계약체결 시 합의된 가격에 비하여 너무 높은 경우 취소권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고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가격이 변동하는 방법이 명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합법적인

경우에는 가격지수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m) 소비자에 대한 동의없이 당해 가격과 기업의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도록 기업에게 허용하는 것. 다만 기업이 통제하는 자회사이거나 또는 합병이나 이와 유사한 기업의 거래로 인하여 그러한 이전이 소비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n) 주문을 받은 내용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이러한 가능성 및 소비자가 이행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소비자가 수령한 것을 반환하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고 이와 동등한 물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
- (o) 기업에게 청약을 승낙하거나 또는 거절하기에 불합리하게 길거나 부적절하게 명기된 기간을 기업에게 보유하도록 하는 것
- (p) 기업에게 당해 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할 기간을 불합리하게 길거나 부적절하게 정한 기간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
- (q) 기업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 또는 기업에 의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항변을 부적절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 (r) 기업에 의한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 또는 소비자를 위한 당해 계약의 혜택을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불합리한 특정절차와 결부시키는 것
- (s) 소비자에게 의무이행으로 지나치게 많은 선금금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 (t) 소비자에게 제3자 공급처로부터 장치품 또는 수리부품을 부당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u) 소비자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해 기업, 그 기업의 자회사 또는 제3자와 동시에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도록 하는 것
- (v) 소비자에게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
- (w) 최초의 계약기간 또는 그 밖의 갱신기간을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1년을 초과하는 연장공급을 위한 계약으로 하는 것. 다만 소비자가 최소 30일의 해제기간 중 어느 때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절 B2B 계약 시 불공정 계약내용

제86조(B2B 계약 시 불공정의 의미)

1. 본절의 목적상 B2B 계약 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불공정하다.
 - (a) 계약내용이 제7조의 의미상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내용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 (b) 신의 및 공정거래에 반하는 선량한 상관습으로부터 중대하게 이탈되는 성격인 경우
- 2. 본절의 목적상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계약에 의거 제공하여야 할 목적물의 성격
 - (b) 계약체결 동안에 우세한 상황
 - (c) 그 밖의 계약내용
 - (d)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그 밖의 계약내용

제4부 매매계약 또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제9장 일반규정

제87조(불이행과 중대한 불이행)

- 1. 불이행은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a) 물품의 불인도 또는 지연인도
 - (b) 디지털 콘텐츠의 불인도 또는 지연인도
 - (c) 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의 인도
 - (d) 계약과 불일치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 (e) 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 (f) 계약과 불일치하는 그 밖의 이행
- 2. 일방에 의한 불이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대하다.
 - (a) 상대방이 당해 계약에 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사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 다만 계약체결시점에 불이행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 (b) 불이행당사자의 장래이행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

제88조(불이행의 면책)

- 1. 일방의 불이행은 만약 그것이 그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장애로 기인하고 그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었던 장애로 기대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장애 또는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 2. 장애가 일시적인 경우 불이행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만 면책된다. 그러

나 지연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행을 할 수 없는 당사자는 장애통지와 이행능력에 대한 효과통지가 원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부당한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대방은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제89조(상황의 변동)

1. 당사자 일방이 이행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감소되는 것에 상관없이 또는 그 이행이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름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이 예외적인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당해 계약을 채택하거나 해제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의무를 진다.
2. 거래당사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일방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a) 거래당사자가 상황변동을 고려하였다면 계약체결 시 합리적으로 합의한 것에 따라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
 - (b) 법원에서 정하는 날짜 및 조건으로 제8조의 의미상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1 및 2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a) 계약이 체결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상황의 변동
 - (b) 상황의 변동을 인용한 자가 그 시점에서 상황의 변동 가능성 또는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고려할 수 없었던 경우
 - (c) 불이행을 당한 당사자가 사정변경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고 인수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던 경우
4. 2 및 3의 목적상, 법원은 중재판정부를 포함한다.

제90조(지급 및 승낙되지 않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용규칙의 연장)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장에 매수인에 의한 대금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의 조정하여 그 밖의 대금지급에도 적용한다.
2. 제97조는 타인이 점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개인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점유하는 경우에 적의 조정하여 적용한다.

제10장 매도인의 의무

제1절(일반규정)

제91조(매도인 의무의 총괄)

물품의 매도인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자(‘매도인’)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a) 물품을 인도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여야 한다.
- (b) 디지털 콘텐츠가 공급되는 경우 유형의 매체를 포함하여 당해 물품의 소유권이 전하여야 한다.
- (c)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당해 계약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d)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e) 물품을 대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 또는 당해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92조(제3자에 의한 이행)

- 1. 매도인은 타인에게 이행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에 의한 개인적인 이행이 계약내용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타인에게 이행을 위임한 매도인은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B2C 관계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2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절 인도

제93조(인도장소)

- 1. 인도장소가 달리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인도장소는 다음과 같다.
 - (a) 소비자 매매계약 또는 원거리나 장외계약인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에 대한 계약의 경우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운송을 주선하도록 약속한 경우 계약체결 시 소비자의 거주지.
 - (b) 기타의 경우
 - (1) 매매계약이 운송인에 의한 또는 여러 운송인에 의한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최초운송인의 집하지점
 - (2) 계약이 운송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매도인의 영업소
- 2. 매도인이 2개 이상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의 b의 목적상 영업소는 당해 인도 의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곳이다.

제94조(인도방법)

- 1.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다음의 인도 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 (a) 소비자 매매계약 또는 원거리나 장외계약인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에 대한 계

약의 경우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운송을 주선하도록 약속한 경우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 또는 통제를 소비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b) 계약에서 1인의 운송인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운송을 하는 그 밖의 경우 당해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리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운송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매도인이 당해 물품을 대리하는 서류를 인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1의 (a) 및 (c)에서 소비자 또는 매수인에 대한 언급은 당해 계약에 따라 소비자 또는 매수인이 표시한 운송인이 아닌 제3자를 포함한다.

제95조(인도시기)

1. 인도시기가 달리 결정될 수 없는 경우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는 부당한 지체없이 계약체결 후 인도되어야 한다.
2. B2C 계약에서 거래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96조(매도인의 물품운송에 대한 의무)

1. 계약에서 물품의 운송을 매도인이 수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 상황에 맞는 운송수단으로 그리고 그러한 운송을 위한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계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물품을 화인에 표시하거나 선적서류 또는 그 밖의 것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으로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매도인은 그 물품을 구체화하는 화물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계약에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운송에 대한 보험을 부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 시 그러한 보험을 매수인이 부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7조(매수인이 승낙하지 않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

1.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을 때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 인도의무로부터 해방된다.

- (a)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매수인의 지시에 두도록 제3자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맡겨둔 경우
 - (b)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매수인에게 통지한 후 합리적인 조건으로 판매하고 그 순이익금을 매수인에게 급부한 경우
3. 매도인은 매매수익금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거나 공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98조(위험이전의 효과)

위험의 이전에 대한 인도의 효과는 제14장에 의한다.

제3절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

제99조(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

1. 계약의 일치성을 담보하기 위한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충족요건은 다음과 같다.
 - (a)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여야 한다.
 - (b)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 (c) 계약에서 요구하는 여하한의 부속품, 설치지침 또는 그 밖의 지시사항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2. 계약에 일치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는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비자 매매계약에서, 제100조, 102조 내지 제103조의 요건으로부터 변경되는 여하한의 합의는 당해 계약체결시점에 소비자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정조건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체결할 때 계약과 일치되는 것으로 그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수락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4. 소비자 매매계약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가 해가 되도록 전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조의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00조(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성에 대한 기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계약체결시점에 매도인으로부터 알려진 그 특정한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황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 및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b) 동일한 명세의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c)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모형 또는 견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품

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d) 당해 물품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 당해 물품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e)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기대할 수 있는 부속품, 설치지침 또는 그 밖의 지침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f) 제69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가 되는 계약 전 진술로 표시된 품질 및 이행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g)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품질 및 이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때, 디지털 콘텐츠가 그 대가에 대한 급부로 공급되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1조(소비자 매매계약에 의한 부정확한 설치)

1. 소비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부정확하게 설치되는 경우 그러한 부정확한 설치로 인한 불일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a)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매도인에 의하여 매도인의 책임 하에 설치된 경우 또는
 - (b)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소비자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의도되었고 부정확한 설치가 설치지침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2.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본조의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02조(제3자의 권리 및 청구)

1. 물품과 디지털 콘텐츠는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없어야 하며 또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청구가 없어야 한다.
2. 제3장 및 제4장을 조건으로 지재권에 기초한 권리 또는 청구에 대하여,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는 제3자로부터 여하한의 권리가 없어야 하며 명백하게 근거있는 청구가 없어야 한다.
 - (a) 당해 계약에 따라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사용되는 경우 그 국가의 법에 의거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영업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또는 B2C 간의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점에 소비자가 표시한 소비자 거주지의 국가, 그리고
 - (b) 매도인이 계약체결시점에 알았거나 또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바에 따라
3. B2B 계약에서, 2는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점에 지재권에 기초한 권리나 청구를 알

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B2C 계약에서, 2는 소비자가 계약체결시점에 지재권에 기초한 권리 또는 청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B2C 계약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03조(디지털 콘텐츠의 일치에 대한 제한)

디지털 콘텐츠는 업데이트된 디지털 콘텐츠가 계약체결 이후에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104조(B2B 계약 시 불일치에 대한 매수인의 인지)

B2B 계약 시, 계약체결시점에 매수인이 그러한 불일치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매도인은 당해 물품의 불일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5조(일치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기)

1. 매도인은 제14장에 의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불일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소비자계약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명백한 불일치는 그 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것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이나 불일치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01조 1의 (a)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경우 본조 1 또는 2의 시점에 대한 언급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설치가 완전한 시점에 대한 동의로 본다. 제101조 1의 (b)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설치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가지는 시기에 대한 동의로 본다.
4. 디지털 콘텐츠가 기업에 의하여 나중에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경우 기업은 디지털 콘텐츠가 당해 계약기간동안에 계약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B2C 계약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없다.

제11장 매수인의 구제수단

제1절 일반규정

제106조(매수인의 구제수단 일반)

1. 매도인이 불이행한 경우 매수인은 다음 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다.
 - (a)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본장 제3절에 의한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구체적인 이행, 수리 또는 대체를 포함한다.

- (b) 본장 제4절에 의거하여 매수인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 (c) 본장 제5절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제17장에 의거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d) 본장 제6절에 의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 (e) 제16장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기업인 경우,
- (a) 이행보류를 제외하고 여하한의 구제수단을 매수인이 행사하는 것은 본장 제2절에 있는 매수인의 치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 (b) 매수인이 불일치를 원용할 권리는 본장 제7절의 검사요건과 통지의 대상이 된다.
3.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
- (a) 매수인의 권리는 매도인의 치유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 (b) 본장 제7절의 검사요건 및 통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매도인의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요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 1에 있는 여하한의 구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5. 매수인은 자신이 매도인의 불이행을 초래한 정도만큼 1에 언급된 여하한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
6. 대답하지 아니하는 구제수단은 병존할 수 있다.

제107조(금전의 대가로 공급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구제수단 제한)

디지털 콘텐츠가 대금지급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제106조 1의 (a) 내지 (d)호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 매수인은 자신의 자산에 끼친 손실 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제106조 1의 (e)에 의한 손해배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의 재산에는 공급된 디지털 콘텐츠의 불일치로 인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자료를 포함하며, 매수인이 그러한 손상으로 인하여 박탈된 이익은 제외한다.

제108조(강행성격)

B2C 계약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 해가 되도록 불일치가 소비자에 의한 기업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전에, 본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절 매도인에 의한 치유

제109조(매도인에 의한 치유)

1. 이행을 조기에 제공하고 그 이행이 계약내용에 불일치함을 통지받은 매도인은 당해 이행이 허용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재차 일치되는 제공을 할

수 있다.

2. 전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불일치한 이행을 제공한 매도인은 부당한 지체없이 불이행을 통지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것을 치유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3. 치유를 위한 제안은 해제통지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4. 매수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치유를 위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
 - (a) 치유가 매수인에게 신속하게 상당한 불편함이 없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b) 매수인이 매도인의 미래 이행이 신뢰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 (c) 이행지연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5. 매도인은 치유를 이행할 상당한 기간을 가진다.
6. 매도인은 치유까지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치유를 이행할 시간을 허용하는 것과 불일치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중지된다.
7. 치유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치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그 치유에 의하여 예방되지 못한 손해 및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절 이행요구

제110조(매도인의 의무이행 요구)

1.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요구될 수 있는 이행은 계약과 불일치한 이행을 무료로 구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이행은 다음의 경우에 요구될 수 없다.
 - (a)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경우
 - (b) 이행의 부담 또는 경비가 매수인이 취하는 혜택에 비하여 불균형인 경우

제111조(수리와 대체 간의 소비자 선택)

1. 소비자 매매계약서에서, 기업이 제110조 2에 따라 불일치를 구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소비자는 수리 또는 대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택한 것이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른 이용가능 한 선택에 비교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매도인에게 비례적이지 아니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a) 불일치가 없는 경우 당해 물품이 가지게 되는 가치
 - (b) 불일치의 중요성 그리고
 - (c) 구제수단이 소비자에게 상당한 불편함이 없이 완료될 수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전항에 의거 수리 또는 대체에 의하여 불일치를 구제하도록 요구한 경

우 소비자는 기업이 상당한 기간 내에 30일을 초과하지 않고 수리 또는 대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만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 기간 동안에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2조(대체물품의 반환)

1. 매도인이 불일치를 해결하였다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된 물품을 회수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매수인은 대체하기 전 기간 동안에 대체물품으로 만들어진 용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절 매수인의 의무이행 보류

제113조(이행보류권)

1. 매도인의 이행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행을 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보류할 권리를 가진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이 이행을 하기 전에 이행을 해야 하고 매도인의 이행이 만기에 불이행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3. 본조에 의하여 보류될 수 있는 이행은 불이행으로 정당화되는 정도의 이행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된다. 매도인의 의무가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달리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의 불이행이 매수인의 이행을 전체적으로 보류할 만큼 정당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절 해제

제114조(불이행에 대한 해제)

1.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이행이 제87조 2의 의미상 중대한 경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비자 매매계약 및 B2C간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에서,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로 불이행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불일치가 사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5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통지 후 인도지연시 해제)

1. 매수인은 인도지연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해 인도지연은 중대하지는 않지만 매수인이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매도인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2. 전항에서 정한 추가기간은 매도인이 부당한 지체없이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매도인이 통지에 의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통지서에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해제는 추가적인 통지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효력이 생긴다.

제116조(예상되는 불이행에 대한 해제)

매수인은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불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거나 달리 명백히 그러할 경우 그리고 그 불이행이 계약해제를 정당화 할 정도인 경우에 한 한다.

제117조(해제권의 범위)

1. 계약에 의한 매도인의 의무가 별도로 이행되거나 또는 달리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본절에 의한 계약해제로부터 해제권이 금액이 비례 배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은 매수인이 다른 부분의 이행을 승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거나 또는 불이행이 당해 계약을 전체로 해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계약에 의한 매도인의 의무가 구분할 수 없거나 금액의 일부가 비례 계산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당해 불이행에 기하여 계약을 전체로 해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제118조(통지)

본절에 의한 해제권은 매도인에게 통지함으로서 행사되어 진다.

제119조(해제권의 상실)

1. 매수인은 해제권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매수인이 불이행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밖에 없었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중 나중 것을 기준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권을 상실한다.
2. 전항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 또는
 - (b) 이행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제6절 대금감액

제120조(대금감액권)

1. 계약에 일치하지 않은 이행을 수락한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은 일치되는 이행 시의 가치에 비교하여 이행 시의 이행으로 받은 것의 가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2. 전항에 의하여 대금감액권이 있고 감액된 금액을 초과지 않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대금을 인하한 매수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없지만 고통받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유한다.

제7절 B2B 계약 시 검사 및 통지요건

제121조(B2B 계약 시 물품에 대한 검사)

1. B2B 계약 시,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에 당해 물품을 검사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2. 만약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당해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갖기 전에 매수인에 의하여 경유지가 있거나 재발송된 경우 그리고 계약체결 시 매도인이 그러한 경로변경 또는 재발송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검사는 당해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제122조(B2B 계약 시 불일치의 통지요건)

1. B2B 계약 시,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불일치의 특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당해 불일치를 원용할 수 없다. 기간은 물품이 공급될 때 또는 매수인이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때 나중의 날부터 기산한다.
2.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당해 물품이 실제로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불일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당해 불일치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3. 거래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특정목적용 또는 통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당해 물품이 적합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 전항에 의한 통지기간은 합의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만료되지 아니한다.
4. 2는 제102조에 언급된 권리 또는 청구는 제3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매수인은 자신이 나머지 물품이 인도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는 경우 모든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매도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6. 매도인은 만약 불일치가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실과 관련되고 또한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조를 원용할 자격이 없다.

제12장 매수인의 의무

제1절 일반규정

제123조(매수인 의무의 총괄)

1. 매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a)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b)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인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 (c) 물품을 표창하는 또는 이와 관련되거나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서류를 계약 내용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수하여야 한다.
2. 전항 (a)는 디지털 콘텐츠가 대금지급에 대한 대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공급에 대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대금의 지급

제124조(지급방법)

1. 대금지급은 계약내용에 의하여 표시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지에서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의한다.
2. 수표 또는 그 밖의 지급지시서나 지급약속어음을 수락한 매도인은 정히 인수되는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은 지급지시서나 지급약속어음이 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3. 매수인의 의무는 매도인이 제3자의 약속어음을 지급수단으로 수락하도록 이미 이전의 약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멸된다.
4. B2C 계약에서, 소비자는 특정한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제125조(지급장소)

1. 지급장소가 달리 결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장소는 계약의 체결시점에서 매도인의 영업소가 된다.
2. 매도인이 2개 이상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 지급장소는 지급할 의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된다.

제126조(지급시기)

1. 물품대금의 지급은 인도 시에 이루어진다.
2. 매수인은 물품대금 지급만기 이전에 대금이 청구된 경우 또한 이로부터 매도인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 당해 그러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7조(제3자에 의한 지급)

1. 매수인은 타인에게 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매도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a) 제3자가 매수인의 동의로 행위하는 경우 또는
 - (b) 제3자가 지급하는데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또한 매수인이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지급만기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3. 1 또는 2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지급으로부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4. 매도인이 1 또는 2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3에 의한 지급을 수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의무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러한 수락으로 초래되는 여하한 손실에 대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8조(지급의 충당)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여러 번 지급하여야 하나 그 지급이 총금액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당해 지급시점에서 물품대금이 충당되는 의무를 매도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전항에 의하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함으로써 그 이행을 여러 의무 중의 하나에서 충당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한 충당은 그것이 만기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되는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
4. 일방에 의한 유효한 충당이 없는 경우 지급은 순서대로 표시된 다음 기준 중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의무에 충당된다.
 - (a) 만기가 도래하는 의무 또는 만기에 도래하는 첫 번째 의무에 해당되는 의무
 - (b) 매도인이 담보를 가지지 않거나 담보가 없는 의무
 - (c) 매수인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의무
 - (d) 가장 첫 번째 발생하는 의무
 이러한 범주중의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급분은 모든 의무에 비례하여 충당된다.
5. 제척기간의 결과로 집행할 수 없는 의무에 대하여는 2 내지 4에 의하여 대금이 충당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에 따라 대금이 충당될 수 있는 그 밖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 한다.
6. 여하한의 의무와 관련하여 매수인에 의한 지급은, 첫째 경비, 둘째 이자, 셋째 원금 순으로 충당된다. 다만 매도인이 다른 충당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절 수령

제129조(수령)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물품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한다.

- (a) 매도인이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 (b)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물품을 인수하거나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대리하는 서류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130조(조기인도 및 잘못된 수량의 인도)

- 1. 매도인은 정해진 기간 전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인수를 거절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매도인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계약상에 정한 것보다 적은 수량으로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그렇게 거절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의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초과분을 보유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4. 매수인이 초과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것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것으로 보며, 계약에서 정한 율로 지급되어야 한다.
- 5. 소비자 매매계약에서 전항은 매도인이 초과수량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였고 착오없이 그것이 주문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 6. 본조는 디지털 콘텐츠가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장 매도인의 구제수단

제1절 일반규정

제131조(매도인의 구제수단 일반)

- 1. 매수인에 의한 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
 - (a) 본장의 제2절에 의한 이행 요구
 - (b) 본장 제132조에 의한 매도인의 이행보류
 - (c) 본장 제4절에 의한 계약해제
 - (d) 제16장에 의한 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
- 2. 매수인의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 매도인은 이행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하고 전항에 언급된 구제수단 중 어느 것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
- 3. 매도인은 자신이 매수인의 불이행을 초래한 정도만큼 1에 언급된 구제수단 중 어

는 것이라도 행사할 수 없다.

4. 양립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누적될 수 있다.

제2절 이행요구

제132조(매수인의 이행 요구)

1. 매도인은 대금지급 만기 시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매수인이 수행한 그 밖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수인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인수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행을 받을 의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중대한 노력 또는 경비없이 합리적인 대체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절 매도인의 의무이행 보류

제133조(이행보류권)

1. 매수인의 이행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행을 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행할 때까지 이행을 보류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수인이 이행하기 전에 이행을 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이행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매수인이 불이행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매도인은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보류권은 매수인이 적절한 이행을 약속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실된다.
3. 본조에 의하여 보류될 수 있는 이행은 불이행의 정당화되는 정도만큼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된다. 만약 매수인의 의무가 별도로 이행이 되거나 달리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행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의 불이행이 매도인의 이행을 전부 보류할 만큼 정당화되는 정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절 계약해제

제134조(중대한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

매도인은 당해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불이행이 제87조 2에 의거 중대한 경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5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통지 이후의 지연에 대한 계약해제)

1. 매도인은 이행지연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해 지연은 그 자체로는 중대하지 않으나 매도인이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은 사유에 기한다.

2. 기간은 매수인이 부당한 지체없이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B2C 관계에 있어서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은 제167조 2의 30일 기간 전에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3. 매수인이 통지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에 자동해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해제는 더 이상의 통지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소비자 매매계약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6조(예측되는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

매도인은 이행이 만기가 되기 전에, 다만 매수인이 불이행을 선언하거나 그럴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당해 불이행이 중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7조(계약해제권의 범위)

1.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의무가 별도로 이행되거나 또는 달리 분리될 수 있는 경우 당시 한 부분은 본절에 의한 해제근거가 되고 매도인의 의무 중 구분할 수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 경우 매도인은 당해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은 불이행이 계약 전반과 관련하여 중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의무가 별도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불이행이 계약의 전반에 비추어 중대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제138조(통지)

본절에 의한 계약해제의 권리는 통지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39조(계약해제권의 상실)

1. 이행지연이나 또는 제공된 이행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본절에 의한 해제권을 상실한다. 다만 해제통지로부터 매도인이 불일치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을 기대할 수 있거나 또는 제공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매도인은 제136조에 의한 통지로 해제권을 상실한다. 다만 매도인이 그러한 관리가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통지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중대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해제권을 보유한다.

제14장 위험의 이전

제1절 일반규정

제140조(위험이전의 효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손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손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1조(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

위험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최초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제공되어야 할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로 확실히 식별되기까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2절 B2B 계약 시 위험의 이전**제142조(B2C 계약 시 위험의 이전)**

1.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운송인이 아니더라도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공급되는 유형의 매체를 물리적으로 점유하였을 때 이전된다.
2. 유형의 매체로 공급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에서 위험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디지털 콘텐츠의 통제를 갖는 시점에 이전된다.
3. 계약이 원거리 또는 장외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 1 및 2는 소비자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인수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러한 불이행이 제88조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위험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그것을 인수하기 위한 의무가 수행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물리적 점유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통제를 가진 시점에 이전한다.
4. 소비자가 물품의 운송 또는 유형의 매체로 공급된 디지털 콘텐츠의 운송을 수배하고, 그러한 선택이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위험은, 물품 또는 유형의 매체로 공급된 디지털 콘텐츠가 운송인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에 침해없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이전한다.
5.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3절 B2B 계약 시 위험의 이전**제143조(위험의 이전시기)**

1. B2B 계약에서,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인수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대신하는 서로를 인수하는 시점에 이전한다.

2. 전항은 제144조 내지 제146조를 조건으로 한다.

제144조(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있는 물품)

1.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이고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위험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인도되어야 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매수인이 제113조에 따라 인수를 보류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매도인의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있는 경우 위험은 인도가 만기가 되고 매수인이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점에 이전한다.

제145조(물품의 운송)

1. 본조는 물품의 운송을 포함한 계약에 적용된다.
2.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당해 위험은 그 물품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운송하기 위하여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매도인이 물품을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해 위험은 그 물품이 그 장소에서 그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4.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통제하는 서류를 보유하도록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6조(운송 중 매각된 물품)

1. 본조는 운송중인 물품에 관련된 매매계약에 적용된다.
2. 위험은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상황이 적절한 경우 위험은 그 계약이 체결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계약체결시점에 매도인이 물품이 분실되었거나 손상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음이 기대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러한 분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취급한다.

제5부 관련서비스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제15장 거래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수단

제1절 계약에 대한 특정한 일반규칙의 적용

제147조(계약에 대한 특정한 일반규칙의 적용)

1. 제9장의 규정은 본절의 목적상 적용된다.
2. 계약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관련된 서비스 계약도 해제된다.

제2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48조(결과 달성의무 및 주의와 기술의무)

1. 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계약에서 요구하는 특정결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2. 특정결과를 달성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무가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행사하는 주의 및 기술로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또는 그 밖의 강행규칙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 및 기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고객을 위하여 관련된 서비스의 이행 시 개입되는 위험의 성격, 정도, 횟수 및 예견가능성,
 - (b)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손상 또는 유사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비용, 그리고
 - (c) 관련된 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4. B2C 계약에서, 관련된 서비스는 물품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설치에 제101조에 요구하는 바대로 설치된 물품이 계약에 일치하는 정도이어야 한다.
5. B2C 관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2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49조(손해경감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여하한 손상 또는 신체적인 상해 또는 관련된 서비스 이행과정 중 또는 그 결과로 인한 그 밖의 손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0조(제3자에 의한 이행)

1. 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에게 이행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적인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이행을 타인에게 위임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B2C 관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2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151조(송장 제공의무)

별도의 가격이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고 그 가격이 계약체결 시 합

의된 총액이 아닌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대금이 계산되는 방식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송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2조(기대하지 않거나 비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경고 의무)

1.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경고를 하여야 하며,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a) 관련된 서비스의 비용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이미 표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 (b)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 다만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
2. 전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견적한 비용을 초과한 대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난 이후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3절 고객의 의무

제153조(대금의 지급)

1. 고객은 계약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대금은 관련된 서비스가 완료되고 그 관련된 서비스의 목적물을 고객이 이용 가능하였을 때 지급될 수 있다.

제154조(접근 제공)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된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장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구제수단

제155조(고객의 구제수단)

1.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불이행의 경우 고객은 본조에 정한 사항을 적절히 조정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대로 동일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 (a) 특정이행 요구
 - (b) 고객 자신의 이행 보류
 - (c) 계약해제
 - (d) 대금감액
 - (e) 손해배상청구
2. 3에 대한 편견없이, 고객의 구제수단은 고객이 소비자인지에 상관없이 치유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대상이 된다.

3. 제101조에 의거 소비자 계약 하에서 부정확한 설치의 경우 소비자의 구제수단은 서비스 제공자의 치유권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고객이 소비자라면,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서 여하한의 불일치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불일치가 사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11장은 특히 다음의 경우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적용한다.
 - (a) 서비스 제공자의 치유권과 관련하여, B2C 계약에서, 제109조 5에 의한 상당한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b)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제111조 내지 제11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 (c) 제156조는 제122조 대신에 적용된다.

제156조(B2B 간의 관련된 서비스계약에서 불일치의 통지요건)

1. B2B 간의 관련된 서비스 계약에서, 고객은 자신이 불일치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당해 불일치를 원용할 수 있다. 기간은 관련된 서비스가 완료되거나 또는 고객이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발견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시점 중 나중의 날짜로 부터 개시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불일치가 서비스 제공자가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것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본조를 원용할 자격이 없다.

제157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수단)

1. 고객에 의한 불일치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2에 있는 것을 적절히 조정하여 제13장에서 매도인을 위하여 정한 동일한 구제수단을 보유한다.
 - (a) 이행요구
 - (b) 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이행 보류
 - (c) 계약해제
 - (d) 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
2. 제13장은 필요한 조정을 통해 적용한다. 특히 제158조는 제132조 2를 대신하여 적용한다.

제158조(소비자의 이행거절권)

1. 고객은 언제라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된 서비스의 이행 또는 추가이행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할 수 있다.
2. 통지가 전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 (a)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나 의무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
 - (b) 고객은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할 근거가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절

감한 경비 또는 이행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비를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B2C 관계에서,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6부 손해배상금 및 이자

제16장 손해배상금 및 이자

제1절 손해배상금

제159조(손해배상청구권)

1. 채권자는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 다만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손해배상이 회복될 수 있는 손실에는 채무자가 발생하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의 손실을 포함한다.

제160조(손해배상금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은 당해 의무가 정히 이행된 경우 채권자가 누릴 수 있는 위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상황에 가장 유사한 경우 누릴 수 있는 총금액이다. 그러한 손해배상금에는 채권자가 고통을 받은 손실과 박탈당한 이익을 포함한다.

제161조(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

채무자는 계약체결시점에 불이행의 결과로 예측한 또는 예측이 가능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162조(채권자에 의한 손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불이행에 기여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정도만큼 채권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3조(손실의 경감)

1. 채무자는 채권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실을 경감할 수 있었던 정도만큼 채권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채권자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시도 중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64조(대체거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

를 한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권리를 보유하는 한, 해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체거래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에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5조(시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이행을 위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에 권리가 있는 한, 계약가격과 해제 시 시가의 차액에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지연이자 : 일반 규정

제166조(지연이자)

1. 총대금에 대한 지급지연의 경우 채권자는 이를 통지할 필요없이 지급만기시점에 서의 총액에 2에서 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a) 채권자의 거주지 통화가 유로화인 회원국에 있거나 제3국에 있는 경우 해당 6개월이 첫 번째 날 전에 적용되는 유럽중앙은행의 가장 최근 재정금융운용에 적용되는 이자율 또는 유럽중앙은행의 가장 최근 재정금융운용에 대하여 변동 금리절차에 적용되는 한계이자율에 2% 추가한 율
 - (b) 채권자의 거주지 통화가 유로화가 아닌 경우의 회원국에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의 국립중앙은행이 정하는 동등한 율에 2% 추가한 율
3. 채권자는 추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7조(채무자가 소비자인 경우의 이자)

1. 채권자가 소비자인 경우 물품대금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불이행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에만 전조에서 정한 만기이자율을 적용한다.
2. 이자는 채권자가 이자 및 이자율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구체화하여 통지한 이후 30일까지 계산하지 아니한다. 통지는 지급이 만기가 되는 날 이전에 제공될 수 있다.
3. 전조에서 정한 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정한 계약내용 또는 본조 2에서 정한 기간보다 빠른 날은 이것이 제83조에 따라 부당한 정도까지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4.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이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원금에 가산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는 소비자에 해가 되도록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절 기업에 의한 지급 지연

제168조(이자율 및 증식)

1. 기업이 제88조에 의한 면책없이 물품의 인도,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 하에서 만기 시의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자는 본 조 5에서 정한 율로 지급하여야 한다.
2. 5에서 정한 율에 대한 이자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 또는 지급기간의 종료일 다음부터 기산하기 시작한다. 만약 그러한 일자나 기간이 없는 경우 그 율에 대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기산한다.
 - (a) 채무자가 송장을 받거나 또는 지급을 위한 이와 동등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 또는
 - (b) (a)호에 정한 일자가 빠르거나 또는 불확실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송장을 받았는지 또는 지급을 위한 요청서를 받았는지 불확실한 경우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후
3.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가 계약과 일치하는 것이 수락 또는 검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의 (b)에서 정한 30일 기간은 승낙일 또는 검사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개시된다. 검사절차의 최대기간은 물품의 인도,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가 제170조에 따라 불공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한다.
4. 2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가 제170조에 따라 불공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한다.
5.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a) 채권자의 거주지가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회원국이거나 제3국에 있는 경우 해당 6개월이 첫 번째 날 전에 적용되는 유럽중앙은행의 가장 최근 재정금융운용에 적용되는 이자율 또는 유럽중앙은행의 가장 최근 재정금융운용에 대하여 변동금리 절차에 적용되는 한계이자율에 8% 추가한 율
 - (b) 채권자의 거주지 통화가 유로화가 아닌 회원국에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의 유럽중앙은행이 정하는 동등한 율에 8% 추가한 율
3. 채권자는 추가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9조(비용복구를 위한 배상)

1. 이자가 제168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고정금액 40 유로 또는 채권자의 총당비용배상금으로 계약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통화로 최소한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채권자는 전항에서 정한 고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과 채무자의 지급지연에 따른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0조(지연이자 관련 불공정한 계약내용)

1. 지급일 또는 지급기간,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율 또는 비용충당을 위한 배상에 관련된 계약내용은 그 내용이 불공정한 정도만큼 구속되지 않는다. 계약내용이 물품, 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성격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신의 및 공정거래에 반하게 선량한 상관습에서 중대하게 이탈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은 불공정하다.
2. 전항의 목적상, 제167조 내지 제168조에서 정한 시간, 기간 또는 율보다 덜 유리한 시간, 지급기간 또는 이자율을 규정한 계약내용 또는 제169조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비용을 충당하는 배상금을 규정한 계약내용은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
3. 1의 목적상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배제한 계약내용 또는 비용충당 배상은 항상 불공정한 것으로 취급한다.

제171조(강행성격)

거래당사자는 본절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7부 원상회복

제17장 원상회복

제172조(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1. 계약이 일방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반환의무는 수령한 것으로부터 나온 자연적·법적 과실을 포함한다.
3. 분할 또는 일부이행을 위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령한 것에 대한 반환은 양당사자에 대한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 또는 이행된 것에 대한 대금이 제8조 2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경우 분할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계약의 성격이 그러한 일부 이행이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게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3조(금전가치에 대한 지급)

1. 수령한 것이 관련된 경우 과실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형의 매체로 디지털 콘텐츠가 공급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수령자는 금전적 가치로 지급하여야 한다. 반환이 가능하나 불합리한 노력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자는 금전적 가치를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상대방의 재산권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2. 물품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그 물품이 금전적 가치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에 가지게 되는 가치이다. 다만 당해 물품이 수령자에 의하여 그 날짜까지 손실 또는 손상없이 보관되어진 경우에 한한다.
3. 관련된 서비스계약이 이행되고 난 후 또는 일부 이행되고 난 후 고객에 의하여 취소하거나 해제되는 경우 수령한 것의 금전적 가치는 관련된 서비스를 수령함으로써 고객이 절약한 금액이다.
4.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수령한 것의 금전적 가치는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절약한 금액이다.
5. 수령자가 취소 또는 해제의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경우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교환으로 금전 또는 물품 형태로 대체물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은 대체물을 청구하거나 대체물의 금전적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취소 또는 해제의 사유를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경우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와 교환으로 금전 또는 물품으로 대체물을 취득한 수령자는 대체물의 금전적 가치 또는 대체물을 반환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6. 대금지급에 대한 교환으로 공급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174조(사용에 대한 지급 및 수령한 금액에 대한 이자)

1. 물품을 사용한 수령자는 다음의 경우 여하한의 기간 동안 그 사용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a) 수령자가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사유를 유발하였을 경우
 - (b) 취소 또는 해제 개시 전에 수령자가 그것에 대한 사유를 알고 있는 경우
 - (c) 물품의 성격, 사용내역 및 금액 그리고 해제 이외의 구제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에 당해 물품의 자유로운 이용을 수령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2.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166조에서 정한 율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a) 상대방이 사용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 (b) 수령자가 사기·강박 및 부당한 착취로 계약을 취소할 이유를 제공한 경우
3. 본장의 목적상, 수령인은 1 및 2에서 정한 것 이외의 상황에서 수령한 물품사용에 대하여 또는 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175조(지출에 대한 배상)

1. 수령자가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출을 부담한 경우 수령자는 지출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준 정도만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수령자가 취소 또는 해제의 사유를 잘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유를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음을 조건으로 당해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 한다.

2. 취소 또는 해제의 사유를 알았거나 알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령자는 가치가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물품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출에 대하여서만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수령자가 당해 조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한 한다.

제176조(공평한 수정)

본장에 의하여 반환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그 당사자가 취소 또는 해제의 사유를 유발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식이 결여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그것의 이행이 중대하게 불공평한 정도만큼 수정될 수 있다.

제177조(강행성격)

B2C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본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8부 소멸시효

제18장 소멸시효

제1절 일반규정

제178조(시효대상의 권리)

의무의 이행을 집행할 권리 및 그러한 권리에 부수적인 그 밖의 권리는 본장에 따라 시간의 만료에 의하여 시효대상이 된다.

제2절 시효기간 및 개시

제179조(시효기간)

1. 시효의 단기는 2년이다.
2. 시효의 장기는 10년이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의 경우는 30년이다.

제180조(개시)

1. 시효의 단기는 채권자가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또는 알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개시된다.
2. 시효의 장기는 채무자가 권리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부터 개시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그 권리를 발생시킨 시점부터 개시된다.

3. 채무자가 작위 또는 부작위의 계속적 의무 하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를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

제3절 시효기간의 연장

제181조(사법적 및 그 밖의 절차중지)

1. 시효기간의 개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법적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중지된다.
2. 중지는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그 사건이 처분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 절차가 쟁점에 대한 결정없이 시효기간 6개월 이내 종결되는 경우 시효기간은 그 절차가 종결된 시점 이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3. 1 및 2는 적절한 조정을 가하여, 중재절차, 조정절차, 당사자 간의 사안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뢰되는 절차에 그리고 당해 권리에 관련된 결정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지급불능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시된 그 밖의 모든 절차에 적용한다.
4. 조정은 명칭이 상관없이 2명 이상의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시도하는 절차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조정자의 지원을 받아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거나 국내법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다. 조정은 양당사자의 합의로 종결되거나 또는 조정자나 당사자중 한쪽에 의한 선언으로 종결된다.

제182조(협상의 경우 시효의 연기)

거래당사자가 권리에 대하여 또는 권리에 관련한 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협상하는 경우 협상에서 마지막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는 일방이 타방에게 그 협상을 계속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이후부터 어느 시효기간도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183조(무능력의 경우 시효의 연장)

무능력자에게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자가 보유하는 시효기간은 무능력이 종료되거나 또는 대리인이 임명된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료되지 않는다.

제4절 시효기간의 갱신

제184조(승인에 의한 갱신)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지급, 이자지급, 담보제공, 상계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승인한 경우 새로운 단시의 시효가 개시된다.

제5절 시효의 효과

제185조(시효의 효과)

1. 시효 관련 기간 종료 후, 채무자는 당해 의무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채권자는 이행을 보류하는 것을 제외하고 불이행에 대한 모든 구제수단권을 상실한다.
2. 당해 의무이행에서 채무자 특단의 행사를 불문하고 당해 시효기간은 이행이 수행된 순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재청구할 수 없다.
3. 이자지급 권리 및 그 밖에 부수적 성격의 권리에 대한 시효기간은 원 권리에 대한 기간보다 늦게 종료되지 않는다.

제6절 합의에 의한 수정**제186조(시효에 대한 합의)**

1. 본장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특히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시효의 단기는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고, 10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3. 시효의 장기는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고, 30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4. 당사자는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5. B2C 계약에서, 본 조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도록 적용할 수 없다.